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37-10

#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지난 따뜻한 봄 5월 발대식을 한지 어제 같은데 벌써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활동하신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의 결실로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비가 많았던 곳은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불편한 곳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법원·검찰청·경찰서 등 사법기관, 그리고 박물관, 영화상영관 등 문화·예술시설과 생활영역까지, 그 곳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화도 나고,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는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및 신용거래 확산, 후견인제 도입 등으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등장하고, 장차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제고와 사회환경,

장애인의 욕구 변화로 관광서비스·체육활동·문화영역에서의 진정,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불편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소외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 자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법원·검찰청 및 경찰서 등 사법기관, 그리고 문화·예술시설 등 피모니터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의견을 보내와 환경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영역에서는 정책권고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유도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더욱 충실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이 노력에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회가 추진하는 장애인 사업에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지난 10. 3. 발표해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한층 더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소중한 결과물을 생산한 모니터링단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목 차

## Contents

### I.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3
2. 사업 운영 방법	7

### II.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사업 결과 및 분석

#### [현장 모니터링 하나 - 기관 별 -]

1.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9
2. 전시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88
3. 영화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14
4.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55
5. 사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78
6. 의료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233

#### [현장 모니터링 둘 - 재점검 -]

7. 광주·목포·전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261
8. 대구·경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295
9. 부산·경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306

#### [현장 모니터링 셋 - 생활영역·참정권 -]

10. 장애인생활영역 (대구·경북 권역)	325
11. 장애인참정권 (울릉도)	342

#### [부록1] 모니터링단 활동

1.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선언문	353
2. 현장 모니터링단 명단	355
3.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356

#### [부록2] 관련 법령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373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98





I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 사업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 배경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에 근거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의무부과대상의 단계적 적용 시기 고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09년부터 매년 피모니터링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시행

### 나) 사업 목적

- 사전적 조치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차별 예방
-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장애 당사자들의 사회적·시민적 역량 구축
- 장애 관련 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인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다) 사업 연혁

연도	모니터링 사업
2009년	<p>※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신규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율 과제’ 주제의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요원 별 자율 과제’, ‘지하철 환승역 근처 ATM기의 접근성 -부산은행, 국민은행 각 지점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 편의시설 및 만족도’, ‘그린웨이(산책로) 조성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li> </ul> </li> <li>• 광주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율 과제’ 주제의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남광주역, 도청역, 상무역, 마트역 대상-’,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일대 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li> </ul> </li> <li>• 대구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율 과제’ 주제의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행사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접근권’,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구스타디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li> </ul> </li> <li>•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참여’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개 지역 32개 주민센터 방문 및 74개 주민센터 설문조사</li> <li>- 문화프로그램 정보제공,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편의시설,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참여율 모니터링</li> <li>- 첫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며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모니터링 사업의 체계성, 효과성 제고 기대</li> <li>- 장애인차별사례를 드러내고, 향후 사업을 위한 시급한 과제 발굴</li> </ul> </li> </ul>

연도	모니터링 사업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사이트 운영, 선거공보, 선거방송, 투표소 모니터링</li> <li>- 2010년 7·28 재보권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표명</li> </ul> </li> <li>•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15개 문화·예술시설(국·공립박물관 26곳, 미술관 5곳, 공공도서관 84곳)</li> <li>- 시설 접근성, 편의제공, 장비·기기 제공, 웹사이트 접근성 모니터링</li> </ul> </li> <li>•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2개 행사(행사 및 축제 39개, 토론회 및 공청회 13개)</li> <li>- 행사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행사 참여 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행사 참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모니터링</li> <li>- 행사 매뉴얼 제작·배포 검토</li> </ul> </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0개 지역 총 192개 은행 지점</li> <li>- 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정책권고(11.24.)</li> </ul> </li> <li>•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3개 지역 총 324개 버스정류장</li> <li>- 버스정류장 ‘안내판’, ‘버스정보 안내기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정책 검토 과제 발굴</li> </ul> </li> <li>•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3개 지역 총 260개 공공기관(주민센터 182곳, 보건소 78곳)</li> <li>-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민원자동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정책 검토 과제 발굴</li> </ul> </li> <li>•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3개 지역 총 130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문화·예술 84곳, 체육 46곳)</li> <li>-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조인력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 검토 과제 발굴</li> </ul> </li> </ul>

연도	모니터링 사업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개 지역 투표소 167개소, 투표안내문 51개, 웹사이트 64개</li>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의 대부분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 회신</li> </ul> </li> <li>•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개 지역 총 158개 의료기관(종합병원 56곳, 한방병원 37곳, 요양병원 65곳)</li> <li>- 총 129개 의료기관(81%)에서 올해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공문 제출</li> </ul> </li> <li>•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 이용’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개 지역 총 72개 문화·예술 시설(공연장 35곳, 박물관 33곳, 미술관 4곳)</li> <li>- 총 40개 문화·예술시설(55%)에서 올해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제출</li> </ul> </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39개 공공기관(도·광역시청 9곳, 시·군·구청 76곳, 읍·면·주민센터 54곳)</li> <li>- 총 128개 기관(92.1%)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예정</li> </ul> </li> <li>•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6개 의료기관(종합병원 36곳, 한방병원 26곳, 요양병원 45곳, 치과병원 22곳, 병원 27곳)</li> <li>- 총 153개(98.1%) 기관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예정</li> </ul> </li> <li>• ‘장애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17개 청소년 활동시설(서울 24곳, 대전 12곳, 대구 24곳, 부산 24곳, 광주 14곳, 제주 19곳)</li> <li>- 모든 기관이 모니터링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 개선 또는 개선 예정</li> </ul> </li> </ul>

[표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연혁



## 2 사업 운영 방법

### 가) 모니터링 주제

#### (1) 현장 모니터링

- 피모니터링 기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모니터링
- 피모니터링 기관에 법률 상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료행위에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모니터링

#### (2) 정책 모니터링

-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시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모니터링

### 나) 피모니터링 기관/대상

#### (1) 현장 모니터링

- 공공도서관: 6개 권역 150개소
- 전시시설<sup>1)</sup>: 2개 권역 24개소

1) 하단 열거 3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기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 중 “박물관”, “미술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

- 영화관<sup>2)</sup>: 3개 권역 73개소
- 공공기관<sup>3)</sup>: 4개 권역 47개소 (재점검: 3개 권역 33개소)
- 사법기관<sup>4)</sup>: 4개 권역 82개소
- 금융기관<sup>5)</sup>: 2개 권역 15개소 (재점검: 2개 권역 15개소)
- 의료기관<sup>6)</sup>: 4권역 50개소 (재점검: 3개 권역 38개소)
- 청소년활동시설<sup>7)</sup>: 1개 권역 11개소 (재점검: 1개 권역 11개소)
- 2014년 6·4지방선거 참정권: 1개 권역

## (2) 정책 모니터링

-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시험<sup>8)</sup>: 총 52개
  - 국가전문자격시험 45개, 국가기술자격시험 7개
  - 소관부처: 총 22개 부처
  - 시행기관: 국가전문자격 관련 9개소, 국가기술자격 관련 6개소

- 
- 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 2) 하단 열거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기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영화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하단 열거 4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기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서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4) 헌법재판소, 법원, 본원등기과 및 등기소, 검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5) 은행 지점
-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7)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8)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및 장애인응시현황 자료 참고하여 선정

## 다) 모니터링단 구성

현장 모니터링단						정책 모니터링단
서울 (28명)	대전 (32명)	제주 (22명)	광주·목 포·전주 (30명)	대구·경북 (32명)	부산·경남 (30명)	장애차별 조사1과
장애차별조사1과			광주인권 사무소	대구인권 사무소	부산인권 사무소	

[표2] 모니터링단 구성

### (1) 현장 모니터링단

- 전국 6개 권역, 즉 서울, 대전, 제주, 광주·목포·전주(이하 광주), 대구·경북(이하 대구), 부산·경남(이하 부산), 에서 지체·시각·청각·지적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를 50% 이상 포함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
- 대전과 제주 권역은 지역사무소 부재로 지역 장애단체와 연계해 운영

(단위: 명)

	총합	비율	서울	대전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지체장애	44	25.3%	3	12	14	5	4	6
뇌병변장애	47	27.0%	1	13	2	11	6	14
시각장애	16	9.2%	6	2	1	2	5	0
청각장애	5	2.9%	1	0	0	1	2	1
지적·발달장애	2	1.1%	0	1	0	0	0	1
기타장애	5	2.9%	4	1	0	0	0	0
비장애	55	31.6%	13	3	5	11	15	8
총합	174	100.0%	28	32	22	30	32	30

[표3] 현장 모니터링단 장애유형 별 인원수/비율

### (2) 정책 모니터링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라) 모니터링 방법

### (1)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권역별 월(月)별 과제를 선정 [표4]
-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선정 및 법령 기준에 의거해 적합성 검토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법령 기준에 의거해 만들

### (2) 사전설명회 개최

- 권역별 월(月)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료집 배포 및 교육
- 사업의 배경 및 관련 법규 설명
- 피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체크리스트 개별 문항을 근거하는 법령 기준 및 작성 방법 교육
- 모니터링단의 역할, 조사 방법, 유의사항 등 안내

### (3) 해당기관 협조 요청

-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 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조별로 활동: 한 조는 4~5명으로 구성, 각 조는 1개월마다 4~7기관 방문
- 3개월 간 활동: 1차 2014년 5월, 2차 2014년 6월, 3차 2014년 7월
- 조별로 활동하되 필요 시 위원회 직원 동행
- 1기관 당 체크리스트 1부, 기관별 단위 활동보고서, 그외 사진 자료 등 수합

### (5) 모니터링 사후 조치 및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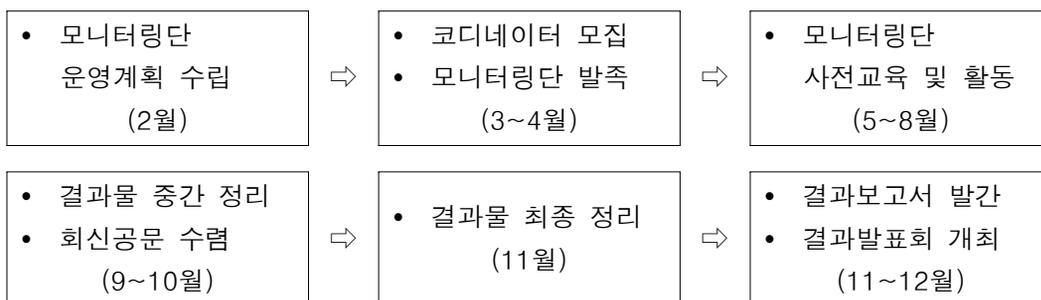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및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발간
- 권역 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 권고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

	1차	2차	3차
서울	공공도서관	사법기관	영화관
대전	공공도서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제주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사법기관	미술관, 박물관 등
광주	공공도서관	의료기관(재점검) 공공기관(재점검) 금융기관(재점검)	사법기관
대구	공공도서관	의료기관(재점검) 금융기관(재점검) 공공기관(재점검) 6.4지방선거참정권	장애인생활영역
부산	공공도서관	의료기관(재점검) 공공기관(재점검) 청소년시설(재점검)	영화관

[표4] 권역별 월(月)별 과제

## 마) 모니터링 일정



[표5] 2014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일정

## 바) 법적 근거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본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이 의무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포섭하여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설치기준에 대한 규범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다. 그러므로 상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한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2009년 4월 11일 이전에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

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의 수단”을 “장애인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관련해서, 본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시시설, 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 및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전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기관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부 또는 임의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모니터링 활동 일지

월	주요 활동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링 사업 기획 및 제1차 실무단 회의 개최: 1월 16일</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링 사업 기획 및 제2차 실무단 회의 개최: 2월 17일</li> <li>모니터링 사업 관련 장애단체 간담회 총 3회 개최: 2월 5~12일</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3월 7일</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차별금지법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권역 총 4명</li> </ul> </li> <li>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4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권역 총 158명</li> </ul> </li> <li>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교육: 4월 28일~ 5월 2일</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과제 사전설명회 개최(각 권역 별 실시)</li> <li>1차 과제(전국공통) 모니터링 실시: 5월 7~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li> </ul> </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과제 사전설명회 개최(각 권역 별 실시)</li> <li>2차 과제(지역자율1) 모니터링 실시: 6월 9일~ 7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li> <li>- 과거 모니터링 대상기관 재점검</li> <li>- 2014년 6·4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li> </ul> </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 과제 사전설명회 개최(각 권역 별 실시)</li> <li>3차 과제(지역자율2) 모니터링 실시: 7월 21일~ 8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 박물관 등</li> <li>- 장애인생활영역</li> </ul> </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자격시험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정책 모니터링 실시: 8월 1일~10월 31일</li> </ul>
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피모니터링 기관 대상, 모니터링 결과 관련 협조 공문 발송 및 회신공문 접수: 9월 8일~11월 7일</li> </ul>
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회 개최(권역 별) 예정: 11월 25일~ 12월 2일</li> </ul>

II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사업 결과 및 분석





# [현장 모니터링] 하나 -기관 별-





## 1 공공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개요

- **주제:** 공공도서관의 ‘시설 접근성’,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5월 중
- **대상:** 6개 권역 150개 공공도서관  
- 서울, 대전,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권역
- **모니터링단:** 174명 (장애인: 119명, 68.4%)

### 나)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출입자 확인 구간, 복도 및 통로, 화장실, 2·3층 자료실 입구, 도서대출대, 열람실, 자료검색대
-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9)</su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sup>10)</sup>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하에서 동의어로 사용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편의증진보장법’을 이하에서 동의어로 사용

## 다)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5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5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차별금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2조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을 포섭하여 장애차별금지법 규범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기 편의증진보장법률을 차용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60	90	0	40.0%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94	2	54	97.9%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147	3	0	98.0%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144	6	0	96.0%
4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139	11	0	92.7%
4-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120	18	12	87.0%
5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69	81	0	46.0%
5-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8	6	135	57.1%
6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26	5	119	83.9%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142	7	1	95.3%

## ㉡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인데,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40.0%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 비율이 97.9%에 달하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 하지만, 주출입구의 단차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주 또는 소속원이 많으므로 이해 및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주접근로와 주출입문 사이에 단차가 있거나 주출입구와 통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출입문의 바닥면에 있는 문턱이나 높이차이와 혼동하여 주출입구 단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1]처럼 주출입구 단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없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 한편, 경사각도가 급한 경사로의 경우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혼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도 중요하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엄격하게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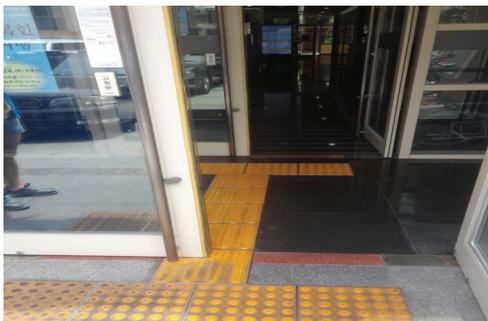
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경사로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기울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및 관리,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항목에서는 80% 이상의 기관이 충족함을 보이고 있다.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46%에 불과하며, 음성안내장치가 있는 기관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의 비율은 57.1%에 불과하다. 편의증진보장법은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을 포함한 유도·안내설비를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림1] 단차의 예11)

### ㉔ 주요 사례



[그림2] 장애물로 가려진 유도블록1



[그림3] 장애물로 가려진 유도블록2

11) <http://abnews.kr/YfW> (c)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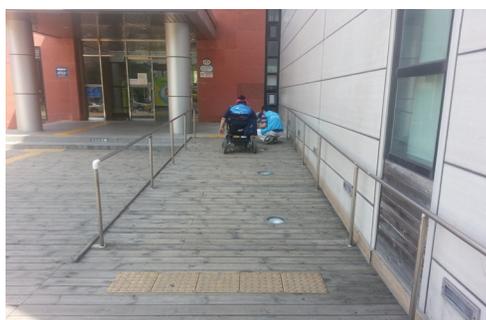
[그림4] 훼손된 점형블록



[그림5] 비좁은 경사로 폭



[그림6]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관



[그림7] 부실하고 위험한 경사로 손잡이

## (2) 출입자 확인 구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주출입구 부근 출입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출입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적정	118	12	20	90.8%

㉡ 분석 및 논의

- 주출입구 부근 출입자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인 기관은 90.8%로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출입자확인구간이란 [그림8]와 같은 기기를 의미한다. 이때 통과유효폭만이 아니라 형태 및 부착물도 중요하다. [그림9]과 같은 추가설비가 되어있을 경우 휠체어장애인 등이 통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4)번(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그림8]와 비슷하게 출입자확인구간을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 중 일부는, 현재 여닫이문의 반만 개방해놓고 있으나 휠체어장애인이 방문해서 요청할 경우 나머지 문도 열어서 충분한 통과유효폭을 보장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보냈다.



[그림8] 출입자확인구간의 예<sup>12)</sup>



[그림9] 출입자확인구간의 나쁜 예<sup>13)</sup>

12) <http://blog.daum.net/567788/2>

13) <http://cintamani.egloos.com/m/3548116>

### (3)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9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의 장애물로 실질유효폭이 “1.2m” 이하로 감소하지 않고, 적정 유효폭 확보함	
10	도서관이 2개층 이상의 시설물인 경우,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9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148	2	0	98.7%
9-1	실질 통과유효폭 적정	136	13	1	91.3%
10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121	25	4	82.9%
10-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118	2	29	98.3%

#### ㉢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및 유지관리,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경우 80% 이상의 기관이 충족함을 보이고 있다.
-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나, 화분, 휴지통, 의자 등의

장애물로 인해 실질 통과유효폭은 0.8m 미만인 곳이 13개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대부분이 즉시 치우거나 개선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보냈으므로 긍정적인 결과다.

㉔ 주요 사례



[그림10] 점형블록 위에 설치된 장애물 [그림11]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

(4) 화장실

㉕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일반사항)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2-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3	대·소변기 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7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 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9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 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 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1	장애인화장실 설치	141	9	0	94.0%
11-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90	51	9	63.8%
12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111	39	0	74.0%
12-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103	7	40	93.6%
13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137	13	0	91.3%
14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122	28	0	81.3%
15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85	65	0	56.7%
16	대변기 높이 적정	120	30	0	80.0%
17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27	22	1	85.2%
18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114	24	12	82.6%
19	세면대 높이 적정	48	96	6	33.3%
20	세면대 하부공간 적정	86	58	6	59.7%

## ㉔ 분석 및 논의

-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94.0%에 달하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비율은 63.8%에 그치고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상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74.0%에 그치고 있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비장애인용 화장실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따로 구분·설치한 후, 비장애인용 화장실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해 놓되 장애인용 화장실 전면에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해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다.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세심한 고민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을 적정하게 확보한 기관의 비율이 56.7%에 그쳤다.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구분·표시해 놓았으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을 지키지 않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거나 회전 및 이동할 수 없는 기관이 꽤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 및 허망함을 초래할 수 있다.
- 세면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33.3%, 세면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59.7%에 그치고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상단높이를 0.65미터에서 0.85미터 사이의 높이로 이해한 기관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세면대 높이 법적기준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미충족 문항에 대한 기관 회신공문에서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미진한 답변이 많았다. “노후된 건물이어서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등을 개선하려면 전 건물 리모델링이 요구되기에 개선하기 어려움”,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요구되므로 추후 개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기관이 많았다.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각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노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㉔ 주요 사례



[그림12] 협소한 장애인 화장실



[그림13] 잘못 설치된 유도블록



[그림14] 파손된 잠금장치



[그림15] 청소도구가 비치된 장애인 화장실

## (5) 2, 3층 자료실 입구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1	2·3층 자료실 부근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주출입구 부근이 아닌, 2·3층 자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쪽의 확인 구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1	장애물로 인하여 실질유효폭이 “0.8m” 이하로 감소하지 않고, 적정 유효폭 확보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1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적정	125	15	10	89.3%
21-1	실질 통과유효폭 적정	101	23	26	81.5%

### ㉢ 분석 및 논의

-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인 기관은 89.3%, 그 중에서 실질 통과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관도 81.5%로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위의 ‘주출입구 부근 출입자확인구간’과 마찬가지로 통과유효폭뿐만 아니라 형태 및 부착물도 중요하다. 출입자확인구간에 추가설비가 되어있는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착물 등 추가설비를 설치할 경우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위의 ‘주출입구 부근 출입자확인구간’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단이문의 반만 개방해놓고 있으나 휠체어장애인이 방문해서 요청할 경우 나머지 문도 열어서 충분한 통과유효폭을 보장하겠다는 기관들이 있었다.

㉔ 주요 사례



[그림16] 단차가 미제거된 열람실 입구1



[그림17] 단차가 미제거된 열람실 입구2



[그림18] 한쪽 방향으로 문이 개폐되어 출입이 어려움



[그림19] 비좁은 이용자 확인 구간(0.7m)

## (6) 도서대출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2	도서대출대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3	도서대출대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2	도서대출대 높이 적정	124	26	0	82.7%
23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적정	24	126	0	16.0%

### ㉢ 분석 및 논의

- 도서대출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82.7%이지만,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16.0%밖에 없다. 도서대출대가 하부공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하부공간이 있더라도 0.45m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 휠체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직접 책을 검색 및 대출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관이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각 공공도서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 (7) 열람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4	열람실 책상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에 따라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5	열람실 책상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에 따라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6	열람실의 책상과 책상 사이의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7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4	열람실 책상 높이 적정	137	12	1	91.9%
25	열람실 책상 하부공간 적정	110	39	1	73.8%
26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적정	91	58	1	61.1%
27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적정	21	127	2	14.2%

### ㉔ 분석 및 논의

- 열람실 책상 높이가 적절한 기관은 91.9%이나, 열람실 책상의 하부공간이 적절한 기관은 73.8%이다. 열람실 책상의 하부 깊이를 0.45m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인 기관은 61.1%,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인 기관은 14.2%밖에 안 된다. 특히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의 경우, “기관 면적에 비해 장서 수가 많고, 대출빈도가 낮은 도서라 할지라도 따로 보관할 공간이 적으므로, 서가 수를 줄이거나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확보가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한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휠체어사용자가 서가 사이를 통행할 수 없으나 직원이 직접 가져오는 등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각 공공도서관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 ㉕ 주요 사례



[그림20] 부적절한 장애인 전용 컴퓨터 책상의 높이



[그림21] 비좁은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 (8) 자료검색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8	자료검색대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9	자료검색대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0	자료검색도구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기능이 제공되거나 키보드만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따라 도서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8	자료검색대 높이 적정	109	41	0	72.7%
29	자료검색대 하부공간 적정	81	69	0	54.0%
30	자료검색도구 음성지원기능 등 제공	63	87	0	42.0%

### ㉔ 분석 및 논의

- 자료검색대의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72.7%, 자료검색대의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54.0%이다. 도서대출대 및 열람실 책상과 마찬가지로 하부공간의 깊이를 미충족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료검색대의 하부 깊이를 0.45m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자료검색도구에 음성지원기능을 제공하거나 키보드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은 42.0%로 이행 비율이 낮은 편이다. 시각장애인이 자료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미충족 기관들 중 “직원이 검색을 지원”하겠다는 회신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어긋날 수 있다.

## (9) 정당한 편의 제공

### ㉕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1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경(돋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및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에 따라 도서관은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저시력용독서기가 권장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1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31번 항목에서 저시력용독서기 또는 확대경(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31-2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31번 항목에서 저시력용독서기 또는 확대경(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2	도서관 이용 안내책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안내책자가 없으면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2-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인력 제공 여부 (안내책자가 없으면 '해당없음')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3	도서관 이용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3-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33번 항목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3-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1	저시력용독서기·음성지원컴퓨터·확대경 제공	108	42	0	72.0%
31-1	음성지원컴퓨터 정상적으로 작동	34	7	108	82.9%
31-2	음성지원컴퓨터 공간 따로 마련	35	6	108	85.4%
32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안내책자 제공	78	72	0	52.0%
32-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63	10	77	86.3%
33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제공	38	112	0	25.3%
33-1	화상전화기 정상적으로 작동	14	1	131	93.3%
33-2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107	5	38	95.5%

## ㉡ 분석 및 논의

-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확대경(돋보기) 중 1개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72.0%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도서관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는 의무용품”, 공공도서관은 “보청기기는 의무용품, 저시력용 독서기는 권장용품”으로서 비치하여야 한다. 본 모니터링에서는 1개 이상 제공하는 경우 충족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는데 향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도서관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52.0%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의 이용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도서관안내책자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각 공공도서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25.3%로 더욱 낮다. 게다가 청각장애인의 방문 시 “직원이 필담으로 대화함으로써 수화통역·화상전화기 등의 편의수단을 같음”하겠다는 회신이 많았다. 하지만, 수화의 문맥 구조가 일반 구어 또는 문어체의 문맥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 직원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필담을 나눌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인이 사전 요구 시 7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장비 비치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 전반적으로 “보조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갈음하겠다”는 회신이 많았는데, 보조인력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 수단의 비치 및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10)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4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도서관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도서대출 예약, 열람실 자리 예약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도서대출예약 및 열람실자리예약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상동
36	웹사이트에서 전자책 기능을 지원함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상동
37	웹사이트에 동영상에 있을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화면해설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함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웹사이트 내 동영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자막,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4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97	35	17	73.5%
35	키보드만으로 도서예약기능 등 이용 가능	60	54	35	52.6%
36	웹사이트에서 전자책 지원	95	24	27	79.8%
37	웹사이트 동영상에 자막·수화통역 등 제공	14	31	105	31.1%

## ㉡ 분석 및 논의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73.5%, 키보드만으로 도서·열람실자리 예약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52.6%로 다소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키보드만으로 메뉴 간 이동 및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각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웹사이트에서 전자책 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은 79.8%인데, 회신공문에서 전자책 기능을 지원 중이라고 대답한 기관까지 합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책 항목에 관한 공공도서관의 이행 비율은 높은 편이다.
-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있는 경우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31.1%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웹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14)</sup>을 참

14)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향후 모니터링 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라) 공공도서관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없음

문항 번호	서울														
	도 서 관 1	도 서 관 2	도 서 관 3	도 서 관 4	도 서 관 5	도 서 관 6	도 서 관 7	도 서 관 8	도 서 관 9	도 서 관 10	도 서 관 11	도 서 관 12	도 서 관 13	도 서 관 14	도 서 관 15
1	O	O	X	X	O	O	X	O	O	X	X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1	X	O	O	X	X	O	X	O	O	O	O	O	X	O	O
5	X	X	O	O	O	X	O	X	O	O	X	O	O	X	O
5-1															O
6							O				O				X
7	O	O	O	O	O	O	O	X	O	O	O	X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X	O	O	X	O	O	O	O	O	O	O	O	X	O	O
12	X	O	O	X	X	O	O	O	O	O	O	O	O	O	O
12-1		O	O			O	O	O	O	O	O	O	O	O	X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X	O	X	O	O	O	X	O	O	O	O	O	O	X	O
15	X	O	X	O	X	O	X	X	O	X	O	O	O	X	O
16	O	O	O	X	O	X	O	O	O	O	O	O	O	X	O
17	O	O	O	O	O	O	O	O		O	O	O	X	O	O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X	X	X	X	X	X	X	X	X	X	X	O	O	X	X
20	X	O	O	O	X	X	X	X	O	X	O	O	O	O	O
21	O	O	X	O	O	O	O	O	O	O	O	O	O	X	O
21-1	X	X		O	X	X	O	O	X	O	X	O	X		O
22	O	O	O	X	O	O	O	X	O	O	O	O	O	O	X
23	X	O	X	X	X	X	X	X	X	X	O	X	X	X	X
24	X	X	O	O	X	O	O	O	O	O	O	O	O	O	O
25	O	O	X	O	O	X	O	O	X	X	O	O	X	O	O
26	X	O	O	X	O	O	X	O	O	X	X	O	X	O	O
27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8	O	O	O	O	X	O	O	O	O	O	O	O	X	O	O
29	O	O	X	O	O	X	X	X	X	O	O	O	O	O	X
30	O	O	X	O	O	X	X	X	X	O	X	X	O	X	O
3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1	O			O	O		O		O	O	X		O	O	O
31-2	O			X	O		O		O	O	O		X	O	O
32	O	O	X	O	X	O	O	O	O	O	O	O	O	X	O
32-1			O		O									O	
33	X	X	X	X	O	X	X	X	X	X	X	X	X	X	X
33-1															
3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4	X	O	O	O	X	O	O	O	O	O	X	X	O	O	O
35	X	O	O	O	X	X	X	X	O	X	X	X	O	O	O
36	O	O	O	O	O	X	X	X	O	O	X	X	O	O	O
37	O		X		X	X		X	X	X	X	X	O	X	O

문항 번호	서울									대전					
	도 서 관 16	도 서 관 17	도 서 관 18	도 서 관 19	도 서 관 20	도 서 관 21	도 서 관 22	도 서 관 23	도 서 관 24	도 서 관 25	도 서 관 26	도 서 관 27	도 서 관 28	도 서 관 29	도 서 관 30
1	○	○	○	×	×	○	×	○	○	×	×	○	○	×	×
1-1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5-1		×													
6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9-1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0-1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11-1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2-1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19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0	X	X	O	O	O	O	O	O	O	O	O	O	O	O	X
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1-1	O	O	O	O	O	X	O	O	O	O	O	O	X	O	O
22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23	X	O	X	X	X	X	X	X	X	X	X	X	X	O	X
2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5	O	O	O	O	O	O	X	O	X	O	O	O	O	X	O
26	O	O	X	O	X	X	X	O	O	O	X	X	O	X	X
27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28	O	X	O	O	O	O	X	O	X	O	O	O	O	O	O
29	O	O	X	X	O	O	X	O	X	O	X	X	O	O	O
30	O	O	X	X	X	X	X	X	X	O	X	X	X	O	O
31	O	O	O	O	O	X	O	O	O	O	X	X	O	X	O
31-1	O	O	O	O	X		O		X						
31-2	O	O	O	O	O		O		X						
32	X	O	X	X	O	O	O	O	O	O	X	X	X	X	O
32-1	O		O	X							X	X	O	X	
33	X	X	X	X	X	O	X	O	X	X	X	X	X	X	X
33-1															
33-2	O	O	O	X	O		O		O	O	X	O	O	O	O
34	X	O	O	O	X	X	O	X	O	O	O		O	X	X
35	X	X	O	O	X	X	O	X	O	O	O			X	X
36	O	O	O	X	O	O	O	O	O	O	X			O	O
37		O	X	X	O	X			O						X

문항 번호	대전										제주				
	도 서 관 31	도 서 관 32	도 서 관 33	도 서 관 34	도 서 관 35	도 서 관 36	도 서 관 37	도 서 관 38	도 서 관 39	도 서 관 40	도 서 관 41	도 서 관 42	도 서 관 43	도 서 관 44	도 서 관 45
1	X	O	X	X	X	X	X	X	O	X	X	X	X	X	X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4-1	O	O	O			X	O	O	O	O	O	O	O	O	O
5	X	O	X	O	O	O	X	O	O	X	O	X	O	X	X
5-1		X		X	X	X									
6				O	O	O	O	O	O	O			X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X	O	O	O	X	O	O	O			O	X	O	O	O
9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X	O	O	O
10	X	O	O	O	O	X	X	O	O	O	O	X	O	X	O
10-1		O	O	O	O			O	O	*	X		O		O
11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11-1	O	O	O	O	X		O	O	O	O	X	X	O	O	O
12	X	O	O	O	O	O	X	O	O	O	X	O	O	O	X
12-1		O	O	O	O	X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14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15	O	O	O	X	X	X	X	X	O	O	X	O	O	O	O
16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17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18	X	X	O	O	O	O	X	X	O	O	X	O	O	O	O

19	O	O	O	X	X	X	X	X	O	O	X	O	X	O	O
20	O	O	O	X	X	X	X	X	O	O	O	O	X	O	O
21	X	O	O	O	O	O		O	O	O	O	O	O	O	O
21-1		O	X	O	O	X		O	X	O	O	X	O	O	O
22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23	X	X	O	O	X	X	X	X	O	O	O	X	X	X	X
24	O	O	O	X	O	O	O	O	O	O	X	O	O	O	O
25	O	O	O	X	O	O	X	O	O	O	X	O	O	O	O
26	O	O	O	X	O	O	X	O	O	O	O	O	X	O	O
27	O	X	O	X	X	X	X	X		O	X	O	X	O	X
28	O	O	O	X	O	X	O	O	O	X	X	X	O	O	O
29	O	O	O	X	X	O	X	O	O	X	X	X	X	O	O
30	X	X	X	X	X	X	X	O	O	O	X	X	X	X	X
31	O	O	O	O	X	X	X	X	O	O	O	X	X	X	O
31-1										O					
31-2										O					
32	X	X	O	X	X	X	O	X	X	O	O	O	O	O	X
32-1	X	O		O	O	X		O	O						O
33	X	X	O	X	X	X	X	X	X	X	X	X	X	O	X
33-1															
33-2		O		O	O	O	X	O	O	O	O	O	O		O
34		O		X	X	X	X	X	O	O		O	O	O	
35				X	X	X	X	O	O			X	X	X	
36	O	O		O	X	O	X	O	O	O		O	O	O	
37							O		X						

문항 번호	제주														
	도 서 관 46	도 서 관 47	도 서 관 48	도 서 관 49	도 서 관 50	도 서 관 51	도 서 관 52	도 서 관 53	도 서 관 54	도 서 관 55	도 서 관 56	도 서 관 57	도 서 관 58	도 서 관 59	도 서 관 60
1	X	X	X	X	X	X	X	X	X	X	X	O	X	X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X	O	X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4-1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5	X	X	O	X	X	X	O	X	O	X	X	X	X	O	O
5-1															
6			X	O				O						O	
7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9-1	X	O	O	X	O	O	O	O	O	O	X	O	O	O	O
10	O	O	O	O	O	X	O		O	O	X	X	O	O	O
10-1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X	X	O	O	X	X	O	X	X	X	X	X	O	O	O
12	O	O	O	X	X	X	O	X	O	O	X	X	X	O	O
12-1	O	O	X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15	O	X	O	O	O	O	O	O	O	O	O	O	X	O	O
16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17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18	X	O	O	O	O	O	O	X	O	O	X	O	O	O	O

19	X	X	X	O	O	X	O	X	X	O	X	X	X	O	X
20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21	O	O	O	O	O	O	O	O	O	O			X	O	O
21-1	O	O	O	X	O	O	O	O	O	X	O			O	O
22	O	O	O	O	O	O	O	O	O	O	O	O	X	O	X
23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24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25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26	O	O	O	O	O	O	O	X	O	X	O	O	O	X	O
27	O	X	X	X	O	O	X	O	O	X	O	O	X	X	O
28	X	O	O	O	O	X	O	O	O	O	X	O	O	O	O
29	O	O	O	O	O	X	X	O	X	X	O	O	X	O	O
30	O	X	X	X	O	O	X	O	X	X	O	X	O	X	O
31	O	X	O	O	O	O	O	X	O	X	O	O	O	X	O
31-1							X								*
31-2							X								*
32	O	X	O	O	X	O	O	O	O	X	X	O	O	X	O
32-1		O			O					O	O			O	
33	X	X	X	X	O	X	X	X	O	O	X	X	O	X	O
33-1					O				O						O
33-2	O	O	O	O		O	O	O			O	O		O	
34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35	X	X		X	X	X	X	X	O	X	X	X	X	X	X
3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7															

문항 번호	제주		광주												
	도 서 관 61	도 서 관 62	도 서 관 63	도 서 관 64	도 서 관 65	도 서 관 66	도 서 관 67	도 서 관 68	도 서 관 69	도 서 관 70	도 서 관 71	도 서 관 72	도 서 관 73	도 서 관 74	도 서 관 75
1	X	X	X	O	O	O	O	X	O	X	X	O	X	X	X
1-1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4-1	O	O			O	O	O	X	O	X	O	O	O	O	O
5	O	X	X	X	X	O	O	O	X	O	O	O	X	X	O
5-1						O		O		O	O				
6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X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X	X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1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	O	X	O	X	O	O	O	O	O	O	O	O	O	O	O
11-1	X		X		X	X	O	X	X	O	O	O	O	O	X
12	O	O	X	O	O	O	O	O	X	O	O	O	X	O	X
12-1	O	O		O	O	O	O	O		O	O	O		O	
13	O	X	O	O	O	O	O	O	X	O	O	O	O	O	O
14	O	X	O	X	X	O	O	O	O	O	O	O	X	O	O
15	X	X	O	X	O	O	X	O	O	X	X	O	X	X	X
16	O	X	X	O	O	X	O	O	O	O	O	X	O	O	O
17	O	O	O	X	O	X	O	O	O	O	X	O	X	O	O
18	O			O				O	O	O	O	O	O	O	O

19	X		X	X	X	X	O		X	X	O	X	X	X	X
20	O		X	X	O	O	O		O	O	O	X	O	O	O
21	O		O		O	O	O	O	O	O	O	O	O	O	O
21-1	O		O		O	O	O	O	O	O	X	O	O	O	O
22	O	O	O	O	O	X	O	O	O	O	X	X	O	O	O
23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24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25	X	O	X	X	O	O	O	O	X	O	X	X	O	O	O
26	O	X	O	X	X	O	X	X	X	O	O	X	X	X	O
27	X	X	X	X	X	X	O	X	X	X	X	X	X	X	X
28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29	O	O	X	O	O	X	O	O	X	X	X	X	X	X	O
30	O	X	X	X	O	O	O	X	O	X	O	X	X	X	O
31	O	X	X	X	O	O	X	O	X	O	X	O	O	X	O
31-1												O	O		
31-2												O	O		
32	O	X	X	X	O	O	X	X	X	O	O	O	X	X	O
32-1		X	O	O			O	O	O				O	O	
33	X	X	X	X	X	X	O	X	X	O	X	X	X	X	O
33-1															O
33-2	O	O	O	O	O	O		O	O		O	O	O	O	
34	O		X	X	O	O	O	X	O	X	O	O	O		O
35	O		O	O	X	X	X	X	X	X	X	O	X		X
36			X	X	X	X		X	O		O	O	O		O
37				X	X	X			X	X	X	X	X		

문항 번호	광주														
	도 서 관 76	도 서 관 77	도 서 관 78	도 서 관 79	도 서 관 80	도 서 관 81	도 서 관 82	도 서 관 83	도 서 관 84	도 서 관 85	도 서 관 86	도 서 관 87	도 서 관 88	도 서 관 89	도 서 관 90
1	X	O	X	O	X	O	X	X	X	X	X	X	X	X	X
1-1	O		X		O		O	O	O	O	O	O	O	O	X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1		O	X	O	X	O	O	O	O	O	O	O	O	X	X
5	X	O	O	X	X	X	O	O	O	X	X	O	O	X	X
5-1															
6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X		X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X	O	O	X	O	O	O	O	O	O	O	O	O	O
10	O	O	X	O	O	O	O	O	X	O	O	O	O	X	X
10-1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X	O	X	O	O	O	O	X	X
11-1	X	O	X	X	O	X		O		O	X	O	X		
12	X	O	O	X	X	O	O	O	X	O	O	O	O	X	O
12-1		O	O			O	O	O		O	O	O	O		X
13	O	O	X	O	O	O	X	O	X	O	O	O	O	X	X
14	O	X	O	O	O	O	X	O	X	O	O	O	O	X	X
15	O	X	O	O	O	O	X	X	X	O	X	O	O	X	X
16	O	X	O	O	O	O	X	O	X	O	O	O	O	X	X
17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			O	O	O		X	O	X	O	X	O	O	X	X

19	X	X	X	X	X	X	X	O	X	X	X	O	X	X	X
20	O	X	O	O	X	X	X	O	X	X	O	O	X	X	X
21	O	O	X	X	X		O	X	O	O	O	O	O		O
21-1	O						O		O	O	O	O	O		O
22	O	O	O	O	O	O	O	O	X	O	O	O	O	X	O
23	X	X	X	X	X	O	X	O	X	X	X	X	X	X	X
24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25	O	O	X	X	X	X	X	X	O	X	O	O	O	O	X
26	X	O	O	O	O	X	O	O	O	O	O	O	O	X	O
27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28	O	O	O	O	O	X	O	X	X	X	O	O	X	O	X
29	O	O	O	O	X	X	X	O	O	X	O	X	X	O	X
30	O	O	O	X	X	O	X	X	X	X	X	X	X	X	X
31	X	O	X	X	X	O	O	X	X	X	X	O	O	X	O
31-1		O													
31-2		O													
32	O	O	O	X	X	O	X	X	X	X	X	X	X	X	X
32-1				O	X		O	O	O	O	O	O	O	X	O
33	X	X	X	X	X	O	X	X	X	X	X	X	X	X	X
33-1															
33-2	O	O	O	X	O		O	O	O	O	O	O	O	X	O
34	O		O	X	O	O	O		X			X	X	X	X
35	X		O	O	O	O									
36	O		X	X			O		O			O	O	O	O
37	X		X	X											

문항 번호	광주		대구													
	도 서 관 91	도 서 관 92	도 서 관 93	도 서 관 94	도 서 관 95	도 서 관 96	도 서 관 97	도 서 관 98	도 서 관 99	도 서 관 100	도 서 관 101	도 서 관 102	도 서 관 103	도 서 관 104	도 서 관 105	
1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4-1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5	O	X	O	X	X	X	X	X	X	X	X	X	O	X	X	O
5-1													X			
6																
7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X	O	O	X	O		X	O	O
10-1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O	X	O	O	O	O	O	X	X	O	O	O	O	O	O	O
12	X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1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15	X	X	O	O	X	O	X	O	X	X	O	O	O	X	O	O
16	O	O	O	O	X	O	O	O	O	O	O	O	X	O	O	O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X	O	X	X	O	X		O	X	X	X	X	X	X	X
20	O	O	O	X	X	X		O	X	X	X	X	X	X	X
21	X	O	O	O	O	O	X	O	O		O		O	O	O
21-1		O	O	O	O	O		O	O		O		O	X	O
22	O	O	O	O	O	O	O	O	O	O	O	X	O	X	O
23	X	O	X	X	O	X	X	X	X	X	X	X	X	X	O
2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5	X	O	O	X	O	O	O	X	O	O	O	O	X	O	O
26	O	X	O	X	X	X	X	O	O	X	O	O	O	X	O
27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28	X	O	O	O	X	O	O	O	O	O	X	O	O	O	X
29	X	O	O	X	X	O	X	O	X	O	X	O	O	O	O
30	O	X	X	O	O	X	X	X	X	O	O	X	X	X	X
31	O	O	O	O	X	O	O	O	O	X	O	O	X	O	X
31-1	O													O	
31-2	O													O	
32	O	O	O	O	O	O	X	O	X	X	O	X	O	O	O
32-1							O		O	X		O			
33	X	O	O	X	X	O	O	O	X	X	X	X	X	O	O
33-1		*	O			*		O							O
33-2	O			O	O				O	O	O	O	O	O	
34	X	O	O	O	O	O	O	O						O	O
35		O	O	O	O	O	O	O						O	O
36	O	O	O	O	O	O	O	O						O	O
37															

문항 번호	대구													부산	
	도 서 관 106	도 서 관 107	도 서 관 108	도 서 관 109	도 서 관 110	도 서 관 111	도 서 관 112	도 서 관 113	도 서 관 114	도 서 관 115	도 서 관 116	도 서 관 117	도 서 관 118	도 서 관 119	도 서 관 120
1	○	○	○	○	○	×	×	×	×	×	×	×	×	○	×
1-1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5-1		○									*			○	
6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9-1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0-1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1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2-1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19	O	X	O	O	X	X	X	O	X	O	X	X	X	O	O
20	O	O	X	X	X	X	X	X	X	X	O	X	X	X	X
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2	X	O	O	O	O	O	O	O	O	O	X	O	X	O	X
23	X	X	X	X	O	X	X	O	X	X	X	X	X	X	X
24	O	O		O	O	O	O	O	O	X	O	O	O	O	O
25	O	O		O	O	O	O	O	X	X	O	X	O	O	X
26	O	O		X	X	X	X	O	O	X	O	O	X	O	O
27	O	O		X	X	X	X	X	X	X	O	X	X	X	X
28	X	O	O	O	O	O	O	O	X	X	O	O	O	X	X
29	X	O	O	X	O	X	O	O	O	X	O	X	X	X	X
30	X	O	X	X	X	O	X	O	O	O	O	O	O	X	O
31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1		O			X	O			O	O	X	O			
31-2		O			O	X			O	O	O	O			
32	X	O	X	X	O	O	X	X	X	O	O	O	X	X	X
32-1	O	O	O	O			O	O	O				O	O	O
33	X	O	X	X	O	O	O	O	O	X	O	O	O	X	X
33-1		O			O	O	X	*	O			*			
33-2	O		O	O						O				O	O
3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5		O			O	O	O	O	O	O	O	O	O	O	O
3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7															

문항 번호	부산														
	도 서 관 121	도 서 관 122	도 서 관 123	도 서 관 124	도 서 관 125	도 서 관 126	도 서 관 127	도 서 관 128	도 서 관 129	도 서 관 130	도 서 관 131	도 서 관 132	도 서 관 133	도 서 관 134	도 서 관 135
1	X	X	O	O	X	X	O	X	O	X	O	O	O	O	O
1-1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X	O	O	O	X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1	O	O	O	O	O	O	O	O	O	O	X	X	O	O	O
5	O	O	O	X	X	O	O	X	X	X	X	X	X	X	X
5-1															
6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8	O	O	O	X	O	O	O	O	O	X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X	O	O	X	O	O	O	O	O	O	O	O	X	
10-1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O	O	O	X	O	O	O	O	X	O	O	X	O	X	X
12	O	O	X	O	O	O	O	X	O	O	O	O	X	O	O
12-1	O	O		O	O	O	O		O	X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X	O	X	O
14	O	O	O	O	O	O	X	X	O	O	O	X	O	O	X
15	O	O	O	X	X	O	X	X	O	X	O	O	X	X	X
16	O	O	O	X	O	O	O	O	O	O	O	O	O	O	X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18	O	O	O	O	O	O	X	O	O	X	O	O	O	O	O

1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21-1	○		○		○	○	○	○	○	○		○	○		
22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31-1															
31-2															
32	○	○	○	○	○	○	○	○	○	○	○	○	○	○	○
32-1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33-1															
33-2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
37				○		○	○	○				○	○		

문항 번호	부산														
	도 서 관 136	도 서 관 137	도 서 관 138	도 서 관 139	도 서 관 140	도 서 관 141	도 서 관 142	도 서 관 143	도 서 관 144	도 서 관 145	도 서 관 146	도 서 관 147	도 서 관 148	도 서 관 149	도 서 관 150
1	O	O	O	O	X	X	X	O	O	O	O	O	O	O	O
1-1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O	O	O	O	O	X	O	X	X	X	O
4-1	O	O	O	O	O	O	O	O	O		O				O
5	O	X	X	O	X	X	X	X	O	X	O	X	X	X	O
5-1											O				
6		X	O		O	O									
7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X	O	O	O	O	O	X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X	O	O	X	X	X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11-1	O	O	O	X	O	X	O	X	X	O	O	O	X		O
12	O	O	O	O	X	X	O	O	O	O	X	X	O	X	O
12-1	O	O	O	X			O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14	O	O	O	O	O	O	O	O	O	X	X	O	O	X	O
15	O	O	O	O	X	O	X	X	O	O	X	O	O	X	O
16	X	O	O	X	O	X	X	O	X	X	O	O	O	X	X
17	O	O	X	O	X	X	X	O	X	O	O	O	O	X	O
18	X	O	O	O	O	O	X	O	X	O	O	O	O	X	O

19		X	O	X	X	O		O	X	O	O	O	O	X	O
20		O	X	O	O	O		O	O	O	O	O	O	X	X
21	O	O	O	O	O	X	O	O	X	O	O	O	O	O	X
21-1	X	O	O	X	O		O	O		X	O	O	O	O	
22	O	X	O	O	X	O	O	O	O	X	O	O	O	O	O
23	O	O	O	X	X	O	X	X	X	X	X	X	X	X	X
24	O	O	O	X	O	X	O	O	O	O	O	O	O	O	O
25	X	O	O	X	O	O	X	X	O	O	O	O	O	O	O
26	X	O	O	O	X	X	X	O	X	O	X	X	X	X	O
27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28	X	O	O	X	X	X	X	O	X	O	O	X	O	X	O
29	O	O	X	X	X	O	X	X	O	X	O	X	O	X	O
30	O	O	X	X	X	X	O	O	O	O	O	X	X	X	X
31	O	O	O	X	O	O	O	O	O	O	O	O	O	X	O
31-1	O	O						O	X	O	O	O			
31-2	O	O						O	O	O	O	X			
32	O	O	O	X	X	X	O	O	O	O	X	X	O	X	O
32-1				O	O	O					O	O		O	
33	O	X	O	X	X	O	X	X	X	X	O	X	X	X	X
33-1			O			O									
33-2		O		O	O		O	O	O	O		O	O	O	O
34	O	O	O	O	X	O	O	O	O	O	O	X	X	O	O
35	O	O	O	O	X	O	X	O		O	O	X	X	O	X
36	O	X	O	O	X	O	O	O		O	O	X	X	O	O
37		X		X	X						O	X	X	O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 기관이 회신 공문을 보냈으나 그 내용이 미흡 또는 모호해서 개선계획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12개소(8.0%), 하기와 같이 표기
  -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1개소(0.7%), 하기와 같이 표기
  -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서울	
도서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및 각 자료실에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10월말 완료 예정)</li> <li>- 통로 내에 있던 휴지통 제거함</li> <li>- 화장실 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11월 중)</li> <li>- 세면대를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하도록 교체 완료함</li> <li>- 열람실 책상 사이에 있던 안내판을 이동시킴으로써 적정 통과유효폭 확보 예정</li> <li>-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하여 개선 예정(2015년 2~6월)</li> </ul>
도서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완료(2014년 6월)</li> <li>- 자료실 입구 이용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확보 완료(2014년 5월)</li> <li>- 장애인 전용 열람석에 높이조절책상 설치 완료(2014년 6월)</li> <li>- 연속간행물실 장애인전용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설비 설치 완료(2014년 6월)</li> <li>- 2015년 도서관 근무 직원 대상 수화강의 추진(2015년 3월중)</li> </ul>
도서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탑재 동영상 제작 시 자막 포함하여 제작하겠음</li> <li>- 예산 확보 노력 후 순차적으로 개선하겠음</li> </ul>
도서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관련, 청사 관리 주체인 주민센터와 협의 후 개선</li> </ul>
도서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입구에 부착식 점형블럭 설치하겠음</li> <li>- 화장실 칸막이 이동 등을 통하여 남자용 장애인화장실 내 대변기 칸 적정 바닥면적(폭 1.0미터, 너비 1.8미터) 확보하겠음</li> <li>-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오디오북, 큰글도서, 점자자료 제공 예정</li> <li>- 홈페이지 내 홍보물을 게시할 때 이미지 내용과 동일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겠음</li> <li>-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하겠음</li> <li>- 동영상이 있는 경우 자막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li> </ul>
도서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 추진</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한 시설접근성 항목 관련, 2015년도에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받아 추진 예정</li> <li>- 도서대출대, 자료검색대 항목 관련, 직원의 도움으로 같음하겠음</li> </ul>
도서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이 자료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센스리더, 보청기, 한손키보드, 특수마우스 빅트랙 등의 기기 구입 및 설치 완료(2014년 4월)</li> </ul>
도서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용 열람석 설치 완료함</li> <li>- 휠체어·시각·청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직원 1:1 자료 검색서비스 및 필담서비스를 제공하겠음</li> <li>-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막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도서관 관리주체측에 적극 건의하겠음</li> </ul>
도서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여유공간이 없어서 개선이 곤란함</li> <li>- 도서대출대 및 열람실 관련, 예산부족으로 교체가 곤란함</li> <li>-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하겠음</li> </ul>
도서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5층 로비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이후)</li> <li>- 자료실(어린이/종합/디지털) 내 책상 사이의 적정 통과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책상을 교체 및 이동배치하겠음</li> <li>- 자료실(어린이/종합) 내 서가 사이의 적정 통과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해 서가의 이동 및 재배치 작업을 시행하겠음</li> <li>- 시각장애인 전용 피씨에 이미 화면낭독프로그램(sense reader)가 설치되어 있으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법 교육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적인 사용성을 제고하겠음</li> <li>- 수화 가능한 자원봉사자 모집 또는 복지단체와의 연계 추진</li> <li>- 웹사이트에 게시글 작성 시, 이미지에 Alt태그로 텍스트를 추가하겠음</li> <li>- 전자책제공업체에 전자책컨텐츠의 키보드사용성 제고 요청</li> <li>- 동영상에는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 및 게시하겠음</li> </ul>
도서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기 존재함</li> </ul>
도서관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환경개선비 예산 요구 후 개선하겠음</li> </ul>
도서관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및 2·3층자료실 부근의 이용자확인구간에 각각 장애인도움벨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요청 시 직원 도움을 제공하겠음</li> </ul>
도서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점형유도블럭을 연장할 계획임</li> <li>-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 부착할 계획임</li> </ul>
도서관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에 2015년 화장실 개선 시설비 예산(261,540원) 신청 하였음, 예산 반영 시 2015년 8~10월 공사 예정</li> <li>-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하겠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7	- 주출입문이 이중형태로 외부는 여단이, 내부는 자동문으로 되어있어서 장애인등의 출입에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봄
도서관18	-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접근성 개선 어려움 - 단, 1층에 장애인 전용 이용실을 설치하고 택배도서대출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도서관19	- 2015년 환경개선사업 예산 신청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개선
도서관20	-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관련, 지층은 남자용, 1·2층은 여자용으로 구분 완료 -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수리 완료
도서관21	-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을 자동문으로 교체예정(2015년 하반기) -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5년 하반기) - 장애인정보누리터 조성하고, 내부에 음성지원서비스 제공 및 저시력 용독서기와 확대경 비치 완료(2014년 9월)
도서관22	- 장애인화장실의 구체적 규격 관련, 교육박물관 화장실을 개축하여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만들겠음 - 시각장애인이 자료검색도구 이용 시, 직원의 도움 제공 -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서(2013년 7월) 확보하고 있음. 다만,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 설명처리가 안 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도서관23	- 시각장애인이 자료검색대 이용 시, 직원 1:1 자료검색서비스 제공 -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시 웹접근성 확보를 명시하겠음
도서관24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주문제작 신청 중이며, 곧 부착시공 예정 -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관련, 1층 여자, 2층 남자로 구분 완료
<b>대전</b>	
도서관25	- 주출입구 점형블록 수리 완료 - 2016년 예산반영을 통해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6년 3월말까지) - 세면대 높이 조정을 통해 개선 예정(2014년 10월말까지) - 도서대출대를 높이 0.75m, 하단높이 0.65m, 깊이 0.66m로 설치해서 개선 완료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예정(2014년 10월말까지)
도서관26	- 돋보기 2개 설치 - 장애인의 요청 시, 필담 등의 보조인력 및 서비스 적극 제공
도서관27	- 책상을 재배치하여, 책상과 책상 사이의 유효폭을 1.2m로 개선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예산반영을 통해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6년 3월말까지)</li> <li>- 여자장애인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며, 남자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2015년 9월말까지)</li> <li>- 현재 존재하는 여자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2.27m, 깊이 1.9m로 법적기준 충족하고, 잠금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조임</li> <li>- 여자장애인화장실의 세면대 높이 개선 예정(2014년 10월말까지)</li> <li>- 도서대출대를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개선해 설치 예정(2014년 10월말까지)</li> <li>- 열람실 구조개선을 통해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을 1.2m 확보(2016년 12월말까지)</li> <li>- 대전시 공공도서관 브라우저 방식의 자료검색사업 완료시점에 맞추어 PC화면낭독소프트웨어 설치 및 도서관 자료 음성안내 실시 예정(2015년 6월말까지)</li> <li>-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점자안내자료 제공토록 개선 완료</li> <li>-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예정(2014년 10월말까지)</li> </ul>
도서관29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30	- 미충족 문항들 관련, 2015년 본예산 반영 후 개선 예정
도서관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12월 이전)</li> <li>- 현재 설치된 휠체어리프트가 3층 중 2층까지만 운행하므로, 예산 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점자 및 확대문서로 제작된 이용안내책자 비치 예정(2015년 1월)</li> <li>-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활동보조인력 제공되도록 개선 완료</li> </ul>
도서관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성안내장치도 작동됨</li> <li>- 화장실 잠금장치가 정상 작동됨</li> <li>-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하부공간을 갖춘 도서대출대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li> <li>-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1.2m 확보를 위한 열람실 구조개선 예정(2016년 12월말까지)</li> <li>- 대전시 공공도서관 브라우저 방식의 자료검색사업 완료시점에 맞추어 PC화면낭독소프트웨어 설치 및 도서관 자료 음성안내 실시 예정(2015년 6월말까지)</li> <li>-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점자안내자료 제공토록 개선 완료</li> <li>-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예정(2014년 10월말까지)</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예정(백이십만원, 2015년 11월)</li> <li>- 2층 및 3층 자료실 내 검색컴퓨터에 화면낭독프로그램 설치 예정(팔십만원, 2015년 11월)</li> <li>- 자료검색프로그램(KOLAS3)와 화면낭독프로그램 간 호환성이 낮아 최적의 편의제공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방안 마련 고민</li> </ul>
도서관34	- 책상의 높이 및 하부공간이 법적 기준 충족함
도서관35	- 주출입구 및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 복도의 통과유효폭이 적정하다고 봄
도서관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돋보기가 설치되어 있음</li> <li>- 도서관안내자료 제작 시 점자자료 별도 제작 예정</li> </ul>
도서관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11월)</li> <li>- 화장실 입구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1월)</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필담 제공 가능함</li> </ul>
도서관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휠체어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완료함</li>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함</li> <li>-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에 휠체어장애이용 출구 따로 마련함</li> <li>- 2층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도구함과 비장애인화장실 각 1개씩을 합쳐서 남자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완료함</li> <li>- 청각장애인의 요구 시 직원이 필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씨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돋보기가 있음</li> </ul>
도서관39	- 2015년 도서구입 시 큰글씨도서 구입 예정
도서관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에너지절감을 위해 교대운행 중임</li> <li>- 자료검색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완료함</li> <li>- 골전도헤드셋 및 공공보청기 보유 중임</li> </ul>
제주	
도서관41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42	- 주출입구 및 2·3층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으로 휠체어장애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완전개방하겠음
도서관43	- 청각장애인 요청 시 필담가능한 직원 제공하겠음
도서관44	- 장애인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이 지역내 도서관들에 연차별로 돌아가는데, 해당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기 구입 및 비치 예정
도서관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대 구조 변경 예정(2015년)</li> <li>- 도서관열람실 내 휠체어사용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 예정(2015년)</li> <li>- 자료검색대 내 음성지원기기 등을 구입 예정(2015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이 건물 구조상 어려우나, 고심 중</li> <li>-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공사 중</li> </ul>
도서관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안내판 재정비 시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대번기 바닥유효면적이 1.8m*1.5m로 법적 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대출대 리모델링 시 하부공간 확보 예정</li> <li>- 서가 사이 적정 통과유효폭은 장기 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겠음. 단, 장애인 대체자료 비치 서가의 통과유효폭은 적정함</li> </ul>
도서관48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및 보완(2014년 11월)</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2015년 상반기)</li> </ul>
도서관50	- 장애인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
도서관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추진(2015년)</li> <li>-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2014년 8월)</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및 세면대 높이 개선 추진(2015년)</li> <li>- 도서대출대, 자료검색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 개선 추진(2015년)</li> <li>- 화상전화기 설치 추진(2015년)</li> <li>-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 시,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일괄 개선 예정(2014년 10월)</li> </ul>
도서관52	- 주출입구 경사로 정비 완료함(2014년 6월)
도서관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추진(2015년)</li> <li>- 총 주차대수가 7대로 [편의증진보장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봄 (국가인권위 의견: 상기 법에 의거하여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보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대 이상 구분·설치하여야 함)</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추진(2015년)</li> <li>- 독서용 책상과 책상 사이의 통행로가 1.2m 이상이라고 봄</li> <li>- 확대경(돋보기) 등은 2014년중 구입 비치하고, 저시력용독서기와 음성지원컴퓨터 등은 향후 검토 후 추진 예정</li> <li>- 수화통역 가능 자원봉사자 모집 추진</li> </ul>
도서관54	-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2015~2016년 예산 확보하여 추진 예정
도서관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추진(2015년)</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에 관련, 1층 여자, 2층 남자로 추진 예정</li> </ul>
도서관56	- 복도에 있던 장애요인(화분) 즉시 이동 조치
도서관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관련, 2015년 도서관 리모델링 시 설치</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li> <li>- 자료검색 시 음성지원기능 관련, 한소네 자산취득 예정(2015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각 2m 이상 및 세면대 높이 70cm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li> <li>-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 너비가 90cm로 충족한다고 봄</li> <li>- 열람실 내 장애인전용 높낮이조절책상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충족한다고 봄</li> </ul>
도서관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에 돋보기 비치하고, 점자자료를 구입의뢰할 것임</li> </ul>
도서관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높이 관련, 2015년도 예산확보하여 세면대 상단높이 0.85m, 하단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 예정</li> <li>- 도서대출대 높이 관련, 2015년도 예산확보하여 높이 0.7m 이상 0.9m 이하로 설치 예정</li> <li>- 저시력용 돋보기, 확대경 및 기타 장비 15종(특수키보드 미투, 센스리더프로페셔널, 줌텍스트, 휴대용확대독서기 센스뷰듀오,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보이소아이 라이프, 화상전화기 비쥬폰, 음성증폭기 하하, 의사소통보조기기 아드보케이트, 장애인전용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음</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홈페이지 오픈 시 개선 예정(2014년 10월)</li> </ul>
도서관61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b>광주</b>	
도서관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 위해 경사로 설치 추진(2015년중)</li> <li>- 장애인화장실 설치/리모델링 추진 시 고려하겠음(2015년중)</li> <li>- 책상과 책상 사이 및 서가와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을 1.2m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즉시 강구</li> <li>- 확대경(돋보기) 즉시 비치</li> </ul>
도서관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되어 있음</li> <li>- 현재 웹사이트에서 전자책서비스 제공 중임</li> </ul>
도서관64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벽면 남녀구분 풋말 부착 예정</li> <li>- 열람실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1.6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ul>
도서관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물품 관련,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BF일반등급에 준하여 BF시행기준 및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설계 및 시공을 하겠음</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2015년 홈페이지 관리용역 계약 시 반영하겠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1.8m, 깊이 1.93m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li> <li>- 열람실 책상 사이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 되도록 즉시 조정</li> <li>-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확대경(돋보기)는 기 비치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시 저시력용독서기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음</li> </ul>
도서관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실 책상 사이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 되도록 즉시 조정</li> <li>-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 시, 구 본청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체수단인 필담 제공을 위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음</li> <li>- 웹사이트에서 2000년 9월 개관 시부터 전자책기능을 제공 중임</li> </ul>
도서관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은 2015년 예산확보 후 설치 예정</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은 즉시 설치</li> <li>- 열람실 책상 사이의 통과유효폭은 규격에 맞게 즉시 조치함</li> <li>- 자료검색대 하부공간 관련, 높이 0.73m, 깊이 0.60m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확대경(돋보기) 제공 및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로써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문서 관련, 2015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 예정(2015년)</li> <li>-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웹캠기기는 이미 설치하였음(2013년 12월)</li> <li>- 웹사이트에서 전자책서비스를 운영 중임</li> </ul>
도서관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1.8m*1.0m 이상으로 휠체어 회전 가능하다고 봄</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예산반영 예정</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1.3m 이상 충족한 공간도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서가 배치를 통해 조정할 계획임</li> <li>- 자료검색대 음성지원기능 관련, 2015년 예산반영 예정</li> <li>-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 정보확인 및 기능이용 관련, 홈페이지 개편 시 콘텐츠별 모듈 개선을 통해 문제점 해결(2016년)</li> <li>-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서비스가 첨가된 동영상콘텐츠 확충(2015년)</li> </ul>
도서관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 정보확인 및 기능이용 관련, 홈페이지 개편 시 콘텐츠별 모듈 개선을 통해 문제점 해결(2016년)</li> <li>-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서비스가 첨가된 동영상콘텐츠 확충(2015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대변기 높이가 0.4m로 법적 기준에 충족한다고 봄</li> <li>- 세면대의 높이는 상단높이 0.8~0.84m, 하단높이 0.65~0.67m로 일부분 법적 기준에 충족한다고 봄</li> <li>- 열람실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이 충분하다고 봄</li> <li>-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서비스가 첨가된 동영상콘텐츠 확충(2015년)</li> </ul>
도서관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 2015년 본예산에 편성 및 시설 요구하겠음</li> </ul>
도서관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 너비 1.30m, 깊이 1.80m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li> <li>- 열람실 책상이 ‘—’자 배열이어서 통과유효폭이 적정하다고 봄</li> <li>- 돋보기 구입 예정(2014년 11월)</li> </ul>
도서관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에서 일부분 법적기준 미충족이나, 현재 장애인의 자료검색에서 접근·열람까지 자료 이용 전반에 걸쳐 일대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li> <li>- 서가 사이 공간은 통행목적의 통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또한, 1.2m 이상 통과유효폭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휠체어사용자의 시야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 이용·접근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일대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li> </ul>
도서관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이 법적기준 미달이나,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li> <li>- 서가 쪽 관련, 자료실 직원에게 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요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li> </ul>
도서관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계단손잡이 핸드레일 점자촉지판, 승강기 점자안내판, 각실별 점자촉지판 및 훼손된 점형블록은 올해 11월~12월 중으로 설치 예정. 견적 의뢰했음(2014년)</li> <li>- 장애인화장실 관련, 전반적인 개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현안사업으로 예산확보 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예정</li> <li>- 휠체어장애인 출입구는 따로 마련하는 것 관련, 2015년부터 현안사업으로 예산확보 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예정</li> <li>- 도서대출대의 높이 0.75m, 깊이 0.1m로 깊이가 미달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현안사업으로 예산확보 후 리모델링 예정</li> </ul>
도서관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리프트 이용 시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관리 철저히 하겠음(2014년)</li> <li>- 화장실 관련,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하여 설치, 대·소변기 칸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면대 상단높이 개선하겠음(2014년)</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개선하겠음(2014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현관 입구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li> <li>- 주출입구를 0.8m 이상으로 확장하여 휠체어장애인 통행을 위한 통과유효폭 개선 예정(2015년)</li> <li>- 장애인화장실을 1층 남자용, 2층 여자용으로 이용 조치 및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 6개 설치 예정(2015년)</li> <li>- 자료실 출입구 확장공사 실시 예정(2015년)</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을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으로 확장공사 예정(2015년)</li> <li>- 열람실에 휠체어장애인용 테이블 1개 구입 예정(2015년)</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자료검색도구 구입 예정(2015년)</li> <li>- 저시력용독서기, 확대경 구입 예정(2015년)</li> </ul>
도서관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2015년)</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도서대출대 높이 및 하부공간이 법적기준에 미충족이나, 자원봉사자가 상시 대기하여 도서대출을 도와주고 있음</li> <li>- 자원봉사자가 상시 대기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조인력이 제공되고 있다고 봄</li> </ul>
도서관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4명이 상시 대기안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요구 시 상당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봄</li> </ul>
도서관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이 법적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대체수단으로써 무인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휠체어사용자들이 대출대를 거치지 않고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보완함</li> <li>- 모니터링 이후 장애인전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 비치하였음</li> <li>- 장애인정보누리터 내 책상은 높낮이조절이 가능하며, 컴퓨터에 음성지원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자료검색 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함</li> </ul>
도서관83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84	※ 미회신 기관
도서관85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주민센터 수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도서대출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도서대출 빈도가 낮은 도서를 지하서고로 분류하여 이동보존 후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을 법적기준에 맞게 확보 예정(2015년 3월중)</li>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료검색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물품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는 시정 완료(2014년 8월)</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지역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ul>
도서관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도서대출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료검색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물품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전북농아인협회 부장에 지원요청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하겠음</li> </ul>
도서관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4월 11일 이전 신축건물이며 건물구조 및 안전 상 엘리베이터 추가설치가 불가하다고 봄</li> <li>- 건물 1층에 법적규격에 맞는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도서대출대 확보(2014년 말까지)</li> <li>- 책상 사이 및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조정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시각장애이용 음성지원 또는 키보드만으로 자료검색가능케 하는 기타설비 설치 예정(2015년)</li> <li>-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확대경 설치 예정(2015년)</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개편 완료 예정(2015년)</li> </ul>
도서관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안내판을 설치 완료</li> <li>-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넓은(1.2m 이상) 출입자확인구간 출입구(문)을 확보 개선 완료</li> <li>-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개선함</li>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도서대출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도서대출 빈도가 낮은 도서를 지하서고로 분류하여 이동보존 후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을 법적기준에 맞게 확보 예정(2015년 3월)</li> <li>-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료검색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물품은 구입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li>-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시정 완료(2014년 8월)</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지역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2014년 말까지)</li> <li>- 대변기 적정 유효바닥면적 확보(2014년 말까지)</li> <li>- 세면대 적정 높이(2014년 말까지)</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확보(2014년 말까지)</li> <li>- 서가 사이의 적정 통과유효폭 개선(2014년 말까지)</li> <li>- 자료검색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2014년 말까지)</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개편 완료 예정(2015년 상반기)</li> </ul>
대구	
도서관92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은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설치</li> <li>- 세면대 높이는 확보되어있다고 봄</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확보 및 자료검색대의 음성지원기능 제공 또는 키보드만으로 검색가능기능은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li> </ul>
도서관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은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설치</li> <li>-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은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은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li> <li>- 열람실 책상 하부공간, 책상 사이 및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관련 2015년 도서관 증축공사 후 공간확보 예정</li> <li>- 자료검색대 하부공간은 2015년 예산확보 후 설치 예정</li> <li>- 화상카메라와 헤드셋 설치 예정(2014년중)</li> </ul>
도서관95	-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에 장애인전용출입구 설치 대신 자동문으로 대체하겠음
도서관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제거와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예정(2017년 12월)</li> <li>- 세면대 교체하여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7년 12월)</li> <li>- 도서대출대 교체하여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8년 12월)</li> <li>- 열람실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열람실 개편 예정(2016년)</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장애인이용자가 있을 시 자료실에 담당선생님을 배치하여 장서대출은 물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겠음</li> <li>- 자료검색대 음성지원기능제공 또는 키보드만으로 검색가능기능 관련, 예산수립 후 설치하겠음(2018년 12월)</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주출입구 적정 통과유효폭 보강공사, 점형블록 신형교체, 도서관 앞마당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정하겠음(2017년 이내)</li> <li>- 엘리베이터는 예산확보 시 설치 예정(2014~2017년 이내)</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대변기 주출입구 너비,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 점형블록 신형교체하겠음(2017년 이내)</li> <li>-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2·3층 자료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개선하겠음(2016년 이내)</li> <li>- 도서대출대를 개선하여 하부공간을 확보하겠음(2017년 이내)</li> <li>- 열람실 책상 사이 및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책상을 재배열하겠음(2015년 이내)</li> <li>- 자료검색대 하부공간 마련을 위하여 신형검색대로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기능 또는 키보드만으로 검색가능기능도 설치하겠음(2017년 이내). 현재, 직원이 적극적으로 보조 중임</li> <li>- 점자자료, 확대문서로 된 이용안내자료를 구비하겠음(2015년 이내)</li> </ul> <p>* 상기는 모두 '예산확보 시'를 전제하였음</p>
도서관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확인구간 관련, 1층은 현재 입구 너비가 충분하다고 보고 2층은 장애인용출입구가 따로 마련돼 있음</li> <li>- 화장실 리모델링 시 반영하여 장애인화장실에 남녀구분돼 있음</li> </ul>
도서관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화장실은 복지회관 소관이어서 그쪽에 개선 건의함</li> </ul>
도서관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활동보조인력으로써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봄</li> </ul>
도서관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 완료함</li> <li>- 자료검색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나, 자료실 직원의 도우미 역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봄</li> <li>- 청각장애인이 사전 요청 시, 경북농아인협회경주시지부에 요청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봄</li> </ul>
도서관102	<p>※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p>
도서관103	<p>※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p>
도서관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설치는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음</li> <li>- 도서대출대 높이 및 하부공간이 법적기준에 맞도록 제작 운영할 것이고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음</li> <li>- 장애인이용자가 서가 사이 이동이 불편하지만, 직원이 자료를 직접 찾아 대출해주겠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용자가 서가 사이 이동이 불편하지만, 직원이 자료를 직접 찾아 대출해주겠음</li> <li>- 자료검색대관련, 바퀴 조정을 통해서 0.9m 이상으로 조치하였음</li> <li>- 자료검색대에 음성지원기능 또는 전용키보드가 없으나, 직원의 상시대기로 불편함을 제거함</li> </ul>
도서관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별이 층별로 되어있으며, 현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층별로 재구분 예정임. -B1F: 여성, 1F: 남성, 2F: 공용(여성 예정), 3F: 공용(남성 예정)-</li> <li>- 안내데스크의 높낮이가 별도 조정되지 않으므로, 주변에 장애인 접근 구역 별도 마련 예정</li> <li>- 자료검색대 중 장애인좌석 별도 구비 예정</li> <li>- 저시력용독서기 및 돋보기 구비 완료</li> <li>- 도서관 자원봉사 모집 시 수화통역가능자 우선선발예정</li> <li>* 2015년 예산에 반영토록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겠음</li> </ul>
도서관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화장실의 경우, 문이 안쪽으로 개폐되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무리가 있지만 각 층별 자료실 담당 직원이 도움을 주고 있음. 단, 남자화장실은 충분하다고 판단됨</li> <li>- 세면대의 하단높이 0.65m 이상이고, 상단높이는 현재 0.77m로써 휠체어사용자에게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어린이 및 유아 이용자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li> <li>- 도서대출대의 깊이가 0.2m로 다소 얇지만 측면으로 이용 시 무리 없다고 판단되며, 서가에서 사서데스크로 이동 시 층면 이용이 편리한 구조임</li> </ul>
도서관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위해 2015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li> <li>- 세면대 하부공간을 마련토록 2015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은 무인대출반납장비(RFID관련 설비)를 적극 활용하여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됨</li> <li>- 자료검색 시 음성지원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지만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활동보조인력을 통해 충분히 편의를 제공</li> <li>- 이용안내자료는 점자형태로 제작하여 제공 예정(2014년 하반기)</li> <li>- 모니터링 이후, 휠체어용 출입구 유도안내판을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에 추가로 설치하여서 접근·이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li> </ul>
도서관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자료를 구비하겠음(2014년 이내)</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의 높이가 0.39m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li> <li>- 세면대의 상단높이 0.76m, 하단높이 0.64m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li> <li>- 세면대 하부공간에서 높이 0.64m, 깊이 0.58m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li> <li>- 장애인석이 있는 제3열람실의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 되도록 조치 완료함</li> </ul>
도서관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2015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여 개선 계획</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관련, 2015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여 개선</li> <li>- 2015년 열람실 및 자료실 집기교체계획에 맞춰 통과유효폭에 맞게끔 책상 및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을 재배치할 계획</li> <li>- 자료검색대 하부에 컴퓨터본체가 있는데 이를 재배치함으로써 법적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li> </ul>
도서관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음</li> <li>- 직원의 도움으로 가능한 부분은 직원교육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도서관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관련 2015년도 예산반영 후 설치 예정</li> <li>-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2개소 설치 완료</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완료</li> <li>- 세면대 하부 휠체어공간 확보 완료</li> <li>- 서가 사이 적정 통과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으나,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책나래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음. 한편, 추후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조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하겠음</li> <li>- 장애인실 점자자료코너에 점자도서 400여권 비치함</li> </ul>
도서관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 정비 예정(2014년)</li> <li>- 열람실마다 장애인용 책상이 별도로 있음</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확보를 위해 장서 정리를 통해 최대한 노력 및 확보하겠음</li> <li>- 장애인용 자료검색대 설치 예정(2014년도 내)</li> </ul>
도서관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실 내 많은 항목이 법적기준을 미충족하나, 현재는 장애인열람실로 이용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 시 일반열람실 2실에 장애인전용 열람대를 설치하겠음</li> </ul>
도서관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의 하단높이는 0.65m이고, 상단높이가 0.72m인데 이 상단 높이를 0.85m까지 높이는 공사 예정(2014년 12월말까지)</li> <li>- 음성지원컴퓨터 확인 결과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차는 제거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임</li> <li>- 엘리베이터 대신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됨</li> <li>- 대변기 칸 및 세면대 관련, 2015년도 예산확보 후 법적기준에 맞춰 보수 예정임</li> <li>- 열람실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이 기준 미충족이나, 직원이 직접 장애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음</li> <li>- 자료검색대 하부에 위치한 PC함을 측면으로 이동함으로써 깊이 0.45m 이상 확보</li> </ul>
도서관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출입자확인구간 적정 너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도서대출대, 열람실 책상 및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2015년 예산확보 시 장애인편의시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해당법령을 준수토록 시행 예정</li> <li>-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은 2015년도 예산확보 시 설치 예정</li> <li>- 자료검색대 적정 하부공간은,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그때 동시 진행 예정</li> </ul>
<b>부산</b>	
도서관119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도서관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에 세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2015년 상반기)</li> <li>- 열람실 책상 교체를 통해 책상 하부공간 해결(2014년 10월)</li> <li>- 점자자료를 구비했음</li> <li>- 화상전화서비스 설치 예정(2015년)</li> </ul>
도서관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대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2층 도서대출대 교체 예정(2015년)</li> <li>-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점자안내자료 제작 예정(2015년)</li> <li>- 지역수화센터에 협조요청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li> </ul>
도서관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예산확보 후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확보 위한 재시공</li> <li>- 2015년 예산확보 후 도서관안내자료 제작 예정</li> <li>- 지역수화센터에 협조요청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li> </ul>
도서관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장애인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 3월)</li> <li>- 도서대출대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근거법령에 맞도록 교체하기 위해 예산 8백만원 확보 및 시행 예정(2015년 3월)</li> <li>- 점자자료 도서구입 및 점자홍보문 제작 예정(2015년 3월)</li> </ul>
도서관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출입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및 대변기 높이,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관련 2015년 본예산 확보 후 시행 예정</li> <li>-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비치는 2015년 본예산 확보 후 시행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를 통해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6년)</li>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너비 1.5m, 깊이 2.5m로 휠체어 이용 가능하다고 봄</li> <li>- 열람대의 재배치로 책상 간 통과유효폭을 넓게 조정하겠음</li> <li>- 서가 사이 간격이 좁으나, 장애인 이용 시 원하는 자료를 직원이 직접 제공하고 있음</li> </ul>
도서관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대출대의 높이가 0.85m이하로 높이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며, 하부공간이 미충족이나 장애인이 이용 시 직원이 직접 검색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li> </ul>
도서관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관련, 자바라(접힘식 문)가 열리는 방향(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반대)에 따라 출입구 통과유효폭이 0.7m에서 0.88m로 달라짐. 향후 자바라 개폐 방향을 바꾸는 공사를 통해 0.8m 이상의 통과유효폭을 확보할 예정</li> <li>- 화장실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즉시 개선 완료</li> <li>- 세면대 상단높이 0.9m, 하단높이 0.58m이기 때문에 하부공간 확장공사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음</li> <li>- 도서대출대 높이 0.75m, 깊이 1.2m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li> <li>- 자료검색대의 아랫쪽에 책상 바닥면이 존재해서 미충족인데, 책상의 깊이가 0.695m로 바닥면만 제거하면 될 것이므로 향후 바닥면 제거 공사 또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책상을 구입함으로써 개선하겠음</li> </ul>
도서관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검토 후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 예정</li> <li>- 출입자확인구간 관련, 기존 출입구를 개방하여 휠체어장애인용 출입구로 마련하겠음</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관련,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바닥면이 넓은 구서가를 교체하고 서가 사이의 폭넓이를 조절하겠음</li> <li>- 자료검색대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용 검색대 구입 예정</li> <li>- 웹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할 예정(2014년 10~12월)이며, WA(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2015년 5월)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는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 예정</li> <li>-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별도 출입자확인구간 마련에 있어서, 적극 검토 및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li> <li>- 2015년도 서고정리 등을 통해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1.2m 이상으로 개선 예정</li> <li>- 자료검색도구의 음성지원기능제공 또는 키보드만으로 자료검색가능기능에 대해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제공토록 추진 예정.한편, 현재 사서직공무원이 시각장애인 이용 시 자료검색 및 책나래서비스 제공 중</li> <li>- 저시력용독서기·음성지원컴퓨터·확대경 등의 제공,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이용안내자료, 수화통역·화상전화서비스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개선 및 추진 예정</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li> </ul>
도서관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3월)</li> <li>- 잠금장치 교체 예정(2015년 3월)</li> <li>- 저시력용독서기 구입 예정(2015년 3월)</li> <li>- 도서관 이용안내 점자자료 제작 예정(2015년 3월)</li> </ul>
도서관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도서대출대 하부공간 확보 위해 교체할 계획(2015년 상반기)</li> <li>- 자료검색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위해 높낮이책상으로 교체 완료했고, 자료검색대의 음성지원기능제공 가능하며 문자음성변환기를 구입 및 비치 완료(2014년 6월)</li> <li>-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이용안내자료 설치 계획(2015년)</li> </ul>
도서관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안내장치 및 호출기 설치 예정(2015년 6월)</li> <li>- 화장실에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및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관련 조치 예정(2015년 6월)</li> <li>-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확대경 등 구입 및 조치 예정(2015년 6월)</li> </ul>
도서관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은 2015년 본예산 확보 후 2015년 9~10월 공사 예정</li> <li>-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관련 2015년 본예산 확보 후 2015년 9~10월중 공사 예정</li> <li>- 2015년도 본예산 확보 후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비치 예정</li> <li>- 수화통역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연결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당한편의 요구 시 즉시 시행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은 없으나 안내벨이 설치돼 있어 갈음 가능</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 반영 요청</li> <li>- 서가 간 공간이 협소하나 사서 1:1지원방식으로 장애인의 도서이용 권리를 확보하겠음</li> <li>- 자료검색대 음성지원기능 제공을 위해 2016년도 예산 확보 후 프로그램 설치 예정</li> <li>- 수화통역하는 봉사자를 추천 받아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예정</li> </ul>
도서관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예산확보되는 대로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했음</li> <li>- 구청 청사팀과 협의하여 2016년까지 예산확보되면 남녀구분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겠음</li>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1.3m, 깊이 2.0m로 휠체어 이용가능하다고 봄</li> <li>- 2016년까지 예산확보를 통해 화장실 출입문 잠금장치 보수 예정</li> <li>- 열람대의 재배치로 통과유효폭을 넓게 조정하겠음</li> <li>- 시각장애인의 자료검색 관련 기능을 위하여 2016년까지 예산편성에 힘쓰겠음</li> <li>- 확대경을 비치하였음</li> </ul>
도서관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높이가 0.42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잠금장치 이미 수리했음</li> <li>- 열람실 책상의 하부공간이 높이 0.7m, 깊이 0.5m이고,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모두 1.2m임을 확인하고,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은 평균적으로 1.2m임을 확인하여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자료검색대 중 좌식검색대의 높이가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ul>
도서관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서관은 1963년 개관하여 재개발 예정에 있으므로 신축공사(2015년 상반기 착공 및 2~3년 소요 예정) 시 법적기준을 충족토록 노력하겠음</li> </ul>
도서관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이용자확인구간이 1.8~2m로 충분한 공간 확보됨</li> <li>- 대변기 출입구(문)가 현재 바깥쪽으로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됨</li> <li>- 세면대 아랫쪽 보강재를 제거하고 다시 재설치함으로써 하부공간 확보 예정</li> <li>- 자료검색대 하부공간 확보를 위해 조절가능한 것으로 교체 예정</li> </ul>
도서관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에 기존 출입구를 개방하여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li> <li>- 서가 사이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유효폭 조정하겠음</li> <li>-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용 검색대를 구입하며 음성지원기능 제공하는 키보드 등을 비치하겠음</li> <li>- 웹사이트에서 현재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예산반영을 통해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화장실 문의 개폐 방향을 바깥쪽으로 변경 예정</li> <li>- 책상 재배치를 통해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확보 예정</li> </ul>
도서관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구청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담당부서 주관으로 도서관 내 사무실, 화장실, 열람실 앞 점자표지판 부착 예정</li> <li>-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의 폭이 1.8m, 1.32m 총 2개소로 휠체어가 통과 가능함</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li> <li>- 자료실 이용자확인구간의 폭이 1.8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열람실 책상 높이 0.72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자료검색대 중 종합자료실의 것은 1m로 조정이 필요하며 2016년 예산반영 후 조치 예정</li> <li>- 2015년 국립장애인센터 “장애인정보누리터 국고보조사업”에 신청하여 시각장애인 이용가능한 음성지원기능 제공 예정</li> <li>- 확대문서는 기 제공 중이며, 보이스바코드 제공은 사전요청 시 가능토록 2015년부터 추진</li> <li>- 장애인택배서비스(책나래서비스) 운영 및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 중임</li> </ul>
도서관142	<p>※ 최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p>
도서관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 및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완료(2014년 7월)</li> <li>- 이용자확인구간의 출입구(문)의 너비가 0.78m로 0.02m가 부족한데, 휠체어사용자 방문 시 고정문을 개방하겠음</li> <li>- 도서대출대는 높이 0.72m, 깊이 0.36m로 깊이가 0.09m 부족한데, 교체 전까지는 사서담당자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음</li> <li>- 열람실 책상 하부공간은 높이 0.75m, 깊이 0.38m로 깊이가 0.07m 부족하나 곧 조치완료하겠음</li> <li>-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이 기준 미충족이나, 장애인이 필요한 책을 말하면 사서가 직접 찾아주고 있음</li> <li>- 자료검색대는 높이 0.88m 깊이 0.36m로 깊이가 0.09m 부족하나 곧 조치완료하겠음</li> </ul>
도서관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총 3실 중 여자 2실, 남자 1실 운영 중</li> <li>- 장애인화장실의 잠금장치 시정 완료</li> <li>- 자료실 출입문을 전체 개방으로 시정 완료</li> </ul>
도서관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이 0.76m로 손잡이 교체 예정</li> <li>- 도서대출대의 높이와 하부공간 미달 및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 미달 관련, 직원의 동행으로 장애인의 불편함 최소화할 예정</li> <li>- 자료검색대 책상 교체 예정</li> <li>- 2015년 예산 반영하여 화상전화기 구입할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도서관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관련, 2015년 본예산 확보 후 2015년 4~6월중 공사 예정</li> <li>- 열람실 책상과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 되도록 책상 재배치를 하겠음</li> <li>- 2015년도 본예산 확보 후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비치 예정</li> </ul>
도서관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주출입구 출입자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등 설치 예정</li> <li>- 책상 사이 통과유효폭 1.2m 이상으로 확보토록 책상재배치 예정</li> <li>- 2015년 중 추경예산확보를 통해 법적기준에 맞는 자료검색대교체 예정</li> <li>- 독서확대기 주기적 점검 및 화상전화기 수리 조치하겠음</li> <li>- 2015년 중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 라이선스 확보 및 설치</li> </ul>
도서관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중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휠체어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자확인구간 확보 예정</li> <li>- 2015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자료검색도구의 음성지원기능을 제공할 예정</li> <li>- 화상전화기 수리 조치</li> <li>- 2015년 중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 라이선스 확보 및 설치</li> </ul>
도서관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서관은 본관 및 별관2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별관1에는 2014년 시설공사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임</li> <li>- 열람실 책상 사이 및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이 법적기준 미달이나, 별관2 1층에 장애인누리터를 마련해 편안한 독서공간을 보장하고 있음</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력용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확대경 등은 장애인누리터 공간에 마련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음</li> </ul>
도서관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높이가 0.41m로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봄</li> <li>- 세면대 하부의 관 덮개를 철거하여 하부공간 마련할 예정</li> <li>- 장애인정보누리터 사업을 통해 2014년도에 자료검색대 음성지원 기능 또는 키보드만으로 검색가능기능을 설치할 예정</li> </ul>

## 마) 공공도서관 모니터링 총평

-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도난방지(이하 ‘확인구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 부근 확인구간과 자료실 부근 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제한될 소지가 크다. 주출입구 부근 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미만인 미충족기관은 12개소(8.0%), 자료실 부근 확인구간의 실질 통과유효폭이 0.8m 미만인 미충족기관은 38개소(25.3%)로서, 휠체어장애인의 접근권이 크게 떨어진다.

몇몇 기관에서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도서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갈음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공도서관에 접근하여 책을 이용 및 대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각 공공도서관은 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확보하고, 확인구간의 형태 및 부착물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 중 상당수가 “건축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을 하지 않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갖추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공공도서관 이용 시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그외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보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 관련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서가 사이 통과유효폭의 경우, “기관 면적에 비해 장서 수가 많고, 도서를 따로 보관할 공간이 적으므로, 서가 수를 줄여 서가 사이의 통과유효폭 확보가 불가능하다”, “휠체어장애인 대신 직원이 가져오겠다”는 회신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를 검색 및 이용하는 것이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서가 사이로 휠체어장애

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과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시설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각 공공도서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각 공공도서관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보수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전시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전시시설 모니터링 개요

- **주제:** 전시시설의 ‘시설 접근성’,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7~8월 중
- **대상:** 2개 권역 24개 전시시설  
- 대전, 제주 권역
- **모니터링단:** 54명 (장애인: 46명, 85.2%)

### 나) 전시시설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화장실, 경보 및 피난설비, 매표대
-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전시시설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5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5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11	12	1	47.8%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12	2	10	85.7%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22	1	1	95.7%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22	1	1	95.7%
4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19	5	0	79.2%
4-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15	4	5	78.9%
5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5	19	0	20.8%
5-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2	1	21	66.7%
6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13	0	11	100.0%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24	0	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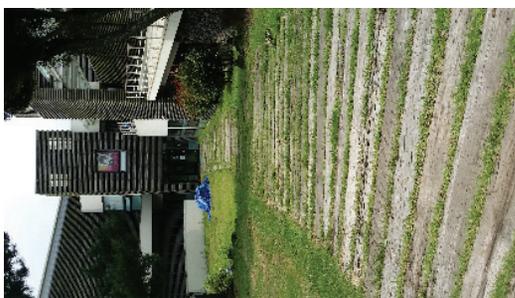
㉡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인데,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47.8%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 비율이 85.7%이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 하지만, “[그림22]·[그림23]과 같이 전시시설의 특성 상 울퉁불퉁한 주 접근로를 마련했다”거나,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로 변경하기 힘들다”는 회신의견이 있었다. 본 모니터링 주제-전시시설-에는 공원 1개소, 국립공원 1개소, 수목원 1개소, 문화재 2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전시시설은 개별 기관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가 법에 명시된 인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 할지라도 현대식건물이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및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예술사업자<sup>15)</sup>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 문화·예술사업자의 정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10·1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전시시설) 참조

2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12조 및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원 및 전시장<sup>16)</sup>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은 시설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한편, 경사각도가 급한 경사로의 경우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혼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도 중요하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엄격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경사로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기울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20.8%에 불과하며, 음성안내장치가 있는 기관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의 비율은 66.7%에 불과하다. 편의증진보장법은 공원 및 전시장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그외 4가지 항목은 100.0%에 가까운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림22]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주접근로-1 [그림23]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주접근로-2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16)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복도 및 통로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이 2개층 이상인 경우, 층간 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22	1	1	95.7%
9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히 마감	20	3	1	87.0%
10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17	2	5	89.5%
10-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17	0	7	100.0%

### ㉔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히 마감,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경우 87% 이상의 기관이 충족함을 보이고 있다.
- 전시시설의 바닥을 대리석으로 한 기관이 소수 존재한다. 비가 올 때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이 미끄러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빗물제거용 카펫을 깔아서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보낸 기관이 있었다.

## (3) 화장실

### ㉕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일반사항)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2-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13	대·소변기 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4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7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 형식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9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X
21-1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비상시 인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11	장애인화장실 설치	24	0	0	100.0%
11-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17	7	0	70.8%
12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10	14	0	41.7%
12-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10	0	14	100.0%
13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23	1	0	95.8%
14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23	1	0	95.8%
15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18	6	0	75.0%
16	대변기 높이 적정	22	2	0	91.7%
17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2	2	0	91.7%
18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21	0	3	100.0%
19	세면대 높이 적정	11	13	0	45.8%
20	세면대 하부공간 적정	17	7	0	70.8%
21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0	24	0	0.0%
21-1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	0	0	24	-

### ㉔ 분석 및 논의

-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100.0%에 달하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비율은 70.8%에 그치고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상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41.7%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화장실이 야외에 존재할 수 있는 전시기설의 특성 상 점형블록의 설치가 미흡하다.
-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적정한 기관은 75.0%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구분·표시해 놓았으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을 지키지 않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거나 회전 및 이동할 수 없는 기관이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 및 허망함을 초래할 수 있다.
- 세면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45.8%에 그치고 있다. 세면대 하부공간(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70.8%인 반면 세면대 높이(상단높이 0.85m, 하단높이 0.65m 이상)를 충족한 기관 비율이 45.8%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부공간은 적정하나 높이가 낮은 세면대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 꽤 있는 것이다. 각 전시기설은 세면대 상단부를 높이는 등 적정 높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면대 높이가 0.85m보다 높으면 휠체어사용자에게 오히려 불편할 것이라는 기관 의견도 있었다.
-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설비를 갖춘 기관 비율은 0.0%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는 화장실 또는 대변기 칸 내부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변기 칸은 폐쇄된 공간이며 위급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의 충족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향후 재점검 또는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4) 경보 및 피난 설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2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설치	7	17	0	29.2%

##### ㉢ 분석 및 논의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를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29.2%에 불과하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는 비상벨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필요하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장애인은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 항목의 이행 비율이 낮으므로 각 전시설의 시급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5) 매표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3	매표소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 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4	매표소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 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매표소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3	매표소 높이 적정	5	17	2	22.7%
24	매표소 하부공간 적정	5	17	2	22.7%

### ㉢ 분석 및 논의

- 매표소의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22.7%, 매표소의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22.7%로 두 항목 다 이행비율이 낮다.
- 미총족 기관 중에는 “매표소 높이 및 하부공간이 미충족하나 직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라는 회신이 많았다. 물론 직원의 서비스를 통하여 같음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매표소의 구조 변경 및 개선을 통해 휠체어장애인이 스스로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안내시설,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㉔ 주요 사례



[그림24] 하부공간이 없는 매표대

(6) 정당한 편의 제공

㉕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5	전시안내자료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전시안내자료가 없으면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5-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인력 제공 여부 (전시안내자료가 없으면 '해당없음')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6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하여 휠체어, 점자전시안내책자, 보청기 등을 비치하고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및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에 따라 전시장은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의 비치가 권장된다.
26-1	휠체어, 보청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27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전시장 이용을 돕는 보조인력을 제공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5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안내자료 제공	6	13	5	31.6%
25-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12	1	11	92.3%
26	휠체어·점자전시안내책자·보청기 비치	16	8	0	66.7%
26-1	휠체어·보청기 정상적으로 작동	15	0	8	100.0%
27	전시장 이용을 돕는 보조인력 제공	21	3	0	87.5%

### ㉡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전시안내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31.6%에 불과하다. 다만, 그 대체수단으로써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기관 비율은 92.3%이다.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향유를 위하여 전시안내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휠체어, 점자전시안내책자, 보청기 중 1개 이상을 비치한 기관의 비율은 66.7%로 다소 높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항목은 편의증진보장법 상 권장항목이다.

㉔ 주요 사례



[그림25] 휠체어 비치 모범사례

(7)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㉕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8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의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29	웹사이트에 동영상에 있을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화면해설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함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웹사이트 내 동영상에 없는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자막,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8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17	1	6	94.4%
29	웹사이트 동영상에 자막·수화통역 등 제공	3	5	16	37.5%

㉡ 분석 및 논의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94.4%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시시설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키보드만으로 메뉴 간 이동 및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있는 경우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37.5%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웹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17)</sup>을 참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향후 모니터링 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7)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 라) 전시시설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 없음

문항 번호	대전				제주										
	전시 시설 1	전시 시설 2	전시 시설 3	전시 시설 4	전시 시설 5	전시 시설 6	전시 시설 7	전시 시설 8	전시 시설 9	전시 시설 10	전시 시설 11	전시 시설 12	전시 시설 13	전시 시설 14	전시 시설 15
1	O	O	X	O	X	X	X	X	X	X	X	X	O	X	O
1-1			O	O	O	O	O	O	X	O	O	O		O	
2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3	O	O	X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X	O	O	O	X	O	O	X	O	O	O	O	O
4-1	O	O		O	O	O		X	O		O	O	O	O	X
5	X	X	X	O	X	O	X	O	X	X	X	X	X	O	X
5-1				O										O	
6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9	O	X	O	O	O	O	O	O	O	O	O	O	O	O	X
10	X	O	X	O	O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O	X	O	O	O	O	O	O	O	X	O	O	O	X	X
12	X	X	X	O	X	X	X	O	O	X	X	X	O	O	X
12-1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21-1															
22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25-1		○			○		○		○	○	○	○			×
26	○	×	○	○	○	○	×	○	×	×	×	×	○	○	○
26-1	*		○	○	○	○		○					○	○	○
27	○	○	○	○	○	○	○	○	×	×	○	○	○	○	×
28	○	×	○	○	○	○		○					○	○	○
29				○									○		

문항 번호	제주								
	전 시 시 설 16	전 시 시 설 17	전 시 시 설 18	전 시 시 설 19	전 시 시 설 20	전 시 시 설 21	전 시 시 설 22	전 시 시 설 23	전 시 시 설 24
1	0	0	0	X	0	X	0		0
1-1		0		X		0			
2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4	0	X	0	0	0	0	0	X	0
4-1	0		0	X	0	0	0		X
5	X	X	X	X	X	X	X	0	X
5-1								X	
6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9	X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10-1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0
11-1	0	0	0	0	X	X	X	0	0
12	0	X	0	0	0	X	X	X	0
12-1	0		0	0	0				0
13	0	0	0	0	X	0	0	0	0
14	0	0	0	0	0	0	0	0	0
15	0	0	0	0	X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18	0	0	0	0	0	0		0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1-1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25-1	○			○		○	○	○	
26	○	○	○	○	×	○	×	○	○
26-1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 기관이 회신 공문을 보냈으나 그 내용이 미흡 또는 모호해서 개선계획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2개소(8.3%), 하기와 같이 표기
  -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4개소(16.7%), 하기와 같이 표기
  -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대전	
전시시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형 촉지식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1992년 개관하여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나, 2014년 8월 1층에 장애인관람석 12석을 마련해 운영 중</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4개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세면대 하부 받침대를 제거하여 개선 완료</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건물 내 매표대는 현재 이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인터넷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함. 간혹 현장티켓 발매 시, 임시매표소(안내소)를 통해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중임</li> </ul>
전시시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촉지판을 구입해 화장실, 승강기, 출입구 등등 부착 예정(2014년 11월)</li> <li>- 박물관안내용 촉지안내판을 제작해 설치 예정(2015년 중)</li> <li>- 중앙홀 화강암 재질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이라고 판단함</li> <li>- 화장실과 승강기 전면 고무점형 또는 피스형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중)</li> <li>- 장애인화장실 내 장거리비상벨-불빛과 소리 포함된- 설치 예정(2015년중)</li> <li>- 보이스바코드 및 점자 형식의 안내자료 제공 예정(2015년중)</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확보된 홈페이지 개선 예정(2015년중)</li> </ul>
전시시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및 점자안내판 위해 2016년 예산 요구 예정</li> <li>- 대변기 출입구(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즉시 조치 예정</li> </ul>
전시시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하단 수납공간을 제거함으로써 하단높이 0.7m이고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갈 공간 확보 완료</li> <li>- 예산에 반영하여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ul>
제주	
전시시설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으나, 판매장부근 주차장(서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장 및 점형블록을 설치하겠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전시시설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동 입구 경사로 설치 검토 및 '15년 장애인안전관리 예산(10백만원)' 요청. 한편, 예산 미반영될 경우 15~16년 자체 예산으로 시행 예정</li> <li>-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 '15년 장애인 안전관리 예산(50백만원)' 요청. 한편, 예산미반영될 경우 16년 자체 예산으로 시행 예정</li> <li>- 소화기 주변에 청각장애이용 시각경보기 설치를 '15년 사업'으로 검토 예정. 한편, 본 항목은 전시장에 대해 권장사항임</li> <li>- '15~16년 전시개편사업' 중 참고하여 매표대(안내데스크) 높이 및 하부공간 개선 예정</li> </ul>
전시시설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개선 완료(2014년 하반기)</li>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대변기 높이, 대변기 칸 비상벨,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매표대 하부공간을 법적기준에 맞춰 개선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휠체어 비치 예정</li> <li>* 시각예술을 다루는 미술관의 특성 상, 본 예술작품을 글, 음성, 점자 등으로 변환했을 때 예술의 본질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봄</li> </ul>
전시시설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말)</li> <li>- 본 박물관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시설접근성 항목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코디네이터 의견: 해당 박물관이 2009년 4월 11일 이후 증축 또는 개축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전시시설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벨 설치 예정(조속한 시일 내)</li> <li>- 관람객 눈높이에서 매표와 설명이 가능하므로 매표소의 높이 및 하부공간 항목에 해당없다고 봄</li> <li>-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의 요구 시 보조인력 제공 가능함</li> </ul>
전시시설10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전시시설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을 확보하여 점자안내판,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li> <li>- 휠체어 비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ul>
전시시설12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전시시설13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전시시설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간이경사로 설치 예정(2014년 12월까지)</li> <li>-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화장실 마크를 부착하여 구분 완료</li> <li>- 자체 예산을 이용해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2월까지)</li> <li>- 매표대 하부공간이 기준 미충족하나, 안내 담당 직원이 직접 안내 또는 매표대(안내실) 출입문을 통하여 휠체어가 매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문제 해결하겠음</li> </ul>
전시시설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추가 설치 완료(2014년 8월)</li> <li>- 점자안내판을 갈음하여, 전문 전시해설 인력-4인-이 상주하여 직접 안내 실시하겠음</li> <li>- 우천 시 복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천 시 통로에 카펫 설치하겠음</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완료(2014년 8월)</li>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1.57m*1.73m로 법적기준에 비슷하다고 생각되며 개관 이후 관련된 민원제기 없었음</li> <li>- 세면대 높이 개선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예산확보 후 대변기 칸 비상벨, 비상벨 주변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설치 예정(2015년)</li> <li>- 장애인들에게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매표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한편, 관련정보 안내판 설치 예정</li> <li>-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전문 전시해설 인력-4인-이 상주하여 직접 안내 실시하겠음</li> </ul>
전시시설16	※ 미회신 기관
전시시설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예산확보 후 매표대 적정 높이로 보수 예정(2015년)</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개선 완료</li> </ul>
전시시설18	※ 미회신 기관
전시시설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제거 완료</li> <li>- 예산을 확보하여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설치,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li> </ul>
전시시설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를 상시 비치하고 있음</li> <li>- 본 기관은 1997년에 준공 및 개관한 건축물이며 전시실 총 면적이 457제곱미터로써 시설접근성 항목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코디네이터 주: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의무대상이 됨)</li> </ul>

기관	주요 내용
전시시설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관련, 주차장과 미술관 주출입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종합안내센터 건립으로 해결 방안 마련하겠으며 2015년 예산 요구하겠음</li> <li>-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관련, 종합안내센터 건립으로 해결 방안 마련하겠으며 2015년 예산 요구하겠음</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비상벨 주변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설치,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6월)</li> <li>-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전시안내자료를 사전 요청할 경우, 도슨트 및 해설사 설명으로 갈음하겠음</li> </ul>
전시시설22	※ 미회신 기관
전시시설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완료(2014년 7월)</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세면대 적정 높이,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는 2015년 신축계획으로 반영 처리하겠음</li> <li>- 비상벨 주변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본 기관의 학습적인 기능을 살려 시각장애인용 도감을 비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전시안내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li> <li>- 웹사이트 내 동영상은 단순한 전경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수화통역, 자막 및 해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함</li> </ul>
전시시설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또는 유도블록)을 제주장애인 편의업체를 통하여 주차장에서 본관 입구까지 약 90m 설치 예정(2015년)</li> <li>- 점자안내판, 세면대 적정 높이,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2014~2015년 전시실 리모델링 시 개선 완료</li> </ul>

## 마) 전시시설 모니터링 총평

- 각 전시시설은 개별 기관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 할지라도 현대식건물이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및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보다는, 장애인이 문화재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본 모니터링 주제-전시시설-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외에도 공원 1개소, 국립공원 1개소, 수목원 1개소, 문화재 2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전시시설의 특성 상 장애인이 건물에 접근 및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기관이 다소 있었다. 특히, 단차 제거 관련해서 각 전시시설의 개선 노력이 촉구된다.
- 매표소의 높이와 하부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한 기관은 22.7%(5개소)밖에 안 된다. 많은 전시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할인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표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면이다. 그러므로, 각 전시시설은 법적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매표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전시안내자료 등을 갖출 것이 촉구된다.



### 3 영화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영화관 모니터링 개요

- **주제:** 영화관의 ‘시설 접근성’,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7~8월 중
- **대상:** 3개 권역 73개소  
- 서울, 대전, 부산 권역
- **모니터링단:** 90명 (장애인: 66명, 73.3%)

#### 나) 영화관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화장실, 경보 및 피난  
설비, 매표대, 상영관
-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영화관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5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5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62	9	2	87.3%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5	4	64	55.6%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71	1	1	98.6%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71	1	1	98.6%
4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49	24	0	67.1%
4-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39	8	26	83.0%
5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10	63	0	13.7%
5-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1	1	71	50.0%
6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15	0	58	100.0%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67	6	0	91.8%

## ㉔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이다.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87.3%이므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 비율이 55.6%이므로,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기관 중 약 44%는 대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이 67.1%로 다소 낮은 편이다.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영화관 중 일부는, 건물의 출입로 및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출입구 중 일부만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었다.
- 영화관은 백화점이나 대형상가건물의 높은 층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다. 건물의 주접근로 및 주출입구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화관은 1층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영화관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영화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 및 유관단체 측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13.7%에 불과하며, 음성안내장치가 있는 기관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의 비율은 50.0%에 불과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각 영화관의 이해 및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백화점을 포함한 건물 측에서는 장애인용 편의설비가 미관을 해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항목에서는 90% 이상의 기관이 충족하므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 (2)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영화관이 2개층 이상의 시설물인 경우,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71	2	0	97.3%
9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71	1	1	98.6%
9-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71	0	2	100.0%

### ㉢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항목은 거의 100%에 가까운 기관이 충족하므로 고무적인 결과이다.
- 다만, 영화관이 높은 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휠체어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정도로 몹시 힘들다. 각 영화관에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고려가 요구된다.

### (3) 화장실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0-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1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일반사항)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1-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12	대·소변기 간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5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6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8	화장실 내의 장애인 비상·호출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함 (비상·호출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X
19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0	장애인화장실 설치	71	2	0	97.3%
10-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63	8	2	88.7%
1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37	36	0	50.7%
11-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36	0	37	100.0%
12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65	8	0	89.0%
13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72	1	0	98.6%
14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53	20	0	72.6%
15	대변기 높이 적정	57	16	0	78.1%
16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66	7	0	90.4%
17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70	2	1	97.2%
18	화장실 내부 비상벨 정상적으로 작동	19	14	40	57.6%
19	세면대 높이 적정	43	25	5	63.2%
20	세면대 하부공간 적정	43	24	5	64.2%

㉡ 분석 및 논의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50.7%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적정한 기관은 72.6%, 대변기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78.1%, 세면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63.2%, 세면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공간은 64.2%의 이행 비율을 보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화장실 리모델링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이다. 대형영화관의 경우 개별 지점에서는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하기 힘들고,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기가 오면 법적 기준에 충족토록 개선 예정”이라는 회신공문이 많이 왔다. 개선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57.6%

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는 화장실 또는 대변기 칸 내부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변기 칸은 폐쇄된 공간이며 위급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및 남녀구분,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관련 항목에서는 약 90% 이상의 기관들이 충족했다. 대형영화관은 영화관 본사 내부지침에 따라 시공 및 관리하므로 각 체크리스트 문항의 충족율이 매우 높거나 미충족율이 매우 높은 양분된 결과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영화관 본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4) 경보 및 피난 설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1	복도 및 통로에 비상벨, 점멸형태의 경보등과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2)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2	상영관 내에 비상벨, 점멸형태의 경보등과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동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1	복도에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경보등 설치	61	12	0	83.6%
22	상영관에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경보등 설치	63	10	0	86.3%

㉟ 분석 및 논의

- 복도와 상영관에 각각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경보등 설치는 약 85%의 충족율을 보인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는 비상벨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필요하다. 이 항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행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5) 매표대

㊱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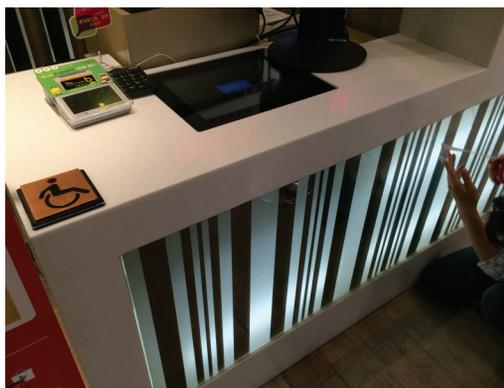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3	매표소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4	매표소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매표소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3	매표소 높이 적정	35	38	0	47.9%
24	매표소 하부공간 적정	15	58	0	20.5%

㉡ 분석 및 논의

- 영화관 매표소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47.9%, 매표소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20.5%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휠체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매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그림25]와 같이 ‘장애인전용매표대’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공간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영화관이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로 표시·설치해 놓았으나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던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으로 표시·설치해 놓았음에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매표소를 보면 장애인이 더 큰 불편함과 허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25] 매표대 하부공간 부적정

## (6) 상영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5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상영관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영화관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관람석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해야 한다.
26	상영관 출입구의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27	상영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8	상영관 내에서 휠체어 좌석으로 접근할 때, 통행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9	상영관 내의 장애인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의 “1%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4)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에 따라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5	상영관에 휠체어사용자 출입 가능	55	18	0	75.3%
26	상영관 출입구 단차 제거	65	8	0	89.0%
27	상영관 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70	3	0	95.9%
28	상영관 내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70	3	0	95.9%
29	상영관의 장애인좌석 수/비율 적정	68	5	0	93.2%

### ㉡ 분석 및 논의

- 상영관에 휠체어사용자가 출입 가능한 영화관은 75.3%로 다소 낮다. 미총족 이유 중 대부분은 상영관 출입구(문)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영관에 대하여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상영관 중 일부에는 단차가 제거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이용객을 해당 관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회신공문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특정 관으로 장애인을 분리하기보다는 모든 상영관에 대해서 단차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상영관의 장애인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의 1% 이상인 영화관이 93.2%로 매우 높은 이행 비율이다. 하지만, [그림26]과 같이 장애인좌석은 대개 상영관의 맨 앞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 없다. 영화관 이용객이 상영관 뒷자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영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26] 맨 앞에 위치한 장애인좌석

## (7) 정당한 편의 제공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0	영화관 이용 및 관람에 필요한 안내 자료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안내자료가 없으면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0-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인력 제공 여부 (안내책자가 없으면 '해당없음')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1	영화관 이용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동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1-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31번 항목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1-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제공 여부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2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영화 관람에 관련된 좌석 안내가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대표순서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음성알림 등을 설치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관람석,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하여야 한다.
33-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4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영화가 상영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5항에 따라 영화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영화관람권 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가 "0.4m 이상 1.2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5-1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음성지원기능,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된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5-2	장애인 스스로 자동발매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이 제공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0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안내책자 제공	6	67	0	8.2%
30-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66	1	6	98.5%
31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제공	9	64	0	12.3%
31-1	화상전화기 정상적으로 작동	1	0	72	100.0%
31-2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64	0	9	100.0%
32	좌석 안내 등을 돕는 보조인력 제공	73	0	0	100.0%
33	대표순서 확인용 전광판 및 음성알림 설치	48	22	3	68.6%
33-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21	1	51	95.5%
34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14	59	0	19.2%
35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 높이 적정	18	53	2	25.4%
35-1	점자·음성지원 형식 조작버튼 설치	10	61	2	14.1%
35-2	자동발매기 이용을 돕는 보조인력 제공	71	0	2	100.0%

㉡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8.2%로 매우 낮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98.5%에 달하므로 같음이 가능하다.
- 청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도 12.3%로 매우 낮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100.0%에 달하므로 같음이 가능하다. 한편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영화관은 1곳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영화관의 비율이 매우 낮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영화관은 장애인의 요청 시 7일 이내에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영화관에서는 직원들의 친절함 미소와 응대로 장애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영화관에서는 미리 장치를 구비

하거나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매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표대 근처에 전광판, 음성알림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은 68.6%로 다소 낮다. 하지만, 대체 수단으로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95.5%이므로 같음이 가능하다.
- 배리어프리 영화(Barrier free movie: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대사(화자 정보포함) 및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어자막을 넣어서 만든 영화)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이 19.2%로 매우 낮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영화관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웹사이트에서조차 배리어프리 영화의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각 영화관은 배리어프리 영화 제공을 위하여 힘쓸 뿐 아니라 배리어프리 영화의 상영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배리어프리 영화의 예는 [그림27]에 나와있다.
-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25.4%, 조작버튼에 점자 표시 또는 음성지원기능 제공을 한 기관은 14.1%로 이행 비율이 낮다. 자동발매기 조작버튼에 점자 표시 등이 없고, [그림28]처럼 터치식으로 되어있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터치 전에 음성안내는 흘러 나오나 터치 위치는 알려주지 않는 장치도 다수 있었다. 터치식으로만 되어있을 경우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영화관에서는 현재의 터치식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에 점자 표시를 설치 또는 일반버튼 추가설비를 설치함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몇몇 영화관은 조작버튼의 높이가 1.4m 정도로 높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휠체어장애인 포함 지체장애인은 조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영화관은 서비스업종으로서 직원들의 친절함이 특히 돋보이는 기관이다. 그래서 보조인력 제공 항목의 이행율이 거의 100%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27] 배리어프리 영화의 예18)



[그림28] 터치식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18) <http://www.barrierfreefilms.or.kr/#!untitled/c20mz>

## (8)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6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화관 이용정보 및 영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37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영화 예매가 가능함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온라인 예매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상동
38	웹사이트에 동영상에 있을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화면해설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함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웹사이트 내 동영상에 없는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자막,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36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46	26	1	63.9%
37	키보드만으로 영화예매기능 이용 가능	18	54	1	25.0%
38	웹사이트 동영상에 자막·수화통역 등 제공	38	30	5	55.9%

### ㉢ 분석 및 논의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63.9%, 키보드만으로 영화예매기능이 이용 가능한 기관은 25.0%로 전반적인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화를 예매하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키보드만으로 메뉴 간 이동 및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 다만, 본 인권위 모니터링에 대형영화사 3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3곳 모두 각 영화관 지점별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에서 통합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영화사에 속한 지점은 같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본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에는 같은 영화사에 속했으나 다른 결과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 인권위 모니터링에서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을 활용함’ 및 ‘모니터링 단원별로 웹 접근성의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 때문으로 보인다. 추후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이용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19)</sup>을 참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 웹사이트에 동영상에 있는 경우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55.9%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웹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9)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 라) 영화관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없음

문항 번호	전국					영화관6									
	영 화 관 1	영 화 관 2	영 화 관 3	영 화 관 4	영 화 관 5	영 화 관 6 -1	영 화 관 6 -2	영 화 관 6 -3	영 화 관 6 -4	영 화 관 6 -5	영 화 관 6 -6	영 화 관 6 -7	영 화 관 6 -8	영 화 관 6 -9	영 화 관 6 -10
1	X	X	O	O	O	O	O	O	O	O	O	O	O	O	X
1-1	X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X	O	X	X	X	O	O	X	O	O	O	X	O	O	O
4-1		O				O	O		O	O	X			X	O
5	X	X	X	X	X	X	X	O	O	O	X	X	X	X	X
5-1									X	O					
6									O			O		O	O
7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1		O	O	X	O	O	O	O	O	O	O	O	O	O	O
11	X	X	X	X	X	O	O	X	O	O	O	O	O	O	X
11-1						O	O		O	O	O	O	O	O	
12	X	O	O	X	O	O	O	O	O	O	O	O	O	O	O
13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X	O	X	O	O	O	O	O	O	O	O	X	O	O	O

15	O	O	X	O	O	O	X	O	O	O	O	O	O	O	O
16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O	O	O	O	O	X	O	O	O	O
18					O			O	O		X				X
19	O	O	O	O	O	O	X	O	X	O	O	X	X	O	O
20	O	X	O	X	O	O	X	O	O	O	O	X	X	O	O
21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22	X	X	X	X	O	O	O	O	O	O	O	O	O	O	X
23	O	X	X	X	O	O	X	O	O	X	O	O	O	O	O
24	X	X	X	X	O	X	X	O	X	X	X	X	X	X	X
25	X	X	X	O	O	O	X	O	X	O	O	O	X	O	O
26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7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9	X	O	O	X	O	O	O	O	O	O	O	O	O	O	O
3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3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31-1															
31-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3	X	X	X	X	X	O	O	X		O	X	O	O	O	X
33-1	O	O	O	O	O			O			O				O
34	X	X	X	X	O	X	X	X	X	O	X	X	X	X	X
35		O	O	O	O	X	X	X	O	X	X	X	X	X	O
35-1		X	X	X	O	X	X	X	O	X	X	X	X	X	O
35-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6		O	X	X	X	O	X	X	O	O	O	O	O	O	O
37		O	X	X	O	X	X	X	O	O	X	X	X	X	X
38		X	X			X	X	X	X	O	X	X	X	X	O

면 화 관 6	영화관6														
	영 화 관 6 -11	영 화 관 6 -12	영 화 관 6 -13	영 화 관 6 -14	영 화 관 6 -15	영 화 관 6 -16	영 화 관 6 -17	영 화 관 6 -18	영 화 관 6 -19	영 화 관 6 -20	영 화 관 6 -21	영 화 관 6 -22	영 화 관 6 -23	영 화 관 6 -24	영 화 관 6 -25
1	O	O	O	X	O	O	O	O	X	O	O	O	O	O	
1-1				O					X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X	O	O	O	O	O	O	O	X	X	X	O	O	O	X
4-1		O	O	O	O	X		O				O	O	O	
5	X	X	O	X	X	O	X	X	X	O	X	X	X	X	X
5-1															
6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10-1	O	O	O	X	O	O	O	O		O	O	O	X	O	X
11	X	X	O	O	X	X	O	O	X	O	X	O	X	O	X
11-1			O	O			O	O		O		O		O	
12	O	O	O	O	O	X	O	O	X	O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O	X	X	X	O	O	O	O	O	O	O	X	O	O	O
15	X	X	O	X	O	O	O	O	O	O	X	O	X	X	O
16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			X		O	X	O	O		O					X

19	X	X	X	X	O	X	O	O	O	O	O	O		O	O
20	O	X	X	X	O	O	O	O	O	O	O	X		O	X
21	O	O	X	O	X	O	O	O	X	O	O	O	O	O	O
22	O	O	O	O	X	O	O	O	O	O	O	O	O	X	O
23	X	X	O	O	X	O	O	O	X	O	O	O	O	O	X
24	X	X	X	X	X	X	X	X	X	O	O	O	X	X	X
25	O	X	O	O	O	O	O	O	O	O	O	X	O	O	O
26	X	O	O	O	O	O	O	X	X	O	O	O	O	O	O
27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28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2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0	X	X	X	X	X	O	X	X	X	X	X	X	X	X	X
3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	X	X	X	X	X	X	X	X	X	X	X	O	X	X	X
31-1												O			
31-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3	O	O	X	O	O	O		O	O	O	X	O		X	X
33-1			O								O			O	O
34	X	X	O	X	O	X	X	X	X	X	X	O	X	O	X
3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35-1	O	X	X	X	X	X	X	X	X	X	X	X	X	X	
35-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6	O	X	O	O	X	X	O	O	O	O	O	O	O	O	O
37	O	X	X	X	X	X	O	O	O	O	O	O	O	O	O
38	X	X	O	O	X	X	O	O	O	O	O	O	O	O	O

면 화 관	영 화 관 7												영 화 관 8		
	영 화 관 7 -1	영 화 관 7 -2	영 화 관 7 -3	영 화 관 7 -4	영 화 관 7 -5	영 화 관 7 -6	영 화 관 7 -7	영 화 관 7 -8	영 화 관 7 -9	영 화 관 7 -10	영 화 관 7 -11	영 화 관 7 -12	영 화 관 8 -1	영 화 관 8 -2	영 화 관 8 -3
1	0	0	0	X	0	0	0	0	0	0	0	X	0	0	0
1-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X	0	0	0	0	0	0	0	0	0	0	0	0
4	X	0	0	X	X	0	0	0	0	X	X	0	0	0	0
4-1		X	X			X	0	0	0			0	0	0	0
5	X	X	X	X	X	0	X	X	X	X	X	X	X	X	X
5-1															
6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X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	0	0	0	X	0	0	0	0	0	0	X	0	0	0	0
11	0	0	0	X	0	X	0	0	0	0	X	0	X	X	X
11-1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X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0	0	0	0	X	0	X
15	X	0	0	X	0	0	X	0	0	X	0	0	0	X	0
16	0	0	0	0	0	0	0	X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X	0	0	0	0	0	0	0
18		X						X		X				0	0

19	X	X	X	O	O	O	O	X		X	O	O	X	O	
20	X	X	O	O	O	O	O	X		X	O	O	X	X	
21	O	O	O	X	O	X	X	O	O	O	X	O	O	O	O
22	O	O	O	X	O	X	O	O	O	O	X	O	O	O	O
23	X	X	O	X	X	X	X	O	X	X	X	O	X	X	O
24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25	O	O	X	O	O	X	O	O	O	O	O	O	O	X	X
26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29	O	O	O	O	O	X	O	X	O	O	O	O	O	O	O
30	X	O	X	X	X	X	X	X	X	X	X	X	X	O	X
30-1	O		O	O	O	X	O	O	O	O	O	O	O		O
31	X	X	O	O	X	X	X	X	O	X	O	X	X	X	X
31-1															
31-2	O	O			O	O	O	O		O		O	O	O	O
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3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33-1										O					
34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35	X	X	O	X	O	X	X	O	X	X	X	X	X	X	O
35-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35-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6	X	X	O	X	O	X	X	X	X	X	X	X	X	X	O
37	X	X	O	X	X	X	X	X	X	X	X	X	X	X	O
38	X	X	X	X	O		O	O	O	O	O	O	X	X	

면 화 관 8	영 화 관 8														
	관 8 -4	관 8 -5	관 8 -6	관 8 -7	관 8 -8	관 8 -9	관 8 -10	관 8 -11	관 8 -12	관 8 -13	관 8 -14	관 8 -15	관 8 -16	관 8 -17	관 8 -18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X	0	0	0	0	0	0	X	0	0	0	0
4-1	X	0	0		0	0	0	X	0	0		0	0	0	0
5	X	X	X	X	0	X	0	X	0	X	X	X	X	X	X
5-1															
6			0						0						
7	X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X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	0	0	X	0	0	0	0	0	0	0	0	0	0	0	0
11	0	0	0	X	0	X	0	X	X	0	0	0	X	0	X
11-1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X	0	0	0	0	X	0	0	X	0	0	0	X	0	0
15	X	0	0	0	0	0	0	0	0	0	0	0	X	0	0
16	0	0	0	0	0	X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X	0	0		0	0	0			0	0	X		X	

19	X		O	X	X	X	X	X	X	O	X	O	X	O	O
20	X		O	O	*	O	O	X	O	O	O	O	X	O	O
21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2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3	X	X	X	X	X	X	O	X	O	O	O	O	X	O	X
24	X	X	X	X	X	X	X	X	X	O	O	O	X	O	X
25	O	O	O	O	O	O	O	O	X	O	O	O	X	O	O
2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9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30	X	X	X	X	X	X	X	X	X	X	X	O	X	O	X
30-1	O	O	O	O	O	O	O	O	O	O	O		O		O
31	X	X	X	X	X	X	X	X	X	X	X	O	X	O	X
31-1															
31-2	O	O	O	O	O	O	O	O	O	O	O		O		O
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3	X	O	X	O	O	X	O	O	O	O	O	O	X	O	O
33-1	O		O			O							X		
34	X	X	X	X	X	X	X	X	X	X	X	O	X	X	O
35	X	X	X	X	X	O	X	X	X	O	O	X	X	X	X
35-1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35-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6	O	O	O	O	X	O	O	X	O	X	X	X	O	O	X
37	X	X	X	O	X	X	X	X	O	X	X	X	X	X	X
38	X	O	O	X	X	O	O	X	X	X	X	X	X	O	X

면 번 번호	영 화 관 8												
	영 화 관 8 -19	영 화 관 8 -20	영 화 관 8 -21	영 화 관 8 -22	영 화 관 8 -23	영 화 관 8 -24	영 화 관 8 -25	영 화 관 8 -26	영 화 관 8 -27	영 화 관 8 -28	영 화 관 8 -29	영 화 관 8 -30	영 화 관 8 -31
1	O	O	O	O	X	O	O		O	O	O	O	X
1-1					X								X
2	O	O	O	O	O	O	O		O	O	O	O	X
3	O	O	O	O	O	O	O		O	O	O	O	O
4	O	X	O	X	O	X	X	X	O	O	O	O	X
4-1	O		O		O				O	O	O	O	
5	X	X	X	X	X	X	X	X	X	X	X	X	X
5-1													
6									O	O			
7	O	O	X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X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X	O	O	O	O	O	O
11	X	X	X	X	X	X	O	O	X	O	X	X	O
11-1							O	O		O			O
12	X	X	O	O	O	O	O	O	O	O	X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X	X	X	O	O	O	O	O	O	X	X	X	X
15	O	O	O	O	O	O	O	O	O	O	O	X	O
16	O	X	O	O	O	O	O	O	X	O	O	O	X
17	O	O	O	O	O	O	O	O	O	O	O	O	O
18	X				X	O		O	X	O			

19	○	○	○	○	○	○	○	○	○	X	○	○	○
20	X	X	○	○	X	○	○	○	X	○	○	○	X
21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23	○	X	X	X	○	○	X	○	X	○	X	X	X
24	○	X	X	X	○	○	X	○	X	○	X	X	X
25	○	○	○	○	X	○	○	X	○	○	X	○	X
26	○	○	○	○	X	X	○	○	○	○	○	○	X
27	○	○	○	○	○	○	○	○	○	○	○	○	X
28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30	○	X	X	X	X	X	X	X	X	X	X	X	X
30-1		○	○	○	○	○	○	○	○	○	○	○	○
31	○	X	X	X	X	X	X	X	X	X	X	X	X
31-1													
31-2		○	○	○	○	○	○	○	○	○	○	○	○
32	○	○	○	○	○	○	○	○	○	○	○	○	○
33	○	○	X	X	X	○	X	○	○	○	○	X	○
33-1			○	○	○		○					○	
34	X	X	X	X	X	○	○	X	○	○	X	○	X
35	X	○	○	○	X	X	○	X	○	X	X	X	X
35-1	○	X	○	○	X	X	X	X	○	X	X	X	X
35-2	○	○	○	○	○	○	○	○	○	○	○	○	○
36	○	○	○	○	○	○	○	○	○	○	○	○	○
37	X	X	X	X	X	X	X	X	X	X	X	X	X
38	○	○	○	○	○	○	○	○	○	○	○	○	○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2개소(2.7%) 및 폐관 2개소(2.7%) 총 4개소(5.5%), 하기와 같이 표기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1	※ 미회신 기관(폐관)
영화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 점자안내판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세면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4년 12월까지)</li> <li>- 통로 및 상영관 내부에 비상벨, 경보등, 유도등 등의 설치 진행중(2014년 하반기 현재)</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지원 중임</li> <li>-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보조인력 운영 중</li> <li>- 웹사이트 내 동영상에 수확통역,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관련, 개편 예정(2015년 상반기)</li> </ul>
영화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정(2014년 12월중)</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확보, 대변기 적정 높이 개선 예정(2014년 12월까지)</li> <li>- 통로 및 상영관 내부에 비상벨, 경보등, 유도등 등의 설치 진행중(2014년 하반기 현재)</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지하극장인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지원 중임</li> <li>-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보조인력 운영 중</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항목들 관련 개편 예정(2015년 상반기중)</li> </ul>
영화관4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완료</li> <li>-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완료</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완료. 한편, 추가 및 보완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2015년 예산반영-사십만원- 후 영화의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자료 비치 예정(2015년)</li> <li>- 청각장애인 이용 시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수화통역 자원봉사자를 제공할 예정</li> <li>- 배리어프리영화-시·청각장애인 무료상영- 확대 예정</li> <li>- 매표순서 확인을 위한 전광판은 설치 완료했으며, 예산반영 후 음성알림 등 설치 예정(2015년)</li> <li>-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 내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구성 및 배열 조정 예정(2014년 3월~계속)</li> </ul>	
영화관 6	영화관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이미 설치 완료</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는 본사에서 일괄 해결 예정</li> </ul>
	영화관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이 없으나, 호출벨 이용 장려 및 홍보하겠음</li> <li>-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기준 미충족이나, 3관·4관 입장안내로 문제 해결하겠음</li> <li>- 대변기 적정 높이,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적정 높이 및 점자표시 설치하기 위해 향후 리뉴얼 시 참조 및 반영 유도</li> <li>-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이 어려우나, 3관과 4관이 무단차 상영관이기 때문에 해당 관에서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관람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음</li> </ul>
	영화관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시설담당과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협의중</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li> </ul>
	영화관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위하여 건물측과 협의 예정</li> <li>- 세면대 높이 0.775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코디네이터 주: 편의증진보장법상 기준은 상단높이 0.85m 이상임)</li> <li>- 매표대 하부공간 확보토록 리뉴얼 시 개선 예정(2014년)</li> <li>-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하도록 당관 시설팀과 확인 후 개선 예정</li> <li>- 장애인의 요청 시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 이용 가능</li> </ul>
	영화관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사 예정(2014년 10월 20일)</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보수 완료</li> <li>- 촉지 안내판 및 핸드레일 설치 완료했으며,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위해 건물측과 협의 예정</li> <li>-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즉시 개선 완료</li> <li>- 화장실 내 장애인용 비상·호출벨 설치키 위해 건물측과 협의 완료</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는 향후 리뉴얼 시 반영 예정</li> <li>- 매표순서 확인을 위한 전광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없으나, 본 영화관의 대기인원이 많지 않아서 매표순서 확인용 기기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보조인력 배치 중임</li> </ul>
영화관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영관 출입구 및 대기공간에 점형블록,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가능 및 예정</li> <li>- 대변기 칸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이 0.9m, 세면대 높이 0.84m, 세면대 하부공간의 깊이 0.7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판단함</li> </ul>
영화관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토록 건물측과 협의 예정</li> <li>- 매표대 하부공간 확보,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 가능,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적정 높이는 향후 리뉴얼 시 반영 예정</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매표소의 노트북을 이용해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 이용 가능</li> </ul>
영화관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형블록 보수 완료</li> <li>- 점자안내판 설치를 위해 입점 물 및 영업기획담당에 반영 요청</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적정 높이는 향후 리뉴얼 시 반영 예정(2015년)</li> </ul>
영화관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를 위하여 건물 시설팀에 해당 내용 전달</li> <li>- 상영관 내부 비상벨, 경보등, 유도등 설치 완료(2014년 7월)</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이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ul>
영화관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위해 건물 시설팀 및 본사 영업팀과 협의 예정</li> <li>- 대변기 및 세면대 적정 높이는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은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상영관 출입구 단차가 있으나, 현재 이용 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향후 리뉴얼 시 반영 예정</li> </ul>
영화관 6-12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영 화 관 6	영화관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7m, 깊이 1.605m이고, 세면대는 하단높이 0.67m, 상단높이 0.72m, 수도꼭지높이 0.85m이므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화장실 내 장애인용 비상·호출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li> <li>- 통로에 경보등, 유도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li> <li>- 매표소 하부공간 높이 0.70m, 깊이 0.48m로 개선 완료</li> <li>-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안내자료 비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해서 본사에 문의 예정</li> </ul>
	영화관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 점자안내판 설치 관련, 건물관리단에 개선 요청 예정</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대변기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매표대 하부공간 확보는 리뉴얼 시 반영 예정(2014년 11월). 한편, 10층에 장애인화장실 1개 추가설치하여 남녀구분 예정</li> </ul>
	영화관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 장애인화장실 입구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0월중)</li> <li>- 상영관 총 8개관 및 퇴출로 복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등 설치 완료</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은 향후 리뉴얼 시 반영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의 안내자료는 없으나, 장애인 방문 시 1:1응대 진행 교육을 통해 해결하겠음</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VIP라운지 PC를 이용하여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를 제공 가능</li> <li>- 마케팅 담당측에 홈페이지 개선 시 웹접근성 반영 요청</li> </ul>
	영화관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보수,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남자용 대변기 및 소변기와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수직손잡이 모두 설치, 화장실 내부 장애인용 비상호출벨 설치, 세면대 적정 높이,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상영관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확보 관련, 리뉴얼 시 모두 개선 예정</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VIP라운지 PC를 이용하여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를 제공 가능</li> <li>- 본사 담당부서에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내용 전달</li> <li>* 리뉴얼공사 1차: 2014년 10~12월, 12층 일부 및 10층 전체</li> <li>리뉴얼공사 2차: 2015년 3~6월: 13층 및 12층 전체</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설치하도록 입점 마트 및 영업기획담당에 요청</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토록 리뉴얼 시 개선 예정(2015년)</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매표소 노트북을 이용하여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를 제공 가능</li> <li>- 장애인의 요청 시 장애인POS에서 빠른 발권이 가능함</li> <li>- 영화관람권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적정 높이를 위하여 리뉴얼 시 개선 예정(2015년)</li> </ul>
영화관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사업주에게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1가지 이상 설치를 요청 및 대외공문 발송하였음</li> <li>- 매표대를 리모델링함으로써 적정 하부공간을 확보할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상영관 주출입구의 단차-현재 3.5cm- 제거를 위하여 바닥 턱 리모델링 업체 선정 중이며 업체견적 요청 완료(2014년 11월중 완료 예정)</li> </ul>
영화관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경사로 제작 예정(2015년 3월까지)</li> <li>- 통로에 비상벨, 경보등, 유도등 설치</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토록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li>-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 매표소 노트북을 이용하여 통신중계서비스(www.relaycall.or.kr)를 제공 가능</li> </ul>
영화관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1층 주출입구에 점형블록 및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한편, 영화관 입구에도 도움요청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 이전)</li> </ul>
영화관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촉지도식 및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완료</li> </ul>
영화관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회신 기관(폐관)</li> </ul>
영화관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임대건물에 공문 발송 예정</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 활용을 통한 수화통역서비스 연결 제공 예정</li> <li>- 장애인의 요청 시 장애인POS로 빠른 발권 가능</li> </ul>
영화관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부착 예정(1개월 이내)</li> <li>- 대번기 높이 0.41m로 즉시 개선 완료</li> <li>- 상영관 내 시각경보등 설치 완료</li> <li>-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를 위하여, VIP라운지 내 장애인창구를 이동해서 설치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 화 관 6	영화관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점자안내판,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를 건물 측에 요청</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화장실 내 장애인용 비상호출벨 설치,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토록 향후 리모델링 시 개선 예정</li> <li>- 세면대 하부공간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ul>
	영화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7-4, 영화관7-6, 영화관7-11의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영화관 리뉴얼 시 반영 예정</li> <li>- 영화관7-1, 영화관7-4, 영화관7-7, 영화관7-10의 대변기 적정 높이를 확보는 영화관 리뉴얼 시 반영 및 위탁주에게 개선 요청 전달 예정</li> <li>- 영화관7-8의 대변기 문의 개폐방향 바깥쪽으로 변환, 화장실 잠금장치 개보수는 위탁지점으로 별도 개선 요청 예정</li> <li>- 영화관7-2, 영화관7-8, 영화관7-10의 화장실 내 장애인 비상호출벨 개보수는 즉시 조치 예정</li> <li>- 영화관7-1, 영화관7-2, 영화관7-3, 영화관7-8, 영화관7-10의 세면대 적정 높이는 영화관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li>- 영화관7-1, 영화관7-2, 영화관7-8, 영화관7-10의 세면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는 영화관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li>- 영화관7-4, 영화관7-6, 영화관7-7, 영화관7-11의 복도 및 통로 내 비상벨, 점멸형태의 경보등 및 유도등 설치 신속하게 조치 예정</li> <li>- 영화관7-1, 영화관7-4, 영화관7-6, 영화관7-11의 상영관 내부 비상벨, 점멸형태의 경보등 및 유도등 설치 신속하게 조치 예정</li> <li>- 영화관7-1, 영화관7-2, 영화관7-4, 영화관7-5, 영화관7-6, 영화관7-7, 영화관7-9, 영화관7-10, 영화관7-11의 매표대 적정 높이는 영화관 리뉴얼 및 신규 영화관 오픈 시 휠체어를 보유토록 하여 확인할 예정</li> <li>- 영화관7-2, 영화관7-4, 영화관7-5, 영화관7-6, 영화관7-7, 영화관7-8, 영화관7-9, 영화관7-10, 영화관7-11, 영화관7-12의 매표대 적정 하부공간은 영화관 리뉴얼 및 신규 영화관 오픈 시 휠체어를 보유토록 하여 확인할 예정</li> <li>- 영화관7-3, 영화관7-6의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은 영화관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li>- 영화관7-5의 상영관 출입구(문) 단차 제거는 영화관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li>- 영화관7-6의 상영관 출입구(문)으로부터 휠체어 좌석으로 접근 시 적정 통과유효폭 확보는 영화관 리뉴얼 시 개선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7 (이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7-1, 영화관7-2, 영화관7-5, 영화관7-6, 영화관7-7, 영화관7-8, 영화관7-10, 영화관7-12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휴대전화 손알림서비스(영상전화-107)를 이용하여 응대할 예정</li> <li>- 영화관7-10에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대표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의 미설치 관련, 매표소에서 발권 시 숫자를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순서를 알려주고 직원이 육성으로 번호를 외침으로써 해결하겠음. 한편, VIP고객 전용 매표소에서 장애인 발권을 지원하고 있음</li> <li>- 영화관7-1, 영화관7-2, 영화관7-3, 영화관7-4, 영화관7-5, 영화관7-6, 영화관7-7, 영화관7-8, 영화관7-9, 영화관7-10, 영화관7-11, 영화관7-12의 배리어프리 영화 미상영 관련,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기획 및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li> <li>- 전 지점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li> </ul>
영화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D영화는 4,000원, 3D영화는 8,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대할인서비스 제공 중임(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까지 할인)</li> <li>- 웹사이트에서 예매 시, 장애인이 온라인인증 없이도 장애우대할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 중임(<i>코디네이터 주: 단, 상영관에 들어가기 직전 복지카드 확인 절차 거침</i>)</li> <li>- 2012년 4월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을 지원하는 장애인영화관람데이를 시행 중임. 최신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음성을 영화에 추가하여 매월 셋째주 화요일 19시대, 목요일 14시대, 토요일 11시대 등, 월 50회 이상 전국 17개 CGV극장에서 상영해왔으며, 최근 전국 20개 CGV극장으로 확대함</li> <li>* 폐관지점 2개 제외 총 29개 지점 중, 직영점 24개, 위탁점 5개임</li>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항목 관련, 직영점은 건물주와 설치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 한편, 위탁점은 협의가 필요함</li> <li>- 영화관8-10은 복도의 통과유효폭이 1.25m로 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영화관8-6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은 리뉴얼 진행 시 반영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영화관8-25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항목 관련, 내부에는 여자용만 존재할지라도 외부에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음</li> <li>- 15개 지점의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은 자체 실태조사 진행 후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8 (이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8-2의 내부화장실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화장실에는 수평손잡이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공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영화관8-19의 화장실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영화관8-29의 화장실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 관련, 벽면에 뚫린 흔적이 있어 건물관리단에게 문의 중이며, 수평 및 수직손잡이 미보유 시에는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11개 지점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확보는 자체 실태조사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3개 지점의 대변기 적정 높이는 자체 실태조사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영화관8-31의 화장실 문의 개폐방향이 바깥쪽인 문제 관련, 리뉴얼 진행 시 반영 예정(2015년 내)</li> <li>- 영화관8-27의 화장실 문은 반접이식문이어서 충족한다고 봄</li> <li>- 5개 지점의 화장실 비상호출벨 설치 진행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10개 지점의 세면대 높이는 자체실태 조사 진행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10개 지점의 세면대 하부공간은 자체실태 조사 진행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통로 및 상영관 내부에 비상벨·경보등·유도등 설치 관련, 직영점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매표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당사는 리뉴얼 시 법적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관할구청의 인허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과거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점은 본사에서 현장조사 및 공사범위 확인 후 순차적으로 리뉴얼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 예정.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영화관8-2과 영화관8-23의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 다만, 위탁점은 위탁주의 협의가 필요함</li> <li>- 영화관8-12과 영화관8-29은 상영관 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영화관8-31은 상영관 앞문으로 입장 시 휠체어 입장이 가능하다고 봄</li> <li>- 영화관8-23, 영화관8-24, 영화관8-31은 상영관 출입구(문) 단차가 2cm 이상이므로 공사범위 확인 후 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영화관8-31의 상영관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은 0.8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영화관8-12은 4DX관-특수관이어서 장애인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함-을 제외하면 전체좌석 중 1%이상의 장애인좌석 수를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됨</li> </ul>

기관	주요 내용
영화관8 (이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사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개봉 영화 안내자료 제공 요청함</li> <li>- 배리어프리 영화는 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영극장 확대 검토 중임</li> <li>-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 점자표시 및 음성지원기능을 설치하는 것 관련, 공급업체에게 가능 여부 확인 중임</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한국형웹콘텐츠 접근성지침 2.0(KWCAG 2.0)에 의거하여 재점검 후 개선 예정 (2015년 3월까지)</li> </ul>

## 마) 영화관 모니터링 총평

- 대형영화사 지점은 영화관 본사 내부지침에 따라 시공 및 관리하므로 각 체크리스트 문항의 충족율이 매우 높거나 미충족율이 매우 높은 양분된 결과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영화관 본사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영화관은 백화점이나 대형상가건물의 높은 층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다. 건물의 주접근로 및 주출입구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화관은 1층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각 영화관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영화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 및 유관단체 측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상영관의 장애인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의 1% 이상인 영화관이 93.2%로 높은 이행율을 보이나, 장애인좌석은 대개 상영관의 맨 앞에 위치해 있어서 장애인이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이용객이 상영관 뒷자리를 선호함을 사실로 전제할 때,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좌석을 그냥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좌석 수를 늘리거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의 제공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권을 확대하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통상의 비장애인용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향유할 수 있는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영화관의 비율이 매우 낮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영화관은 장애인의 요청 시 7일 이내에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영화관에서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응대로 장애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영화관에서는 미리 장치를 구비하거나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해놓을 필요가 있다.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수단으로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안내자료 및 수화통역·화상전화기를 요구했을 때, “본사 내에 도입되지 않아 개별 영화관 지점에서 제공 못함”, “본사에서의 매뉴얼/지침이 없음”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다만, 소수 영화관 지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확대문서 우편송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연결서비스(170 등)를 제공하는 영화관이 각각 있었다. 그러므로, 본사의 운영방침 수립도 중요하지만 각 영화관 지점에서의 세부전략 수립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화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대형영화사 본사뿐 아니라 각 영화관 지점에 대하여 법률 홍보 및 이행 유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4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공공기관 모니터링 개요

- **주제:** 공공기관의 ‘시설 접근성’,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6월 중
- **대상:** 1개 권역 14개소  
- 제주 권역
- **모니터링단:** 22명 (장애인: 17명, 77.3%)

### 나) 공공기관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이용자 확인 구간, 복도 및 통로, 화장실, 민원접수대, 경보 및 피난 설비
- 행정절차·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공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5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5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3	11	0	21.4%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11	0	3	100.0%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14	0	0	100.0%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14	0	0	100.0%
4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9	5	0	64.3%
4-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8	1	5	88.9%
5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4	10	0	28.6%
5-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1	0	13	100.0%
6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3	0	11	100.0%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12	2	0	85.7%

### ㉡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이다.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21.4%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 비율이 100.0%에 달하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 한편, 경사각도가 급한 경사로의 경우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혼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도 중요하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엄격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경사로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기울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이 64.3%로 다소 낮은 편이다. 점형유도블록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 주출입구 부근에서 다칠 위험성이 있다.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

은 28.6%로 낮은 이행율을 보인다. 점자안내판 등의 유도·안내설비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항목에서는 100.0%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항목에서는 85.7%의 기관이 충족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 꽤 많은 공공기관이 정부청사 건물 내에 존재한다. 건물의 주접근로 및 주출입구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불가” 또는 “향후 청사 관리주체 측에 문의 예정”이라는 미흡한 회신을 보내왔다. 각 공공기관은 청사의 일부분에 들어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관해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기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 및 유관단체 측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 (2) 이용자 확인 구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이용자확인구간 통과유효폭 적정	14	0	0	100.0%

### ㉢ 분석 및 논의

- 이용자확인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인 기관이 100.0%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 (3)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9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의 장애물로 실질유효폭이 “1.2m” 이하로 감소하지 않고, 적정 유효폭 확보함	
10	공공기관이 2개층 이상의 시설물인 경우,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9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14	0	0	100.0%
9-1	실질 통과유효폭 적정	14	0	0	100.0%
10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10	1	3	90.9%
10-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10	0	4	100.0%

#### ㉢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및 관리,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충족율을 보이므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 참고로,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1개 기관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청사 개축 시 추진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 (4) 화장실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일반사항)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2-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13	대·소변기 간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6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7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9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X
20-1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비상시 인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1	장애인화장실 설치	11	3	0	78.6%
11-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8	3	3	72.7%
12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8	6	0	57.1%
12-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8	0	6	100.0%
13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11	3	0	78.6%
14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9	5	0	64.3%
15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8	6	0	57.1%
16	대변기 높이 적정	11	3	0	78.6%
17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4	0	0	100.0%
18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8	4	2	66.7%
19	세면대 높이 적정	7	5	2	58.3%
20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0	14	0	0.0%
20-1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	0	0	14	-

㉡ 분석 및 논의

-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78.6%, 그 중에서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비율은 72.7%에 그치고 있다. 즉,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한 공공기관은 8개소(57.1%)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57.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대변기 관련 항목은 약 50~80%의 이행 비율을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이 적정한 기관은 64.3%,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적정한 기관은 57.1%이다. 즉, 휠체어장애인의 대변기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대변기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78.6%,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된 기관도 78.6%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변기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대변기에 대한 이용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구분·표시해 놓았으나, 법적 세부기준을 지키지 않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거나 회전 및 이동할 수 없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 및 허망함을 초래할 수 있다.
-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66.7%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기관 2개소(14.3%) 중에는 주름식 접이문(일명 자바라)을 설치한 기관이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데, 주름식 접이문을 설치한 채 화장실사용여부 표시 설비와 잠금장치를 갖추지 않은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한다면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관은 화장실 잠금장치를 제대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세면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58.3%으로 낮은 편이다.
-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설비를 갖춘 기관 비율은 0.0%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는 화장실 또는 대변기 칸 내부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변기 칸은 폐쇄된 공간이며 위급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의 충족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향후 재점검 또는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미충족 문항에 대한 기관 회신공문에서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미진한 답변이 많았다.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 불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요구되므로 추후 개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기관이 많았다. 각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다만,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치 및 관리,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신을 한 기관이 많았다. 상기 항목들을 개선할 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민원접수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1	민원접수대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민원접수대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1	민원접수대 높이 적정	12	1	0	92.3%
22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적정	7	6	0	53.8%

### ㉢ 분석 및 논의

-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이 53.8%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미충족 기관들 중 다수는 “휠체어사용자가 방문 시 직원이 직접 응대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을 법적 세부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민원접수실이 2층, 3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단원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1개소, 7.1%)은, 상기 문항을 모니터링하지 못했다.

## (6) 경보 및 피난 설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3	위급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비상경보 등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2)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3	비상벨 및 비상경보 설치	8	6	0	57.1%

### ㉢ 분석 및 논의

-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를 설치한 기관은 57.1%로 낮은 편이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는 비상벨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필요하다. 이 항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7) 정당한 편의 제공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4	시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24-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인력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조인력, 점자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5	청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25-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25번 항목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5-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4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민원서식 제공	8	6	0	57.1%
24-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5	1	8	83.3%
25	수화통역·화상전화기 제공	4	10	0	28.6%
25-1	화상전화기 정상적으로 작동	1	0	12	100.0%
25-2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10	1	3	90.9%

## ㉡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57.1%로 낮은 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요구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식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중 1개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은 28.6%로 이행 비율이 낮다. 그 중 90.9%가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특별히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수화통역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설치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 등을 해야 할 것이다.

## (8)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6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음성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6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6	0	8	100.0%
27	키보드만으로 서식발급신청 등 이용 가능	6	0	8	100.0%

### ㉢ 분석 및 논의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100.0%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20)</sup>을 참

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향후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이용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20)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 라) 공공기관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없음

문항 번호	제주													
	공공 기관 1	공공 기관 2	공공 기관 3	공공 기관 4	공공 기관 5	공공 기관 6	공공 기관 7	공공 기관 8	공공 기관 9	공공 기관 10	공공 기관 11	공공 기관 12	공공 기관 13	공공 기관 14
1	X	X	X	X	X	X	X	X	O	X	X	O	X	O
1-1	O	O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X	O	O	X	O	X	O	X	O	O	O	X	O	O
4-1		O	O		O		O		O	O	X		O	O
5	X	O	O	X	X	X	O	X	X	O	X	X	X	X
5-1		O												
6									O		O	O		
7	O	O	O	X	X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O		O	X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O	O	O	O	
11	O	O	O	X	O	X	O	X	O	O	O	O	O	O
11-1	X	X	O		O		O		X	O	O	O	O	O
12	X	O	O	X	X	X	O	X	O	O	O	X	O	O
12-1		O	O				O		O	O	O		O	O

13	○	○	○	X	○	X	○	X	○	○	○	○	○	○
14	○	○	○	X	X	X	○	X	X	○	○	○	○	○
15	X	X	X	X	○	X	○	X	○	○	○	○	○	○
16	○	○	○	X	○	X	○	X	○	○	○	○	○	○
17	○	○	○	○	○	○	○	○	○	○	○	○	○	○
18	○	○	○	X	X	X	○	X		○	○		○	○
19	X		○	X	○	X	○	X	○	○		○	○	X
2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0-1														
21	○	○	○	○	*	○	○	○	○	○	X	○	○	○
22	○	○	○	○	*	○	X	X	X	X	○	○	X	X
23	X	X	○	X	○	X	○	○	○	○	○	○	X	X
24	○	○	○	○	○	X	○	X	X	○	○	X	X	X
24-1						○		○	X			○	○	○
25	X	○	X	○	X	X	X	X	X	X	○	○	X	X
25-1				○								*		
25-2	○		○		○	○	X	○	○	○		○	○	○
26		○		○		○	○	○		○				
27		○		○		○	○	○		○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기관	주요 내용
제주	
공공기관1	- 미충족인 문항들은 신축사옥(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반영할 예정
공공기관2	- 주출입구와 접근로의 단차가 2cm 이하가 되도록 조치 예정(2015년 12월말까지) - 장애인화장실이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용으로 운영 중이며 안내를 강화하겠음 -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12월말까지)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광등 설치 예정(2015년 12월말까지)
공공기관3	- 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 완료(2014년 10월 15일)
공공기관4	- 주출입구 단차 높이가 2.5cm로써 사실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문을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시정 안함 - 주출입구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어서 시정 안함 - 점자안내판 설치는 본부와 상의하여 예산이 배정되면 설치 예정 - 기관이 사용가능한 주차장이 5개인데 건물주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시정 안함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어서 시정 안함 - 위급상황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 비상경보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
공공기관5	- 주출입구 단차가 없다고 판단됨 -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자안내판 우선 설치 예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다만, 안내표시가 제거되어 이를 나타내기 위한 도색작업 등 보완할 예정 -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화장실 내부 비상벨을 우선 설치 예정 - 대변기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9.5m이므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 (코디네이터 의견: 이 기관의 출입구(문)은 자바라-주름식 문-형식으로써 자바라 자체의 두께가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이 두께를 빼고 계산해서 증명해야 함)

기관	주요 내용
공공기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의 단차가 2cm 이하여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기준 및 경보·피난설비 기준에 미충족하나, 1993년 준공된 건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봄 (코디네이터 의견: 해당 기관이 2009년 4월 11일 이후 증축 또는 개축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시각장애인의 사전요구-1주일 이내- 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점자자료 및 확대문서로 된 안내자료 제공 가능함</li> <li>- 수화통역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가능함</li> </ul>
공공기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관련, 건물측과 협의한 바 설치될 예정 (2015년 3월말까지)</li> <li>- 민원실에 장애인전담창구를 지정하여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조 예정(2015년 12월말까지)</li> <li>- 민원실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화설치업체와 협의 중이며 설치 예정(2014년 11월내)</li> </ul>
공공기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의 단차가 2cm 이하여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미충족인 문항들 관련, 1993년 준공된 건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봄 (코디네이터 의견: 해당 기관이 2009년 4월 11일 이후 증축 또는 개축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민원대-규격: 80cm*50cm*80cm-를 별도 제작할 예정(2014년 11월중)</li> <li>-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점자설명서를 비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수화통역을 위해 웹카메라(화상카메라)구입 및 정부110화상콜센터에 연계하여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11월중)</li> </ul>
공공기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지방청사 보수계획 예산요청 시 적극반영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li> <li>-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민원접수대 교체 통해 적정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보조인력-직원-을 제공하고 있음</li> <li>-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을 위하여 화상전화서비스(스마트폰 영상통화) 제공 가능함</li> </ul>
공공기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민원인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향후 화상카메라 및 화상전화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화상전화서비스 제공 예정(2015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공공기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관련, 측면 경사로가 2.4m에 기울기 1/12이하로 써 이 경사로로 갈음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점형블록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점형블록 구매 및 보수를 위하여 업체견적을 요청(2014년 10월 20~23일)했고 업체선정(2014년 10월 27~31일)했으며 구매 및 보수공사 예정(2014년 11월중). 한편, 선형블록 공사는 추가 실시 예정(2015년)</li>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2015년 실행예산 편성 요청 예정(2014년 11월) 및 공사완료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장애인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2015년 실행예산 편성 요청 예정(2014년 11월) 및 공사완료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민원접수대의 높이가 0.91m이므로, 2층 사무실 민원대 앞에 별도 상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방문 시 직원직접응대 방식으로 해결하겠음. 한편, 민원안내대의 높이가 0.73m이므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ul>
공공기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에서 비활용되었던 확대독서기(Clear View+)를 민원대기공간에 배치하여 안내자료를 확대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결할 예정(2014년 11월초)</li> <li>- 모니터링 당시 화상전화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7월 4일자로 수화통역영상서비스(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활용) 설치로 대체하였음</li> </ul>
공공기관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출입구 앞에 점자안내판을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1층 장애인화장실 2개소(남, 여)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위기상황 시 시·청각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비상벨, 비상경보 설치 관련, 무인경비시스템(SECOM)에 가입 완료(2014년 10월)</li> <li>-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점자청구서를 발행 가능하며, 점자약관은 구비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종합봉사실에 화상전화기를 설치 완료</li> </ul>
공공기관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출입구 앞에 점형요철을 수정 후 점자안내판을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세면대 하단높이가 현재 0.63~64이므로 전문업체 의뢰를 통하여 개선 예정(2015년초)</li> <li>- 1층 장애인화장실 2개소(남, 여)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초)</li> <li>- 본부 1층 종합봉사실(민원실)에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5년초)</li> <li>-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점자청구서를 발행 가능하며, 점자약관은 구비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종합봉사실(민원실)에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2015년초)</li> </ul>

## 마) 공공기관 모니터링 총평

-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정부청사 건물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건물의 주접근로 및 주출입구 문제 관련,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불가” 또는 “향후 청사 관리주체 측에 문의 예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공공기관은 청사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출입구 및 접근로에 관해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기관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폭넓게 이해 및 유관단체 측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에서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관리주체 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향후 정부종합청사 관리주체 측에 대한 법률 홍보 및 이행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57.1%로 낮은 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요구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식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중 1개 이상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28.6%로 낮다. 미충족 기관 중 “보조인력(필담)을 제공함으로써 같음하겠다”는 회신이 많았으나,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편의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설치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을 해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다.



## 5 사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사법기관 모니터링 개요

- **주제:** 사법기관의 ‘시설 접근성’,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6~8월 중
- **대상:** 4개 권역 82개소<sup>21)</sup>
  - 서울, 대전, 제주, 광주 권역
  - 헌법재판소·법원<sup>22)</sup> 15개소, 등기소 18개소, 검찰청 10개소, 경찰청 3개소, 경찰서 36개소
- **모니터링단:** 112명 (장애인: 80명, 71.4%)

### 나) 사법기관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화장실, 법정, 민원실, 경보 및 피난 설비
-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민원자동발매기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21) 고등법원 1개소와 지방법원 1개소는 청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유효데이터가 1개이며, 동일한 이유로, 고등검찰청 1개소와 지방검찰청 1개소는 청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유효데이터가 1개이다. 즉, 총 유효데이터 수는 ‘4개 권역 80개소’이다.

22) 법원 14개소에 헌법재판소 1개소를 포함하여 이하 ‘법원’으로 통칭한다.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6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사법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5-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6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6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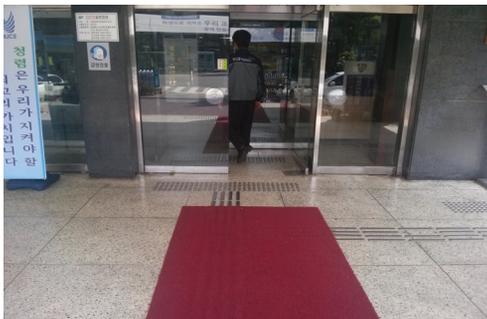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27	53	0	33.8%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50	3	27	94.3%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79	1	0	98.8%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78	2	0	97.5%
4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30	0	50	100.0%
5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80	0	0	100.0%
5-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69	11	0	86.3%
6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71	9	0	88.8%
6-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26	1	53	96.3%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74	0	6	100.0%

### ㉔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이다.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이 33.8%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 비율이 94.3%에 달하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 한편, 경사각도가 급한 경사로의 경우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혼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도 중요하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엄격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경사로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기울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그외 다른 항목은 약 90% 이상의 기관이 충족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사법기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관 접근·이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등기소의 경우, 시설 접근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속 법원에서 예산 및 정책을 내려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므로, 각 법원에서는 소속 등기소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㉕ 주요 사례



[그림29] 장애물로 가려진 유도블록



[그림30] 적절하지 못한 경사로



[그림31] 경사 기울기가 큰 경사로

## (2)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사법기관이 2개층 이상의 시설물인 경우,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77	2	1	97.5%
9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34	32	14	51.5%
9-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33	0	47	100.0%

㉡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이 적정한 기관은 97.5%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51.5%로 낮은 편이다. 즉, 2개층 이상의 시설물로 된 사법기관 중 약 50%는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등의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경찰서의 경우, 민원실을 제외한 경찰서 본관에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지체장애인의 방문 시 담당자가 직접 내려갈 것”, “민원실이 1층에 존재하므로 문제 없음”이라는 회신이 많았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실<sup>23)</sup>은 1층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 미흡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서 소속원 중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각 경찰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3) 경찰청 경찰민원상담 전화 182에 문의한 결과 “청문감사관실은 대부분 2층에 있다”는 대답을 확보. 2014년 11월 21일.

### (3) 화장실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0-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2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일반사항)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1-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화장실 출입구에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	
13	대·소변기 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4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7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9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대변기 칸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X
21-1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비상시 인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10	장애인화장실 설치	77	3	0	96.3%
10-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60	16	4	78.9%
10-2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부착	47	12	21	79.7%
1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73	7	0	91.3%
11-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72	1	7	98.6%
12	화장실사용여부 시각적 표시설비 설치	60	20	0	75.0%
13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71	8	1	89.9%
14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67	13	0	83.8%
15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42	38	0	52.5%
16	대변기 높이 적정	69	11	0	86.3%
17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63	17	0	78.8%
18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68	8	4	89.5%
19	세면대 높이 적정	31	42	7	42.5%
20	세면대 하부공간 적정	42	33	5	56.0%
21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7	73	0	8.8%
21-1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	5	1	73	83.3%

## ㉔ 분석 및 논의

-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96.3%로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78.9%, 남녀구별 용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기관은 79.7%로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상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91.3% 및 훼손 없이 온전한 기관은 98.6%로 긍정적인 결과이다.
-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기관은 75.0%이다. 즉, 20개소(25.0%)의 사법기관에는 해당 설비가 없다. 대변기 칸에 화장실사용여부 표시 설비가 없는 경우, 이용 중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당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 및 인권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기관은 대변기 출입문에 주름식 접이문(일명 자바라)을 갖추고 있다. 만약 주름식 접이문을 설치한 채 화장실 사용여부 표시 설비와 잠금장치를 갖추지 않은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하면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사법기관은 화장실사용여부 표시 설비 및 잠금장치를 제대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적정한 기관은 52.5%로 낮은 이행율을 보인다.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77개소(96.3%)인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42개소(52.5%)뿐인 것이다. 휠체어가 회전 및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에게 큰 불편함 및 허망함을 초래할 수 있다.
- 세면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42.5%, 세면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56.0%로 낮은 이행율을 보인다. 각 사법기관은 세면대 관련 세부적인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개선해야 한다.
-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설비를 갖춘 기관 비율은 7개소(8.8%),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관은 5개소<sup>24)</sup>뿐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는 화장실 또는 대변기 칸 내부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변기 칸은 폐쇄된 공간이며 위급상황은

24)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비를 갖춘 기관 7개소 중 ①정상적으로 작동 5개소, ②작동 안함 1개소, ③유효데이터 없음 1개소가 존재한다.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의 충족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향후 재점검 또는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미충족 문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추후 청사 이전 시 개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기관이 많았다. 청사 이전 전까지의 과도기적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각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특히 등기소의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화장실 개선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각 법원에서는 소속 등기소의 화장실 관련 미비점을 개선토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㉞ 주요 사례



[그림32] 남녀구분 없는 장애인화장실



[그림33] 청소도구가 비치된 세면대

#### (4) 법정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2	법정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	법정 내 방청석에 휠체어 좌석이 1석 이상 배치되어 있음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4)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에 따라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24	법정에서 재판정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정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연속되는 출입문의 형태로 보아, [동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용하였다.
25	재판정 출입구의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25-1	재판정 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턱이 있더라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형태라면 ‘해당없음’)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6	재판정 내에서 증인석, 피고인석, 원고석, 배심원석 등으로 접근할 때, 통행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통행로에 턱이나 장애물이 존재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미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2	법정 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12	2	66	85.7%
23	법정 방청석에 휠체어좌석 배치	14	0	66	100.0%
24	법정-재판정 간 통행로 통과유효폭 적정	14	0	66	100.0%
25	재판정 출입구 단차 제거	12	2	66	85.7%
25-1	단차 있을 시, 경사로 설치	2	0	78	100.0%
26	재판정 내 통행로 통과유효폭 적정	11	3	66	78.6%

### ㉡ 분석 및 논의

- 22번에서 26번까지의 체크리스트 문항은 법원에만 적용된다.
- 법정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이 0.8m 미만인 미충족 기관이 2개소(14.3%), 재판정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미충족 기관이 2개소(14.3%), 재판정 내에서 증인석·피고석·원고석·배심원석 등으로 접근하는 통행로 통과유효폭이 1.2m 미만인 미충족 기관이 3개소(21.4%)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법·행정절차에 관련된 권리를 누리려면 최소한 법정 및 재판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 관련 미충족 기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민원실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7	민원실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헌법재판소·법원, 등기소의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8	민원실 입구 좌석배치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설치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법원, 등기소의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9	민원접수대 또는 등기업무접수대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0	민원접수대 또는 등기업무접수대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7	민원실 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45	3	32	93.8%
28	민원실 출입구 점자 좌석배치도 설치	5	43	32	10.4%
29	민원·등기업무접수대 높이 적정	69	11	0	86.3%
30	민원·등기업무접수대 하부공간 적정	23	57	0	28.8%

### ㉟ 분석 및 논의

- 27번, 28번 체크리스트 문항은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만 적용된다.
- 민원실 출입구에 점자 좌석배치도를 설치한 기관은 10.4%로 매우 낮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충족 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상주 직원이 안내를 하겠다고 회신했으므로 갈음이 가능하다.
- 민원·등기업무접수대의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86.3%이지만, 민원·등기업무접수대의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28.8%로 낮은 이행율을 보인다. [그림34]처럼 하부공간이 없는 민원접수대 또는 [그림35]처럼 너무 높은 민원접수대에는 휠체어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기 힘들다. 각 사법기관에서는 민원·등기업무접수대의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림34] 하부공간이 없는 민원접수대



[그림35] 높은 민원실 안내데스크

## (6) 경보 및 피난 설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31	<p>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과 비상경보가 설치되어 있음 (비상벨과 비상경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p>	<p>[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2)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p>
----	--	---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1	비상벨 및 비상경보 설치	48	32	0	<b>60.0%</b>

### ㉢ 분석 및 논의

-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를 설치한 기관은 60.0%로 낮은 편이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는 비상벨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필요하다. 이 항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7) 정당한 편의 제공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2	시각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서식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사전 요구가 없었을 경우) (각종 서식의 예시: ①헌법재판소·법원: 민원서식 및 법원의 생산·배포문서 일체, ②등기소: 등기관련서류 일체, ③검찰청·경찰서: 민원서류 일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지 말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2-1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3	청각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사전 요구가 없었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3-1	화상전화기 또는 보청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33번 항목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3-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33-3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2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민원서식 제공	28	52	0	35.0%
32-1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	11	41	28	21.2%
33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53	27	0	66.3%
33-1	화상전화기·보청기 정상적으로 작동	33	2	45	94.3%
33-2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28	1	51	96.6%
33-3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	15	13	52	53.6%

## ㉔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비율은 35.0%이며, 나머지 기관 중 사전 요구 시 제공가능한 기관은 21.2%이다. 즉, 총 39개소(48.8%)는 사전 요구 시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의 제공이 가능하다.
- 큰 문제점은 바로 사법기관의 다양한 서식은 개별 기관에서 구비하기 힘들고 상급기관에서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 법원에 존재하는 민원서식 일체는 법원행정처에서, 각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관원서식 일체는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에서, 각 경찰서에 존재하는 민원서식 일체는 지방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
- 법원행정처는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등기서식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등기의 유형이 수십가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첨부서면도 다양하며,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식을 만든다고 해도 장애인 혼자서 이해하고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등기신청서를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줌’ 및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첨부서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판단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편의를 임의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등으로 된 등기서식을 7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함 및 더욱 세심한 법률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사법기관 포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요구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식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검찰청 1개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서-향고장 등- 구비 완료”했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중 1개 이상을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비율은 66.3%이며, 나머지 기관 중 사전 요구 시 제공가능한 기관은 53.6%이다. 즉, 총 68개소(85%)는 사전 요구 시 수화통

역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33번 항목 미충족 사법기관 중 96.6%가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

-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모니터링에서는 사법기관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조력의 내용 공지 및 해당 조치 마련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8) 민원자동발매기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4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조작 버튼의 높이가 “0.4m 이상 1.2m 이하”임 (헌법재판소·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등기소에 자동발급기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에 따라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5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음성지원기능,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된 편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등기소에 자동발급기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6	장애인 스스로 자동발급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이 제공됨 (헌법재판소·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등기소에 자동발급기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4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조작버튼 높이 적정	4	13	63	23.5%
35	발급기에 점자·음성지원 형식 조작버튼 설치	0	17	63	0.0%
36	발급기 이용을 돕는 보조인력 제공	17	0	63	100.0%

### ㉟ 분석 및 논의

- 34번에서 36번까지의 체크리스트 문항은 등기소에만 적용된다.
-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조작버튼의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23.5%, 조작버튼에 점자 또는 음성지원 설비를 갖춘 기관은 0.0%로 매우 낮다.
- 무인발급기의 규격 등 세부기준에 대한 관리는 법원행정처의 소관이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관하여, “2015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 규격서 개정 및 그에 따른 기능시험(BMT)를 실시하여 2015년 하반기 무인발급기 구매사업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 (9)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7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38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전자민원기능 이용이 가능함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전자민원의 예시: 민원서식 다운, 전자민원프로그램 활용, 등기 열람·발급·신청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음성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9	전자소송시스템 상, 시각장애인이 전자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음성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9-1	전자소송시스템 상, 전자문서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비전자문서로 제공 가능함 (등기소, 검찰청, 경찰서의 경우 '해당없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37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43	36	1	54.4%
38	키보드만으로 전자민원기능 등 이용 가능	41	38	1	51.9%
39	전자소송시스템 상, 음성지원시스템 구비	1	13	66	7.1%
39-1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비전자문서 제공	1	13	66	7.1%

㉟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키보드만으로 메뉴 간 이동 및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런데,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54.4%, 키보드만으로 전자민원기능 등이 이용 가능한 기관은 51.9%로 낮은 이행율을 보

이다.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이 낮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25)</sup>을 참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이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 전자 소송시스템 관련,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센터는 39번과 39-1번 문항을 충족하였고, 그외 법원의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은 해당 문항을 미충족하였다. 그래서 충족한 기관은 헌법재판소 1개소(7.1%)이다.
-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할 때, 열람기록뷰어가 사건기록에 대한 음성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은 전자소송 상 사건기록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및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전자소송 상의 문서를 우편송달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우편송달물 중 일부에만 보이스바코드가 찍혀서 나오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고로, 전자문서에는 크게 2종류가 있다. 첫번째, 피고 또는 원고가 제출한 문서로서, 이것은 텍스트 파일 또는 비텍스트(스캔 등) 파일의 형식이다. 두번째, 재판부의 생산문서로서, 명령문·통지서 등의 문서와 결정문·판결문 등의 최종문서로 구성된다.
-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에 관하여, “법원생산문서 및 원/피고가 제출한 텍스트 문서에 대하여 열람 시 기록뷰어가 음성지원하는 부분은 개선 중이며 2015년 상반기 반영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왔다. 물론, 원/피고가 제출한 문서 중 비텍스트 파일에 대하여는 현재 기술 상 음성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우편송달물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사/가사/행정소송 관련 문서에 음성출력바코

25)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드 추가를 2014년 3월 완료”하였으며, “그외 다른 사건의 우편송달물에 대하여도 가까운 시일 내 적용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 문서들에는 명령, 결정, 판결 등 재판서뿐만 아니라 각종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결과이다.

## 라) 사법기관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없음

문항 번호	서울														
	법원 1	법원 2	법원 3	법원 4	법원 5	법원 6	등기 소 1	등기 소 2	등기 소 3	등기 소 4	등기 소 5	등기 소 6	등기 소 7	등기 소 8	등기 소 9
1	O	O	O	O	O	O	X	X	X	X	X	O	O	O	X
1-1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1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1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X	O	X	O	O	O	
9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1	O	O	O	O	O	O	O	O	O	X	O	O	X	X	O
10-2	X	O	O	X	O	O	X	O	O		O	O			O
11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1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2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13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14	O	O	O	O	O	O	O	O	O	X	O	O	O	O	X
15	O	X	O	O	O	O	X	X	X	X	X	X	O	O	O

16	O	O	O	O	O	O	X	O	O	O	X	O	O	O	O
17	O	O	X	O	X	X	O	O	O	O	O	O	O	O	O
18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O	X	X	O	O	X	X	O	X	X	X	X	X	O	X
20	O	X	X	O	X	X	O	X	O	X	X	X	O	O	O
21	X	O	X	O	X	X	X	X	X	X	X	X	X	X	X
21-1		*		O											
22	O	O	O	O	O	O									
23	O	O	O	O	O	O									
24	O	O	O	O	O	O									
25	O	O	O	O	O	O									
25-1															
26	O	O	O	O	O	O									
27															
28															
29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30	O	O	O	X	O	O	X	X	O	X	X	O	X	O	O
31	O	X	O	O	O	O	X	O	O	X	X	X	O	O	O
32	O	O	O	X	X	O	X	O	O	X	X	O	X	X	O
32-1				O	X		X			X	X		X	X	
33	O	O	O	O	O	O	O	X	O	X	X	X	X	X	X
33-1	X	O	O		O	O	O								
33-2	O				O			O		O	O	O	O	O	O
33-3					O			X		X	O	O	O	O	O
34							O	X	X	O	X	X	X	X	
35							X	X	X	X	X	X	X	X	
36							O	O	O	O	O	O	O	O	
37	O	O	O	O	O	O	O	X	X	O	O	X	X	O	X
38	O	O	O	O	O	O	O	X	X	O	O	X	X	O	X
39	O	X	X	X	X	X									
39-1	O	X	X	X	X	X									

문항 번호	서울														
	등 기 소 10	검 찰 청 1	검 찰 청 2	검 찰 청 3	검 찰 청 4	검 찰 청 5	경 찰 서 1	경 찰 서 2	경 찰 서 3	경 찰 서 4	경 찰 서 5	경 찰 서 6	경 찰 서 7	경 찰 서 8	경 찰 서 9
1	0	0	X	X	0	X	X	X	X	X	0	0	0	X	X
1-1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	0	0	0	0	0	0	X	0	0	0	X	0	0	0	0
6	0	0	0	X	0	0	0	0	0	0	0	0	X	0	0
6-1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X	0	0	X	X	X	X	0	X	0	X	X
9-1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	0	0	0	0	0	0	X	0	X	0	0	X	0	0	0
10-2	0	0	0	0	0	0		X		X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X	0	0	0	0	0	0	0	X	0	0	0	0	X	0
13	0	0	0	0	0	0	X		X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X	0	0	X	0	0	0
15	0	0	X	X	X	X	X	0	0	X	0	0	0	0	X
16	0	0	0	0	0	0	0	X	X	X	0	X	0	X	0
17	0	0	0	X	0	0	0	0	0	0	0	X	0	X	0
1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X	X		X	X	X	O	X			O	O		X	X
20	O	X		X	X	X	O	X	X		O	O		X	O
2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1-1															
22															
23															
24															
25															
25-1															
26															
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		X	O	X	O	X	X	X	X	X	X	X	X	X	X
29	O	O	O	O	O	O	X	O	O	X	O	O	O	O	O
30	O	O	X	X	X	X	X	X	X	X	O	X	X	X	X
31	O	X	X	X	X	O	X	X	X	X	O	X	X	X	X
32	X	X	X	X	X	X	X	O	X	O	X	O	O	X	X
32-1	X	X	X	X	X	O	X		X		X			X	O
33	X	X	O	O	O	X	X	X	O	X	O	O	O	X	O
33-1			O	O								O			O
33-2	O	O				O	O	O		O				O	
33-3	X	O				O	X	X		O				O	
34	O														
35	X														
36	O														
37	X	X	X	X	X	X	O	X	X	X	O	X	O	X	X
38	X	X	X	X	X	X	O	X	X	X	O	X	O	X	X
39															
39-1															

문항 번호	서울											대전			
	경찰서 10	경찰서 11	경찰서 12	경찰서 13	경찰서 14	경찰서 15	경찰서 16	경찰서 17	경찰서 18	경찰서 19	경찰서 20	법원 7 · 8	등기소 11	등기소 12	등기소 13
1	0	X	X	X	X	X	X	X	0	0	0	X	X	X	X
1-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	0	0	X	X	0	0	0	0	0	0	0	0	0	0	0
6	0	X	0	0	0	0	0	0	0	0	0	0	0	0	0
6-1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X	X	X	X	0	X	X	X		X	0	0		
9-1						0						0	0		
10	0	0	0	0	X	0	0	0	0	0	0	0	0	0	0
10-1	0	0	0	0			X	0	0	0	X	0	0	0	0
10-2	X	0	0	0				0	0	X		0	0	0	0
11	0	0	0	0	0	0	X	0	0	X	0	0	0	0	0
11-1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X	X	X	0	0	0	0	0	0	X	X	0	0	X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X	0
14	X	0	X	X	0	0	0	0	0	X	0	0	0	0	0
15	X	X	X	X	X	X	0	X	0	X	0	0	0	0	X
16	X	0	0	0	0	0	X	0	0	0	0	0	0	X	0
17	X	0	0	0	0	0	X	0	0	X	0	0	0	0	X

18	O	X	O	O	O	O	O	O	O	O	O	O	O	O	X
19	O	O	X	X	X	X	X	O		X		O	O	O	
20	O	O	X	X	X	X	X	O		X		O	O	O	O
21	X	X	X	X	X	X	X	X	X	X	X	O	O	X	X
21-1												O	O		
22												O			
23												O			
24												O			
25												O			
25-1															
26												O			
27	X	O	O	O	O	O	O	X	O	O	O				
28	O	X	X	X	X	X	X	X	X	O	X				
2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0	O	X	X	X	X	X	X	X	X	X	O	O	X	X	O
31	O	O	X	X	X	X	X	O	O	O	O	O	O	O	O
32	X	X	X	O	X	X	X	X	O	X	X	O	O	X	X
32-1	X	X	X		X	X	X	O		X	O			X	X
33	O	X	O	O	X	O	X	X	O	O	O	O	O	X	X
33-1	O					X			O		O	O	O		
33-2		O			O		O	O						O	X
33-3		O			X		X	O						X	X
34													X	X	O
35													X	X	X
36													O	O	O
37	O	X	O	X	O	O	O	X	O	O	O	O	O	X	O
38	O	X	O	X	O	O	O	X	O	O	O	O	O	X	O
39												X			
39-1												X			

문항 번호	대전						제주							광주	
	검찰청 6 · 7	경찰서 21	경찰서 22	경찰서 23	경찰서 24	경찰서 25	법원 9	등기소 14	등기소 15	경찰청 1	경찰서 26	경찰서 27	경찰서 28	법원 10	법원 11
1	X	X	X	X	O	X	X	X	O	O	X	X	X	X	X
1-1	O	O	O	O		O	O	O			O	O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4		O	O		O					O		O			
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6-1		O	O	O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X	X	O	O	X	O			X	X		O	O	X
9-1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10-1	O	O	O	O	O	O	O	O	X	O	O	O	O		O
10-2	O	O	X	O	O	O	O	O		O	O	O	O		X
11	O	O	O	O	O	O	X	O	O	O	O	O	X	O	O
11-1	O	O	O	O	O	O		O	O	O	O	O		O	O
12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13	O	O	O	O	O	X	O	O	O	O	O	O	O	X	O
14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15	X	X	O	O	X	O	O	O	O	X	O	O	O	X	X
1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X	O	O	O	O	O	X	O	O	X	O

18	O	X	O	O	O	O	O	O		O	O	O	O	O	O
19	O	O	O	O	O	O	O	X	X	X	O	X	X	X	O
20	O	O	O	O	X	O	O	X	O	X	O	X	X	X	O
21	X	O	X	X	X	X	O	X	X	X	X	X	X	X	X
21-1		X					O								
22							O							X	O
23							O							O	O
24							O							O	O
25							X							O	O
25-1							O								
26							O							X	O
27	O	O	O	X	O	O				O	O	O	O		
28	X	X	X	X	X	X				X	X	X	O		
29	X	O	O	O	O	X	O	O	O	O	O	O	O	X	O
30	X	X	O	X	O	X	O	X	X	X	X	O	O	X	X
31	O	O	X	O	O	O	O	X	X	X	X	O	X	O	O
32	O	O	X	X	X	X	O	X	X	X	X	X	X	X	O
32-1			X	O	O	X		O	X	X	O	X	X	O	
33	O	O	O	O	X	O	O	O	X	X	O	X	O	O	O
33-1	O	O					O	O					O	O	O
33-2					O				O	O		O			
33-3					X				X	O		O			
34								X	X						
35								X	X						
36								O	O						
37	X	X	X	X	X	X	O	O	X	X	X	X	X	O	O
38	X	X	X	X	X	X	O	X	X	X	X	X	X	O	O
39							X							X	X
39-1							X							X	X

문항 번호	광주														
	법 원 12	법 원 13	법 원 14	법 원 15	등 기 소 16	등 기 소 17	등 기 소 18	검 찰 청 8	검 찰 청 9	검 찰 청 10	경 찰 청 2	경 찰 청 3	경 찰 서 29	경 찰 서 30	경 찰 서 31
1	X	X	X	O	X	X	X	X	O	X	X	O	O	X	X
1-1	O	O	X		O	O	X	O		X	O			O	O
2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4								O	O						O
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1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O	O	O	O	O	X	X	O
6-1		O	O	O		O	O		O		X	O			
7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O	O	X	O	O	O	X	O	O	X	X	O	X	O	X
9-1	O	O		O	O	O		O	O			O		O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1	X	O	O	O	O	O	O	O	X	O	X	O	X	O	O
10-2		X	O	O	O	X	X	O		O		O		O	O
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2	O	O	X	O	O	O	X	O	O	X	X	O	X	O	X
13	O	O	O	O	X	O	O	O	O	O	O	O	O	O	X
14	O	O	O	O	O	O	O	O	O	X	X	O	O	O	X
15	O	O	X	O	X	O	O	O	X	X	X	X	O	O	O
16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O	O	O	O	O	O	O	O	O	O	O	X	O	X	X
18	O	O	O	O	X	O	X	O	O	O	X	X	O	O	O

19	X	O	X	O	X	O	O	X	X	X	O	X	O	X	X
20	O	O	X	O	X	O	O	O	O	X	O	O	O	X	O
21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1-1	O														
22	X	O	O	O											
23	O	O	O	O											
24	O	O	O	O											
25	O	O	X	O											
25-1			O												
26	X	O	O	X											
27								O	O	O	O	O	O	O	O
28								X	X	X	X	X	X	X	X
29	O	O	O	O	O	O	O	X	O	O	O	O	O	X	O
30	X	X	X	X	X	X	X	O	X	X	X	X	X	X	X
31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32	O	O	O	O	X	O	O	X	X	X	X	X	X	X	X
32-1					X			X	X	X	X	X	O	X	X
33	O	O	O	O	X	X	X	O	O	O	O	O	O	O	O
33-1	O	O	O	O				O	O	O	O		O		
33-2					O	O	O								
33-3					O	X	X								
34					X	X	X								
35					X	X	X								
36					O	O	O								
37	O		O	O	O	O	O	X	X	X	O	X	O	O	O
38	O		O	O	O	X	O	X	X	X	O	X	O	O	O
39	X	X	X	X											
39-1	X	X	X	X											

문항 번호	광주				
	경찰 서 32	경찰 서 33	경찰 서 34	경찰 서 35	경찰 서 36
1	X	O	X	X	X
1-1	O		O	O	O
2	O	O	O	O	O
3	O	O	O	O	O
4					
5	O	O	O	O	O
5-1	X	O	X	O	O
6	O	O	X	X	X
6-1	O				
7	O	O	O	O	O
8	O	O	O	O	O
9	X	O	X	X	X
9-1					
10	X	O	O	O	O
10-1		O	X	X	X
10-2		O			
11	O	X	O	O	X
11-1	O		O	X	
12	O	O	X	X	X
13	O	O	O	O	O
14	O	O	O	X	O
15	X	O	X	O	X
16	O	O	O	O	O
17	X	O	O	O	O
18	O	O	O	O	X

19	X	X	O	O	X
20	X	X	O	O	O
21	X	X	X	X	X
21-1					
22					
23					
24					
25					
25-1					
26					
27	O	O	O	O	O
28	X	X	X	X	X
29	X	X	X	O	O
30	X	X	O	X	X
31	O	O	X	X	X
32	X	X	X	O	O
32-1	X	X	X		
33	O	O	O	O	O
33-1	O	O			O
33-2					
33-3					
34					
35					
36					
37	O	O	O	O	O
38	O	O	O	O	O
39					
39-1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 기관이 회신 공문을 보냈으나 그 내용이 미흡 또는 모호해서 개선계획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2개소(2.4%), 하기와 같이 표기
  -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기관	주요 내용
법원행정처	<p>&lt;접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의 등기관련서류 관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제도 상 절차는 일반 민원서류의 제출 절차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수십가지에 이르고 첨부서류가 다양하기에, 첫째 그에 대한 설명서를 전자문서·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문서로 모두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둘째 제공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li> <li>- 등기소를 방문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정당한 편의는 ‘등기신청서 작성을 대신해 줌’과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등기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등기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으로 해당기관 담당직원에게 필요하면 설명 등</li> <li>• 필요 시 직원 대동 해당기관 안내</li> <li>• 등기소 직원 교육</li> </ul> </li> </ul> <p>&lt;민원자동발매기 관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발급기 규격서 개정 및 그에 따른 기능시험(BMT)를 실시하여 2015년 하반기 무인발급기 구매사업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외에도 장애인의 무인발급기 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li> </ul>

기관	주요 내용
<p>법원행정처 (이어서)</p>	<p>&lt;전자소송시스템 관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생산문서 및 원/피고가 제출한 텍스트 기반 문서에 대하여 열람 시 기록뷰어에서 PDF 파일을 음성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개선 중이며 2015년 상반기 반영 예정이다.</li> <li>한편, 전자소송홈페이지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본다.</li> <li>- 법원에서 생산되어 종이로 출력하여 우편으로 송달하는 소송관련 문서 전체의 약 60% 이상을 민사/가사/행정소송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문서들은 2014년 3월 음성출력바코드 추가가 완료되었다. 이 문서들에는 명령, 결정, 판결 등 재판서뿐만 아니라 각종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회생파산 사건의 송달물은 2014년 4월에 적용되었으며, 그외 민사(가사)신청 사건, 항고재항고 사건의 송달물은 2014년 11월, 특허소송 사건 및 독촉 사건은 2014년 12월, 집행 사건의 송달물은 2015년 3월에 각각 적용 예정이다.</li> </ul>
서울	
<p>법원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벽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부착 완료</li> <li>- 장애인화장실 4개소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li> <li>- 보청기 신제품 구입 또는 기존제품 A/S 예정(2014년)</li> </ul>
<p>법원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위 법원상징 조형물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형물을 한쪽 벽면으로 이동 완료</li>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1.65m, 깊이 1.72m로 깊이(-0.08m) 부분이 법에 저촉되나, 휠체어가 회전 및 이동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li> <li>- 세면대의 상단높이 0.78m, 하단높이 0.6m로 각각 상단높이(-0.07m), 하단높이(-0.05m) 부분이 법에 저촉되나, 휠체어를 이용해 시험해본 결과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함</li> <li>- 세면대의 하부공간도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함</li> <li>- 한편, 본 법원은 1995년 준공된 시설로서 당시 1992년 법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현재 개정법규에 따라 미비한 점이 있으나 관련법규를 지키기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함</li> </ul>
<p>법원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미충족 문항 관련, 법원행정처에 요청하여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개선 예정</li> <li>- 현재 본 법원은 화면낭독프로그램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구비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에게 판결문이나 각종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li> </ul>

기관	주요 내용
법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구분용 점자표지판 및 전면 점형블록을 조속히 설치 예정</li> <li>- 접수대 적정 하부공간을 확보토록 제반사항 검토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이미 구비되어 있음</li> </ul>
법원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봄</li> <li>- 남녀화장실에 각 1개씩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2월말까지)</li> </ul>
법원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청사의 관리주체 측과 협의 예정</li> </ul>
등기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li> <li>- 대변기 칸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li> <li>- 접수대를 법적기준에 맞는 높이와 하부공간으로 설치 예정(2014년 10월 31일)</li> <li>- 비상벨과 비상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음</li> <li>-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된 각종 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년 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예산요청 완료</li> </ul>
등기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이 온전한 형태 유지한다고 봄</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1.07m*1.12m이지만 휠체어의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봄</li> <li>- 세면대 하부 수납공간 제거공사를 통해서 적정 하부공간을 확보할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li>- 보청기 등 추가구입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li>- 음성증폭기 보유중이므로 청각장애인의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함</li> </ul>
등기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이 온전한 형태 유지한다고 봄</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0.91m*2.14m이지만 휠체어의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봄</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ul>
등기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민원접수대의 하부공간이 법적기준 미충족하나, 높이가 적정 및 깊이가 0.3m이기 때문에 휠체어사용자가 민원상담 가능하다고 봄</li> <li>-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말까지)</li> <li>* 2015년 관할법원 광역등기소가 신축되면 문제 해결될 것</li> </ul>

기관	주요 내용
등기소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내 장애인용 경사로의 턱이 1cm이었는데, 바닥에 시멘트를 도포하여 해결하였음</li> <li>- 복도 및 통로에 나무들이 산재해 있어 휠체어 이용 시 불편하였으나, 규모가 큰 나무들을 제거하여 해결하였음</li> <li>-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설치 완료. 한편, 이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이용 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li> <li>- 휠체어 높이만큼 낮은 책상을 민원접수대로 비치하였음</li> <li>- 비상벨, 비상경보등 설치 완료</li> <li>* 2016년에 폐소될 예정인 바, 신장비 설치를 유보 중</li> </ul>
등기소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법원에서 예산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확충,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li> <li>- 관할법원에서 예산확보 후,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비상벨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li> <li>- 관할법원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보청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설치 검토 예정</li> </ul>
등기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등기소 신축계획에 따른 청사신축 시,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할 예정</li> <li>- 세면대는 상단높이 0.80m, 하단높이 0.73m로 법적기준에 충족한다고 봄. <i>(코디네이터 주: 편의증진보장법 상 세면대 상단높이는 0.85m 이상인데 법해석을 잘못된 듯함)</i> 관할법원에서 예산확보 후, 적정 높이를 갖춘 세면대로 개선 예정.</li> <li>- 관할법원에서 예산확보 후,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접수대 적정 하부공간을 확보토록 제반사항 검토 예정</li> <li>- 관할법원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보청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설치 검토 예정(2015년 상반기). 한편, 장애인의 방문 시 맨투맨 응대하겠음</li> </ul>
등기소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 개선 예정</li> </ul>
등기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li>- 보청기 등 추가구입 예정(2014년 11월 30일까지)</li> </ul>
등기소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출입문을 사용여부식별 가능한 잠금장치로 변경 예정(2014년 말)</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말)</li> </ul>

기관	주요 내용
검찰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 별관, NDFC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6대 교체를 통해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예정</li> <li>- 본관, 별관, NDFC 장애인화장실 칸 6개소에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민원실 입구에 좌석배치도의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본관 종합민원실, 정현관 각 1개소에 비상벨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li> <li>-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문서확대기 및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을 민원실 내에 비치할 예정</li> </ul>
검찰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확보 및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2015년 시설비 소요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개선공사 예정</li> <li>- 2015년 자산취득비 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장애인전용 민원접수대 구비 예정</li> </ul>
검찰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본관 및 1·2·3별관에 비상벨과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li> <li>-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문서확대기 등을 민원실 내에 비치 예정</li> <li>* 신청사 이전 예정(2017년 3월)으로서 신청사 신축 시 체크리스트 관련 문항들을 적극 반영하겠음</li> </ul>
검찰청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접근성 관련 미충족한 부분은 2015년 예산 재배정 받아서 설치 및 구비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형식으로 된 민원서식은 대검과 협의 예정</li> </ul>
검찰청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현관 입구에 경사로 설치 예정(2015년)</li> <li>-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5년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완료 예정</li> <li>- 민원실 앞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한편, 추가적으로 안내원-방호원-이 민원실 출입구에 상주하여 시각장애인의 민원신청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줌</li> <li>- 민원접수대 교체를 통해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li> <li>- 2015년 예산확보를 통해 시각장애인 설비 구매 예정</li> <li>- 마포구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민원인이 요청 시 30분 이내에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보청기는 구매 완료</li> </ul>
경찰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충족 문항들 관련, 현재 경찰서 신축 진행 중으로 기본설계 마감단계에 있고 2018년 완공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및 주출입구 통로확보방안 검토(2015년 예산 요청)</li> <li>- 휠체어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2015년 예산 요청)</li> <li>- 화장실 및 종합민원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저비용으로 개선가능한 사항은 내부검토 후 즉각 실시할 예정이며, 그외 개선사항은 검토 후 2015년 예산 요청</li> <li>- 비상벨과 비상경보등 설치 관련, 개선된 경찰관서의 의견수렴 후 시급한 사안으로 검토(2015년 예산 요청)</li> <li>- 정당한 편의제공 및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문항 관련, 개선된 경찰관서 의견수렴 후 예산 요청(2015년 예산 요청)</li> </ul>
경찰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신축추진 중인데, 신축할 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을 금지할 예정</li> <li>- 민원실에 화상통화기 설치 완료(2014년 10월 2일)</li> </ul>
경찰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부착 예정(2014년 10월)</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을 갖춘 민원접수대, 비상벨과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li> <li>- 화상전화시스템 설치 완료</li> <li>- 전자민원업무시스템 설치 예정(2014년 10월)</li> </ul>
경찰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된 점형블록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 실시 예정</li> </ul>
경찰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예산확보를 통해 민원부서를 저층으로 개편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적극 검토</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예정</li> <li>- 화장실 출입문 개폐방법 개선 및 재설비 예정(2015년)</li> <li>- 민원실 출입구 좌석배치도 점자판 비치 예정(2015년)</li> <li>- 접수대를 적정 하부공간에 맞춰 교체 예정(2015년)</li> </ul>
경찰서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시설예산 요청 시 점자안내문,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를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li> <li>- 2015년 시설예산 요청 시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현재 민원동 신축 중(2014~2016년)으로, 민원실 관련 미충족 문항을 반영하여 민원실 설계 및 설비 설치</li> <li>- 2015년 시설예산 요청 시 비상벨, 비상경보등을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시설비 예산요청 및 배정확정 후 휠체어리프트 설치 예정</li> <li>- 화장실 출입구(문)에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설치, 대변기 높이 조절, 대변기 칸 출입문의 밖으로의 개폐, 세면대 상단높이 조정, 세면대 하부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예정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li> <li>- 민원실 입구 좌석배치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설치, 민원 접수대 하부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예정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li> <li>- 2015년 시설비 예산요청 및 배정확정 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류의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편의 제공, 수화통역 또는 화상전화서비스 제공 예정. 한편, 보청기는 즉시 구매 완료</li> </ul>
경찰서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청에 예산을 요청하여 미충족 문항들 개선 예정</li> </ul>
경찰서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충족 문항들 관련, 경찰서 신축 추진중이므로 신축 시 반영 및 지방청에 건의 예정</li> </ul>
경찰서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서 포함 경찰서는 시각장애인을 홈페이지 등록 및 개설 예정</li> </ul>
경찰서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예산배정 시,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류의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등의 편의 제공 부분을 우선 개선 예정</li> <li>-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요청하겠음(2015년)</li> </ul>
경찰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li> </ul>
경찰서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예정</li> <li>- 중앙현관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li> <li>-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이 적정하다고 봄</li> <li>-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예정(2015년)</li> <li>- 민원실에 휠체어를 별도 비치 중이며,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함</li> <li>- 경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점자책, 보이스바코드 등 비치 예정 (2015년). 한편, 현재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사전요구할 경우 민원실 안내직원이 즉각 제공하고 있음</li> <li>- 현재 화상수화통역시스템-전용PC 및 휠체어-을 구비해 사용 중이며, 보청기 구입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서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이동형경사로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각 장애인화장실 내 세면대 적정 높이로 개선 및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각 장애인화장실 내 세면대 하단부수납장 철거함으로써 세면대 적정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4년 하반기)</li> <li>- 민원실 좌석배치 점자도 비치 및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상반기)</li> </ul>
경찰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주출입구 턱높이 제거 완료</li> <li>- 화장실 출입문 미닫이문으로 시정 및 그외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5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종합민원실 및 경보·피난설비 미충족 문항 관련, 2015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고소장 등 주요민원서류 8종 확대문서 제공 예정</li> <li>- 현재까지 청각장애인의 요구 및 필요 시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여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민원용 인터넷컴퓨터에 정부민원콜센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설치(2014년 10월 1일) 및 활용 중에 있음</li> </ul>
경찰서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개선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하반기)</li> <li>- 민원실 출입구 좌석배치도 점자판 비치 및 적정 높이의 민원접수대로 교체 예정(2014년 하반기)</li> </ul>
경찰서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비상벨 조속히 설치 예정</li> <li>-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접수대 개선 완료(2014년 7월 1일)</li> </ul>
경찰서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벽면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부착 및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 예산반영해서 상반기 중)</li> <li>- 본관 1층 남녀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4/4/분기 내)</li> <li>- 그외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6년 청사신축 시 개선 예정</li> <li>- 민원실 내 별도의 민원인대기실에 원탁탁자를 비치함으로써 민원접수대로 활용 조치 완료</li> <li>- 웹카메라 및 헤드셋 구입·설치 등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 완료(2014년 10월 14일)</li> </ul>
경찰서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으나, 전 조사실이 1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해당부서 담당자가 1층에서 장애인과의 업무 처리 중임</li> <li>- 화장실 출입문에 화장실사용여부 표시등 설치 예정</li> <li>-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및 형사데스크와 연결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대전	
법원7-8	- 본 법원의 분장사무 하 미충족문항 없음
등기소11	- 2015년도 예산반영을 통해 적정 하부공간인 접수대 설치 예정
등기소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 예정</li> <li>- 화장실 내 수평 및 수직손잡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li> <li>- 2015년도 예산반영을 통해 적정 하부공간인 접수대 설치 예정</li> <li>- 보청기, 문서확대기 구입을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li> </ul>
등기소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으로 개폐, 화장실 잠금장치 정상 작동이 되도록 수리 예정(2014년 10월)</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li> <li>- 보청기, 문서확대기 구입을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li> </ul>
검찰청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실 입구에 경사로 설치 완료</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1.65m, 깊이 1.74m로 깊이(-0.06m)가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공간 확장이 곤란함</li> <li>- 대변기 칸 도움벨 설치 완료</li> <li>- 민원접수대의 높이가 0.85m로 적합하다고 봄</li> <li>- 민원접수대의 하부 깊이가 0.43m로 부족(-0.02m)하지만, 예산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예정</li> </ul>
경찰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제거 위해 관련업자 선정하여 견적 제출토록 요청</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너비 1.3m, 깊이 1.85m로 충족한다고 봄</li> <li>- 잠금장치가 정상작동 중이라고 판단함</li> <li>-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이며, 견적 제출 요청</li> <li>-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예정이며, 견적 제출 요청중</li> <li>- 접수대 하부의 높이는 충족하나 깊이가 0.05m 부족으로 검토 중</li> </ul>
경찰서22	- 2014년 7월 29일 설계 완료 및 2016년 12월경 준공 예정인 신축으로 인해, 현재 건물의 시설개선이 유보되어 있으며, 미충족 문항들은 이전 예정건물에 반영될 예정
경찰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칸 비상벨은 예산요청하여 2015년 1/4분기 이내에 설치할 예정</li> <li>- 민원실 출입구 통과유효폭 확보, 민원실 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접수대 적정 하부공간을 위해 예산요청하여 2015년 1/4분기 이내에 공사 및 개선할 예정</li> </ul>
경찰서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의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지 않도록 공사 예정</li> <li>-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li> </ul>
경찰서25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기관	주요 내용
제주	
법원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주출입구 양측에 기울기 1/12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li> <li>-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재판정 출입구 중앙에 기울기 1/8, 통과유효폭 1.17m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li> <li>- 전자소송 시는 전자문서로 송달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자 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신청하여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됨</li> </ul>
등기소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주출입구 양측에 기울기 1/12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li> <li>- 등기과 앞 화장실 세면대가 법적기준에 맞는 높이 및 하부공간이 되도록 보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완료</li> <li>- 등기업무접수대의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비상벨, 비상경보등 등 화재경보장치 설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확대문서 관련, 홈페이지 상단에 화면 확대메뉴가 구현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등에서 보이스바코드 문서가 일부 구현되어 있음</li> <li>- 조작버튼의 높이가 0.4m 이상, 1.2m 이하인 민원자동발매기 구매 가능 여부를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 한편, 민원자동발매기 화면이 터치식이라 점자 부착이 불가능함</li> <li>-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키보드의 TAB키를 이용해 메뉴이동 및 Enter 키를 이용한 선택이 가능. 또한, 인터넷등기소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경우 선택메뉴에 대해 스크린리더기를 통한 음성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li> </ul>
등기소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내 세면대를 법적기준에 맞게 보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등기업무접수대의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비상벨, 비상경보등 등 화재경보장치 설치 예정(2014년 11월중)</li> <li>- 확대문서 관련, 홈페이지 상단에 화면 확대메뉴가 구현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등에서 보이스바코드 문서가 일부 구현되어 있음</li> <li>- 조작버튼의 높이가 0.4m 이상, 1.2m 이하인 민원자동발매기 구매 가능 여부를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 한편, 민원자동발매기 화면이 터치식이라 점자 부착이 불가능함</li> <li>-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키보드의 TAB키를 이용해 메뉴이동 및 Enter 키를 이용한 선택이 가능. 또한, 인터넷등기소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경우 선택메뉴에 대해 스크린리더기를 통한 음성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청사 재건축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 완비할 계획</li> </ul>
경찰서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이 없으나, 출입구 상황실에 안내요원 배치로 해결</li> <li>-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으나, 필요 시 담당자가 1층으로 내려와 처리함으로 해결하겠음</li> <li>- 별관에는 화장실사용여부가 표시되는 잠금장치이며, 본관은 여단 이로 되어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봄</li> <li>- 별관의 화장실 출입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나, 충분한 공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다고 봄</li> <li>- 장애인전용 민원접수창구 운영 및 책상 설치 예정</li> <li>- 비상벨과 비상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음</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상급 지방청에서 개편 중임</li> </ul>
경찰서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출입문에 경사로 및 민원동, 복지회관 입구에 호출벨 설치</li> <li>-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민원실 장애인화장실은 법적 기준에 충족하나, 본관1층 장애인화장실은 미충족이므로 2015년 예산확보 시 개선 예정</li> <li>- 대변기 칸에 비상벨 설치 완료</li> <li>- 현재 민원실 건물 증축공사 중인데, 예산확보를 통해 민원실 입구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예정(2015년)</li> <li>-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내도우미 현관 배치</li> <li>- 본 서 여성청소년과에 화상대화시스템 설치 완료(2013년 10월)</li> </ul>
경찰서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2월중)</li> <li>-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이 규정에 맞도록 재설치 예정(2014년 12월중)</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및 본관 상황실과 별관 민원실에 연결 예정(2014년 12월중)</li> <li>- 본관, 별관 전체에 비상벨 및 비상경보등은 기 설치되어 있음</li> <li>- 사용빈도수가 높은 민원서류 10여종을 중심으로 점자문서를 우선 제작하여 비치할 예정(2014년 11월중)</li> </ul>
<b>광주</b>	
법원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약 4cm의 단차가 있어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개선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세면대 높이 변경,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은 화장실 환결 개선과 더불어 예산요청을 한 상태임</li> <li>- 민원접수대에 휠체어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개선 예정(2014년 11월중)</li> <li>- 전자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출력 및 확대복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민원실에 복사기 등을 구비하고 있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법원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장애인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종합민원실 민원접수대가 현재 깊이 0.20m인데 이를 0.45m로 조정 예정(2015년 12월 31일까지)</li> </ul>
법원13 · 등기소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면이 아닌 후면접근로의 경우 단차 없음</li> <li>- 민원접수대의 하부 깊이가 기준 미충족이나, 민원접수대 측면의 공간을 활용 및 종합민원실이나 등기과 내에 장애인전담직원을 지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함</li> </ul>
법원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동의 경우 경사가 심하여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신,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대체 가능함</li> <li>- 본관 화장실의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12월말까지)</li> <li>- 전체 장애인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1호법정 출구에 경사로 설치 예정(2015년 12월 31일까지)</li> <li>- 종합민원실 민원접수대가 현재 깊이 0.20m인데 이를 0.45m로 조정 예정(2015년 12월 31일까지)</li> </ul>
법원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2개 설치 및 그 높이는 0.4~1.2m가 되도록 설치 예정(2014년)</li> <li>- 재판정 내부 통로에 있는 장애물-국선보조인 석-을 재배치함으로써 통과유효폭 1.2m 이상으로 개선 완료</li> <li>-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의 깊이 0.45m 이상으로 개선 예정(2014년)</li> </ul>
등기소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는 방수공사 진행 중 임시철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 개선할 예정(2014년 10월중)</li> <li>-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2014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화장실 잠금장치가 고장난 상태이므로 개선 예정(2014년 10월중)</li> <li>- 세면대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는 2014년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깊이 변경은 2014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관련, 법원행정처에 예산 요청 예정</li> <li>- 2014년도 예산확보 후 화상전화기를 설치할 예정</li> </ul>
등기소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대변기 출입문 화장실사용여부 시각적 식별장치, 정상작동되는 대변기 칸 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설비나 표식 등이 구비된 업체 파악 후 개선 예정(2014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검찰청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제거 및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는 2015년 예산신청 후 개선 예정</li> <li>- 예산신청을 해서 세면대 높이 개선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예산신청을 해서 민원실 출입구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예정</li> </ul>
검찰청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완료</li> <li>- 그외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5년도에 예산신청 계획</li> <li>- 종합민원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5년도에 예산신청 계획</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서-향고장 등- 구비 완료</li> </ul>
검찰청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존재 관련, 2018년 청사 이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청사에서는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한편, 본관1층 민원실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을 통해 본관 출입이 가능하다고 봄</li> <li>- 신청사 이전 시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li> <li>- 화장실사용여부 식별장치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고장난 곳에 대해서는 즉시 수선 완료</li> <li>- 대변기 출입구 통과유효폭,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법적기준 미준수 관련, 신청사 이전 시 확보 예정</li> <li>- 각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0월중)</li> <li>- 민원실 출입구에 점자형 좌석배치도 설치 예정(2014년 10월중)</li> <li>-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깊이가 0.26m로 다소 미충족이나, 컴퓨터책상을 이용하도록 안내 또는 민원실직원이 서류작성을 도와줌으로써 해결하고 있음</li> </ul>
경찰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청은 2007년 7월 개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물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건축했음</li> <li>- 민원동 후문출입구 보도 높이를 2cm이하로 개선 완료</li> <li>- 시각장애인의 사전요구 시 확대출력 편의 제공으로 개선 완료</li> </ul>
경찰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은, 2016년까지 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건축설계사 입회 하에 법적기준 충족하도록 재시공 예정</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 점자형 좌석배치도는 축지도로서 기 존재</li> <li>-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미충족 관련, 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해 개선공사 완료 예정(2016년)</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프로그램-zomit- 설치 완료했으며,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의 점자본을 구비하였고, 기타 민원실의 민원서류일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점자본 비치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화면확대 등을 위함- 설치 및 기타서비스가 요구될 시 지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계 및 협조해서 해결하겠음</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서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은 엘리베이터가 운영 중이며, 민원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1층에 장애인전용 상담실 설치 운영 중임</li> <li>-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남녀구별용 점자표지판, 대변기 출입문 화장실사용여부 시각적 식별장치, 대변기 칸 비상벨을 구입 후 설치 예정</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구입 후 설치 예정</li> <li>- 현재 비상벨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li> </ul>
경찰서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세면대 하단높이 0.60m로 세면대를 상향 설치 예정</li> <li>- 남·여화장실 대변기 칸 각 1개씩에 직원호출벨(송신기), 점자판(비상벨) 설치하고 민원실에 비상등(수신기) 1개 설치 예정</li> <li>- 민원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좌석배치도) 설치 예정</li> <li>-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확대경(돋보기) 구입 및 비치 완료</li> </ul>
경찰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가 급해서 안전봉 설치가 요구되므로, 예산마련 시 설치</li> <li>- 세면대 높이 및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관련, 법적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예정</li> <li>* 건의사항: 모니터링 결과를 글로만 전달하지 말고 좋은 사례(best practice)의 사진 등을 첨부 및 세부적인 설명을 첨가하여 전달해 준다면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선 경찰서의 담당자들이 규정을 일일이 찾아 검토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모범사례같은 참고자료를 보내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개선이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다.</li> </ul>
경찰서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봄</li> <li>-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구분되도록 개선 완료</li> <li>- 별관 민원동에 청사안내용 점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완료</li> <li>- 휠체어, 확대경, 모사전송기는 이미 구입되어 있었으며, 보청기는 구입 비치 예정(2014년 10월중)</li> </ul>
경찰서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안내판 및 음성장치,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완료</li> </ul>
경찰서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충족 문항 관련, 2016년 청사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사에 반영 예정</li> </ul>

기관	주요 내용
경찰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 제거계획 수립하여 예산신청 완료. 실외는 시멘트, 철판 보강하고 실내는 단차부분 제거할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 및 예산신청 완료(2015년 상반기)</li> <li>-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년도가 엘리베이터 법적 설치 미대상으로 설치 안했음</li> <li>-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대변기 출입문 화장실사용여부 식별장치 설치 완료</li> <li>- 여자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확보공사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대변기 칸 비상벨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에 좌석배치도 점자판 설치 예정 및 민원실 구조개선을 통한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비상경보등은 설치 완료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안내벨은 설치 예정(2015년 상반기)</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은 인권위 모니터링은 충족했으나, 관리업체를 통해 보완 예정(2015년 상반기)</li> </ul>
경찰서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행 예정(2015년 12월)</li> <li>- 화장실 관련 미충족 문항 개선 예정(2016년 12월까지)</li> <li>- 민원실 출입구 부근 좌석배치도 점자판,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개선 예정(2017년 12월까지)</li> <li>- 비상벨과 비상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으나, 자체방호계획에 의거 대피조 편성 운영 중이며 연 2회 교육 및 훈련 실시 중임</li> <li>- 점자자료, 촉지도식안내판, 보청기 등 구매 및 이행 예정(2017년 12월까지)</li> </ul>

## 마) 사법기관 모니터링 총평

- 각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의 기본은 시설물への 접근이기 때문에 각 기관은 시설 접근성 관련 법적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법절차 진행 및 민원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도 반드시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정 및 재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 관련 미충족 기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된 민원서식을 구비한 사법기관이 적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의 다양한 서식은 개별 기관에서 구비하기 힘들고 상급기관에서 만들어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법원에 존재하는 민원서식 일체는 법원행정처에서, 각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관원서식 일체는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에서, 각 경찰서에 존재하는 민원서식 일체는 지방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등기서식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편의를 임의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등으로 된 등기서식을 7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지방경찰청에서는 각각의 분장사무 하에 있는 민원서식의 점자자료 및 보이스바코드 등의 구축에 관하여, 논의 및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관련 회신공문을 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에 관련된 재점검 및 회신공문 수렴이 필요하다.

- 법원행정처는 민원자동발매기에 관하여, “규격서 개정 및 2015년 하반기에 반영토록 검토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다만, 개선된 민원자동발매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에 관하여, “전자소송 상 음성지원은 2015년 상반기 반영 예정” 및 “우편송달물의 보이스바코드 부착이 60%가량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도 계속 보완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다만, 보이스바코드 적용 예정인 사건의 송달물(예: 민사(가사)신청 사건의 송달물 2014년 11월 적용 예정)들에 관하여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6 의료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가) 의료기관 모니터링 개요

- **주제:** 의료기관의 ‘시설 접근성’,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기간:** 2014년 6월 중
- **대상:** 1개 권역 12개소  
- 대전 권역
- **모니터링단:** 32명 (장애인: 29명, 90.6%)

### 나) 의료기관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진료실, 경보 및  
피난 설비, 화장실
- 의사소통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1) 주출입구 및 접근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유효거리란, ‘출입구 턱~출입구’ 또는 ‘경사로 상단 끝~출입구’ 사이의 거리)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문이 회전문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5-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6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6번 항목에서 점자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2)번(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	주출입구 단차 제거	9	3	0	75.0%
1-1	단차 있을 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3	0	9	100.0%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12	0	0	100.0%
3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12	0	0	100.0%
4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5	0	7	100.0%
5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8	4	0	66.7%
5-1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5	3	4	62.5%
6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5	7	0	41.7%
6-1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2	0	10	100.0%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12	0	0	100.0%

㉡ 분석 및 논의

- 시설 접근성의 기본은 주출입구를 통한 접근이다. 주출입구에 단차가 제

거되어 있는 기관의 비율은 75.0%로 다소 낮다. 하지만, 주출입구 단차가 있는 기관 중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기관의 비율이 100.0%이므로 보완이 가능하다.

- 한편, 경사각도가 급한 경사로의 경우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혼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경사로의 기울기도 중요하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 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엄격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경사로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기울기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의 비율이 66.7%(8개소)이며, 그 중에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기관은 62.5%(5개소)이다. 즉, 12개 의료기관 중 5개소만이 온전한 주출입구 점형블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점형유도블록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 주출입구 부근에서 다칠 위험성이 있다.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41.7%로 낮은 이행율을 보인다. 점자안내판 등의 유도·안내설비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주출입문이 회전문 외 다른 형태의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항목에서는 100.0%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 상,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용·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형블록 미설치 및 관리 부실, 점자안내판 등의 미설치로 미충족한 의료기관이 존재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복도 및 통로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8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 따라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의 장애물로 실질유효폭이 “1.2m” 이하로 감소하지 않고, 적정 유효폭 확보함	
9	의료기관이 2개층 이상의 시설물인 경우,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이 단일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6)번(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따라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8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12	0	0	100.0%
8-1	실질 통과유효폭 적정	11	1	0	91.7%
9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설치	12	0	0	100.0%
9-1	층간이동용 편의시설 정상적으로 작동	12	0	0	100.0%

### ㉢ 분석 및 논의

- 복도 및 통로 통과유효폭 적정, 층간이동용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항목에서는 100.0%의 이행율을 보인다.
- 다만,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인해 복도의 실질 통과유효폭이 0.8m 미만인 기관이 1개소 존재하나, 회신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다.

### (3) 접수대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0	1개 이상의 접수대의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1	1개 이상의 접수대의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따라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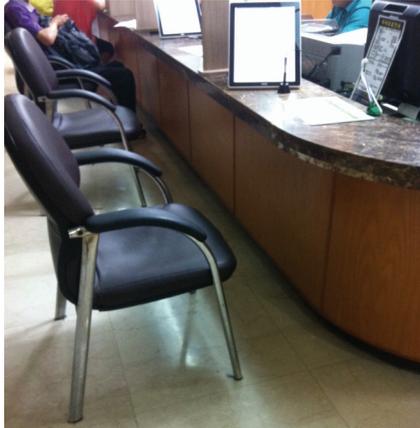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0	접수대 높이 적정	6	6	0	50.0%
11	접수대 하부공간 적정	2	10	0	16.7%

#### ㉢ 분석 및 논의

- 접수대 높이가 적정한 기관은 50.0%, 접수대 하부공간이 적정한 기관은 16.7%로 낮은 이행 비율을 보인다.
- 접수대의 높이나 하부공간이 적정하지 않으면 휠체어장애인 등이 의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은 접수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 관련 법적 세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㉔ 주요 사례



[그림36] 장애물(의자)이 놓여있는 접수대



[그림37] 너무 높은 접수대



[그림38] 하부공간이 없는 접수대

#### (4) 진료실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2	진료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진료실 출입구(문)와 진료대 사이의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진료실 출입구의 턱은 높이차가 제거됨 또는 “2c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따라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2	진료실 출입구 통과유효폭 적정	11	1	0	91.7%
13	진료실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적정	12	0	0	100.0%
14	진료실 출입구 단차 제거	12	0	0	100.0%

##### ㉢ 분석 및 논의

- 진료실 출입구 통과유효폭이 적정한 기관은 91.7%, 진료실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가 적정한 기관은 100.0%, 진료실 출입구의 단차가 제거된 기관은 100.0%로 전반적으로 높은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진료실 출입구 통과유효폭이 0.8m 미만인 기관이 1개소(8.3%) 존재한다. 해당 기관에서는 휠체어장애인 등이 진료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5) 경보 및 피난 설비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5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과 비상경보가 설치되어 있음 (비상벨과 비상경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2)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 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5	비상벨 및 비상경보 설치	8	4	0	66.7%

### ㉢ 분석 및 논의

- 비상벨 및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를 설치한 기관은 66.7%로 낮은 편이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는 비상벨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가 필요하다. 이 항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6) 화장실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1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7)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따라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6-1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목에 따라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17-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함	
18	대·소변기 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남자용 대변기와 소변기 및 여자용 대변기 각 1개 이상에 수평손잡이와 수직 손잡이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충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다목(소변기)에 따라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대변기 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대변기 칸 중 1개 이상이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시설로서 위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1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 이하”임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대변기 칸의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어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적정하게 보장함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목(대변기)에 따라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0.85m, 하단높이가 0.65m 이상”임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5	세면대의 하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목(세면대)에 따라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	X
26-1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비상시 인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16	장애인화장실 설치	12	0	0	100.0%
16-1	남녀구분된 장애인화장실	9	3	0	75.0%
17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6	6	0	50.0%
17-1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훼손 없이 온전함	6	0	6	100.0%
18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11	1	0	91.7%
19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적정	10	2	0	83.3%
20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적정	5	7	0	41.7%
21	대변기 높이 적정	11	1	0	91.7%
22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9	3	0	75.0%
23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정상적으로 작동	9	0	3	100.0%
24	세면대 높이 적정	3	9	0	25.0%
25	세면대 하부공간 적정	9	3	0	75.0%
26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6	6	0	50.0%
26-1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	5	1	6	83.3%

### ㉡ 분석 및 논의

-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100.0%이지만, 그 중에서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비율은 75.0%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기관은 50.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대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이 적정한 기관은 83.3%,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이 적정한 기관은 41.7%, 대변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는 기관은 75.0%이다. 상기 3개의 항목은, 휠체어장애인이 대변기 칸에 출입하고 대변기 이용을 위해 이동 및 회전하는 데 관련한 항목인데, 그 이행율이 낮은 편이다. 즉, 휠체어장애인의 대변기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진다.

- 다만, 대·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한 기관은 91.7%, 대변기 높이가 적절한 기관은 91.7%,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100.0%이므로 긍정적인 부분이다.
- 그러나, 23번 항목의 충족율은 잠금장치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기관 3개소(25.0%)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다.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은 “대변기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은 화장실사용여부 표시 설비 및 잠금장치를 둘 다 갖추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2종류의 설비에 대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 세면대 높이가 적절한 기관은 25.0%, 세면대 하부공간이 적절한 기관은 75.0%로 낮은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즉, 휠체어장애인의 세면대에 대한 접근·이용성이 떨어진다.
-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설비를 갖춘 기관 비율은 50.0%이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보장법에는 화장실 또는 대변기 칸 내부 비상벨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변기 칸은 폐쇄된 공간이며 위급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의 충족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향후 재점검 또는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7) 정당한 편의 제공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7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 기록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사전 요구가 없었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7-1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8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충족') (사전 요구가 없었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8-1	화상전화기 또는 보청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로 작동 가능함 (28번 항목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8-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제반 수단과 조치도 포함된다.
28-3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29	시·청각장애인이 진료 대기 시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음성알림 등을 설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의료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1)번(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9-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제반 수단과 조치도 포함된다.

㉞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27	점자·확대·보이스바코드 형식 의무기록 제공	2	10	0	16.7%
27-1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	5	5	2	50.0%
28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3	9	0	25.0%
28-1	화상전화기·보청기 정상적으로 작동	2	0	10	100.0%
28-2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8	1	3	88.9%
28-3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	4	5	3	44.4%
29	진료순서 확인용 전광판 및 음성알림 설치	10	2	0	83.3%
29-1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 제공	3	0	9	100.0%

㉟ 분석 및 논의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

무기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16.7%로 매우 낮다. 나머지 기관 중 사전요구 시 제공 가능한 기관도 50.0%뿐이다. 즉, 5개소(41.7%)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의무기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이다.

-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sup>26)</sup>에 따르면,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 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다. 의무기록은 “환자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이며, “법적문제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 그래서 본인 외에는 의무기록 열람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병원은 의무기록 당사자에게 그/녀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의무기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의무기록 발행 및 의무기록서식의 개발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보청기 중 1개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은 25.0%로 매우 낮다. 나머지 기관 중 사전요구 제공 가능한 기관도 44.4%뿐이다. 즉, 5개소(41.7%)는 청각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조인력(필담)이 제공되는 기관의 비율은 88.9%이다. 하지만, 수화의 문맥 구조가 일반 구어 또는 문어체의 문맥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 직원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필담을 나눌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병원 직원이 장애인의 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환자가 자신의 병증을 설명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기본이다. 그런데, 수화통역·화상전화기와 같은 수단이 없음으로 인해, 청각장애인 등이 자신의 병증을 설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면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이 사전 요구 시 7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장비 비치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26)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http://www.kmra.or.kr/grouppr/medical.asp>, 2014년 11월 23일.

## (8)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및 근거 법령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근거 법령
30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병원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31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등) 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료예약 기능을 이용 가능함 (웹사이트가 없거나 또는 온라인 예약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상동

### ㉡ 모니터링 결과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해당없음	이행 비율
30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 가능	6	5	1	54.5%
31	키보드만으로 진료예약기능 등 이용 가능	5	6	1	45.5%

### ㉢ 분석 및 논의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54.5%, 키보드만으로 진료예약기능이 이용 가능한 기관은 45.5%이다. 의료기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키보드만으로 메뉴 간 이동 및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 중 약 50%의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웹 접근성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sup>27)</sup>을 참조하였으며, 본 인권위 모니터링 시에는 최소한의 웹 접근성 기준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체크리스트 충족으로 나온 기관에 대해서도, “메뉴 간 이동의 순서가 비직관적”,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시스템 이용 시 메뉴 이름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의 내용이 들리지 않음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부재-” 등의 비판사항이 존재한다. 향후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기준을 이용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27)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의료기관 별 세부 결과 및 회신 내용

(1) 세부 결과

O: 충족, X: 미충족, \*: 데이터 없음, □(빈칸): 해당없음

문항 번호	대전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병원 8	병원 9	병원 10	병원 11	병원 12
1	O	O	O	X	O	O	O	O	X	O	O	X
1-1				O					O			O
2	O	O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O	O
4			O	O		O	O	O				
5	X	X	O	X	O	O	X	O	O	O	O	O
5-1			O		X	X		O	O	O	X	O
6	O	X	X	X	X	O	X	O	X	O	X	O
6-1								O		O		
7	O	O	O	O	O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O	O	O	O	O
8-1	O	O	O	O	O	O	O	O	O	O	O	X
9	O	O	O	O	O	O	O	O	O	O	O	O
9-1	O	O	O	O	O	O	O	O	O	O	O	O
10	X	O	O	O	X	X	O	O	X	X	X	O
11	X	X	O	X	X	X	X	X	X	X	X	O
12	O	O	O	O	O	O	X	O	O	O	O	O
13	O	O	O	O	O	O	O	O	O	O	O	O
14	O	O	O	O	O	O	O	O	O	O	O	O
15	O	O	X	X	O	X	O	O	X	O	O	O



16	O	O	O	O	O	O	O	O	O	O	O	O
16-1	X	O	X	O	O	X	O	O	O	O	O	O
17	X	X	O	X	O	X	O	X	X	O	O	O
17-1			O		O		O			O	O	O
18	O	O	O	O	O	O	O	O	X	O	O	O
19	O	O	X	O	X	O	O	O	O	O	O	O
20	X	O	X	X	X	O	X	X	X	O	O	O
21	O	O	O	O	O	O	O	O	O	X	O	O
22	X	O	O	O	O	O	O	X	X	O	O	O
23	O		O	O	O	O		O		O	O	O
24	X	X	X	O	X	X	O	O	X	X	X	X
25	X	O	X	O	O	X	O	O	O	O	O	O
26	O	O	X	X	X	O	O	X	O	X	X	O
26-1	O	O				O	X		O			O
27	X	X	X	X	X	X	X	O	X	X	X	O
27-1	X	O	X	O	O	X	X		O	O	X	
28	O	O	X	X	X	X	X	X	X	X	X	O
28-1	O											O
28-2			O	O	O	O	X	O	O	O	O	
28-3			X	X	O	X	X	O	O	X	O	
29	O	O	O	O	O	O	O	O	X	O	O	X
29-1									O	O		O
30	X	O	O	X	O	O	X	X		O	X	O
31	X	O	O	X	O	O	X	X		O	X	X

## (2) 회신 내용

-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온 회신 공문 중 주요내용 위주로 편집 수록함
- 기관이 회신 공문을 보냈으나 그 내용이 미흡 또는 모호해서 개선계획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1개소(7.1%), 하기와 같이 표기
  - ※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
-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1개소(7.1%), 하기와 같이 표기
  - ※ 미회신 기관

기관	주요 내용
대전	
병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제거 및 추가설치 예정(2014년 11월)</li> <li>- 기존에 장애인전용창구로 운영했던 의료협력센터 내에 장애인전용창구 안내문 설치 및 활용할 예정이며, 적정 높이로 개선 예정(2014년 11월)</li> <li>-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을 갖춘 세면대로 교체 예정(2014년 12월)</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1차작업-인식의 용이성 부분-은 완료(2014년 2월)했으며 2차작업-운용의 용이성 부분-은 진행 중임(2015년중 완료 예정). 한편, 진료예약기능 제공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li> </ul>
병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4개소 부근에 점형블록 설치 예정</li> <li>- 암센터 동측 주출입문에는 전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 중앙현관 및 서측 출입구에도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li> <li>- 암센터 화장실 전면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동 화장실에는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li> <li>- 시각장애인 의뢰자가 있는 경우, 본교 00캠퍼스에 있는 점자프린터를 이용해서 점자자료를 최대 7일 이내 제공 가능하며, 지역시립복지관에 있는 전환기계를 이용하여 음성파일을 최대 7일 이내 제공 가능함</li> </ul>

기관	주요 내용
병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및 그 전면에 점형 및 선형 유도블록 설치 예정(2015년)</li> <li>- 경보 및 피난설비를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예정(2015년)</li> <li>- 신관동 1층은 남자용, 2층은 여자용 장애인화장실로 구분할 예정(2014년)</li> <li>- 대변기 출입구 통과유효폭 0.94m,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너비 1.7m, 깊이 2.2m로 법적기준 충족한다고 봄</li> <li>-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하기 위해 재설치 예정(2014년)</li> <li>- 1층 원무부, 2층 기능발달작업치료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 예정</li> <li>- 2015년 하반기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때 의무기록 점자발급, 보이스코더 등의 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예정(2015년)</li> <li>- 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수화가능자를 섭외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예정(2014년)</li> </ul>
병원4	<p>※ 회신공문의 내용미비로 기재 못함</p>
병원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된 부분 개선 완료</li> <li>- 2015년 예산에 편성하여 주출입구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li> <li>- 2015년 예산에 편성하여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을 갖춘 접수대 설치 예정</li> <li>- 2015년 예산에 편성하여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예정</li> <li>- 정당한 편의제공 미충족 문항은 2015년 예산에 편성해 개선 예정</li> </ul>
병원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 출입구 및 1층 승강기 앞 훼손된 점형블록 교체 및 추가설치 완료(2014년 9월 30일)</li> <li>- 원무접수대 중 1곳 구조변경을 통하여 적정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할 예정(2015년 6월)</li> <li>- 1층 복도 및 공용화장실에 시각경보기 설치 예정(2016년 12월)</li> <li>- 1층 공용화장실 내에 남녀구분된 장애인용화장실 4곳 설치 완료</li> <li>-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앞 6곳에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5년 6월)</li> <li>- 1층 공용화장실 세면대 6곳을 재설치함으로써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 0.65m 이상으로 개선 완료 (코디네이터 주: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상단높이 0.85m 이상인데 법해석을 잘못된 듯함)</li> <li>- 현재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휴대용독서확대기, 탁상용독서확대기 각 1종을 보유 중임(2012년 11월 26일 구비 완료)</li> <li>- 청각장애인의 요구 시 107손말이음센터 연결을 통해서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 제공 가능. 한편, 음성증폭기를 구매해서 종합안내센터에 비치 예정(2015년)</li> </ul>

기관	주요 내용
병원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12월~2015년 1월)</li> <li>-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 예정(2015년 4~5월)</li> <li>- 적정 하부공간을 갖춘 접수대 제작 및 설치 예정(2015년 3~4월)</li> <li>- 진료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개선 예정(2015년 3~4월)</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을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으로 개선 예정(2015년 4~5월)</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확인 후 개선 예정(2014년 12월)</li> </ul>
병원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대를 병원 편의시설물 개선대상에 반영함으로써 적정 하부공간을 갖추도록 개선 예정</li> <li>-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예정(2014년 4/4분기 내)</li> <li>- 대변기 칸 유효바닥면적 확보 및 대변기 출입문 개폐방향 관련, 병원시설물 장기유지보수계획에 포함시켜 개선 예정</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4/4분기 내)</li> </ul>
병원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각도였던 경사로를 2단으로 완만하게 개선 완료</li> <li>- 비상벨과 비상경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호사 및 간병인을 통하여 위급상황 시 안내 및 이동할 수 있다고 봄</li> <li>- 화장실 칸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대변기 칸 법적기준에 맞는 유효바닥면적 확보, 세면대 적정 높이로 개선 완료</li> <li>- 대변기 출입구(문)을 자바라문-주름문-으로 교체 설치하겠음</li> </ul>
병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증축공사 시 원무과 접수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이 법적기준에 맞도록 제작 및 설치 예정(2015년 3~4월)</li> <li>- 2015년도 증축공사 시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대의 높이가 법적기준에 맞도록 재시공 예정(2015년 3~4월)</li> <li>-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11월)</li> </ul>
병원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점형블록 훼손된 부분 보수 중임(2014년 11월중 완료)</li> <li>-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관련, 201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증축 및 기타공사'에 반영 검토 중임</li> <li>- 진료협력센터 창구를 장애인전용접수대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li> <li>- 세면대 적정 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세면대를 순차적 보수 예정(2014년 12월중 완료)</li> <li>- 일부 화장실 내 비상벨이 훼손된 곳은 순차적 보수 중이며, 미설치된 곳은 설치 검토 중임</li> <li>- 점자책을 구비 완료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 요구 시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점자문서로 변환하여 제공 가능함</li> <li>- 대전수화통역센터지역본부와 연락체계 구축 예정(2014년 11월초)</li> <li>-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웹사이트 재구축 중임(2014년 11월 완료)</li> </ul>

기관	주요 내용
병원12	※ 미회신 기관

## 마) 의료기관 모니터링 총평

- 피모니터링 기관은 대전 권역 의료기관 12개소로서 종합병원 9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은 약 2210개소이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병원은 1073개소, 한방병원은 138개소, 요양병원은 687개소, 종합병원은 312개로서,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 총계는 2210개소이다.<sup>28)</sup>

예를 들어,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기관 모니터링의 ‘주출입구 단차 제거’ 비율이 75.0%이면, 실제 전국 의료기관의 ‘주출입구 단차 제거’ 비율은 신뢰도 90%에서 95.6%~54.4% 사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운 통계치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2210개소를 대상으로 신뢰도 90%에서 신뢰구간 길이를 10% 미만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표본의 개수를 203개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즉, 의료기관 203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후 ‘주출입구 단차 제거’ 비율이 75.0%로 나왔다면, 실제 전국 의료기관의 ‘주출입구 단차 제거’ 비율이 90%의 확률로 70.0%~80.0%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전국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다.

- 본 모니터링은 전국 의료기관 중 대전 권역 12개소에 한정된 모니터링이었으므로, 전국 의료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모니터링 시에는 신뢰도 및 신뢰구간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기관의 수(표본집단의 수)를 증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28) 한국도시통계 : 의료기관, 2009년도, 통계청

- 의료기관은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진료실 출입구’ 관련 항목의 이행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많이 왕래하는 의료기관의 특성 상, 장애인의 기본적인 접근·이용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접수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다. 특히 하부공간이 거의 없는 접수대가 많았다. 각 의료기관은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격을 갖춘 접수대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전요구 시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7개소(58.3%)이고, 청각장애인이 사전요구 시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7개소(58.3%)로서 약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은 본인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분쟁 시 근거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환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건강권을 위하여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병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은 시·청각장애인의 건강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  
들**  
-재점검-





## 7 광주·목포·전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 가) 광주·목포·전주 재점검 개요

#### (1) 목적

장애인 거주인구 약 1,000명 정도의 동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관 중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관(주민센터, 종합병원, 금융기관)의 시설접근성 및 해당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와 웹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개선을 유도하여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제

광주, 전주, 목포 시내 장애인 집중거주지역에 위치한 공공(주민센터), 의료(종합병원), 금융(00은행)기관의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등에 관한 모니터링

#### (3) 기간

2014. 6. 16. ~ 2014. 6. 27.

#### (4) 대상

장애인 거주인구 약 1,000명 정도의 동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 중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을 선정함

- ㉠ 공공기관(주민센터): 17개소
- ㉡ 의료기관(종합병원): 17개소
- ㉢ 금융기관(00은행): 9개소

## 나) 광주·목포·전주 재점검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공공기관 (주민센터)	○ 시설접근성	장애인의 주민센터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당한 편의제공	민원서식 발급 및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웹 접근성	장애인의 주민센터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상담 및 민원신청 등) 모니터링
의료기관 (종합병원)	○ 시설접근성	장애인의 종합병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당한 편의제공	진료 및 상담·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웹 접근성	장애인의 종합병원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진료 예약 등) 모니터링
금융기관 (00은행)	○ 시설접근성	장애인의 00은행(지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ATM기,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당한 편의제공	예금 입·출금, 금융상품 안내 및 상담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웹 접근성	장애인의 00은행 인터넷뱅킹 등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및 제4호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보장법」 제16조 (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보장법」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광주·목포·전주 공공기관(주민센터) 재점검 결과 및 분석

### (1) 시설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분류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이하) 및 경사로	지체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지체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지체
		점형블록 설치	시각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시각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지체, 시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전체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전체
		- 남녀 구분하여 설치	전체
		점형블럭 설치	시각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지체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지체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지체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지체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지체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나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지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지체
	민원 접수 대	접수대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지체
		접수대 적정 높이(0.7m이상 0.9m이하)	지체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지체

분류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시설 접근성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지체, 시각
		- 조작버튼 적정 높이(0.8m~1.2m)	지체
		- 점자표시버튼 및 음성지원	시각
		-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보조인력 제공	지체, 시각

### ㉔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시설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본 모니터링은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주민센터 이용시 시설 및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이 개선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음.</p> <p>② &lt;시설접근성&gt;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 민원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p> <p>③ 이하 내용은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④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p>⑤ 각 주민센터 명칭은 하기와 같이 익명으로 처리되었음.</p> <p>- 주민센터 1, 주민센터 2, ...</p>	
○ 주출입구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p>- 주민센터 5의 경우, 전면 유효거리가 1.2m 미만으로 휠체어 사용자, 특히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단독적인 접근 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함.</p> <p>※ 충족률 9%, 미충족률 91%</p>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p>- 주민센터 7을 제외한 10곳의 주민센터(91%)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중 어느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함.</p> <p>※ 충족률 45.5%, 미충족률 54.5%</p>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p>- 54.5%(6곳)의 주민센터의 주출입구 문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독적인 접근이 어려움.</p>

<p>○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p>	<p>※ 충족률 50%, 미충족률 50%</p> <p>- 주민센터의 91%(10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50%만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함.</p>
<p>○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p>	<p>※ 충족률 36.4%, 미충족률 63.6%</p> <p>-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주민센터 중 63.6%(5곳)가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변기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있음.</p> <p>- 일부 주민센터는 너비를 넓게 확보했지만, 깊이가 부족함. 휠체어 회전 공간은 좌변기 앞쪽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좌변기 접근 및 사용에 무리가 없음.</p>
<p>○ 민원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 이상)</p>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충족률 0%로 민원상담, 서류작성, 서류발급 등 휠체어 이용자의 민원 접수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주민센터 1	주민센터 2	주민센터 3	주민센터 4	주민센터 5	주민센터 6	주민센터 7	주민센터 8	주민센터 9	주민센터 10	주민센터 11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sup>29)</sup>	○	○	○	○	○	○	○	-	○	○	○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	○	○	○	×	×	○	○	○	○	○
	적정 통과유효폭 (0.8m 이상)	○	○	○	○	○	○	○	○	○	○	○
	점형블록 설치	○	○	○	○	×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	×	○	×	×	×	×	×	×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	○	○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	○	○	○	○	○	○	×	○	○

화 장 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	○	○	○
	- 남녀 구분하여 설치 <sup>30)</sup>	×	×	×	○	-	×	○	○	○	×	○
	점형블럭 설치	×	×	○	×	○	○	○	×	○	×	○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	○	○	○	○	×	○	×	×	○	○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	○	○	○	○	○	○	○	○	○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깊이 1.8m 이상)	○	×	×	○	×	×	×	×	×	○	○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이상)	○	×	×	×	×	×	×	○	×	×	×
복 도 및 통 행 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	○	×	○	○	○	○	○	○	○	○
	- 통과유효폭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sup>31)</sup>	×	×	-	○	×	○	×	×	×	×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sup>32)</sup>	-	-	×	○	×	-	-	-	-	-	-
민 원 접 수 대	접수대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	○	○	○	○	○	○	○	×	○	×
	접수대 적정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	○	○	○	○	○	○	×	○	○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이상)	×	×	×	×	×	×	×	×	×	×	×
민 원 자 동 발 매 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sup>33)</sup>	×	×	×	×	×	×	×	×	×	×	×
	- 조작버튼 적정 높이 (0.8m~1.2m)	-	-	-	-	-	-	-	-	-	-	-
	- 점자표시버튼 및 음성지원	-	-	-	-	-	-	-	-	-	-	-
	-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보조인력 제공	-	-	-	-	-	-	-	-	-	-	-

29)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3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녀 구분 항목에 ‘-’(해당없음) 표기.

31)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미만으로 장애물 유무와 상관없이 미충족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32)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3)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위 항목의 경우 모두 ‘-’(해당없음)

㉔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주민센터

시설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본 모니터링은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주민센터 이용시 시설 및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이 개선조치를 마련하는데 있음.</p> <p>② &lt;시설접근성&gt;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 민원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p> <p>③ 이하 내용은 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④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p>⑤ 각 주민센터 명칭은 하기와 같이 익명으로 처리되었음. - 주민센터 12, 주민센터 13, ...</p>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의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 모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중 어느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함.</p>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 모두 주출입구문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독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p>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p>※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전주시 : 충족률 50%, 미충족률 50%</p> <p>- 주민센터 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간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의 경우, 목포시는 2곳 모두 미설치되었고 전주시는 50%(2곳)가 미설치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음.</p>

음) 표기.

○ 민원접수대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p>※ 전주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민원접수대 전면에서 휠체어 회전 공간이 확보되어야 접근이 용이하지만, 전주시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의 경우 휠체어 회전공간이 매우 협소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약됨.</p>
○ 민원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 이상)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 모두 충족률 0%로 민원상담, 서류작성, 서류발급 등 휠체어 이용자의 민원 접수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p>
○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p>- 주민센터 15의 경우,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조작버튼이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자의 단독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점자표시버튼이나 음성지원 기능이 전무해 시각장애인의 단독적인 사용이 불가능 함.</p> <p>- 보조인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전주시			
		주민센터 12	주민센터 13	주민센터 14	주민센터 15	주민센터 16	주민센터 17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	○	○	○	×	○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	○	○	○	○	○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	○	○	○	○	○
	점형블록 설치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	×	×	×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	○	○	○	○
화장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남녀 구분하여 설치	×	×	○	×	×	×

실	점형블럭 설치	○	○	×	○	○	○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	○	○	○	×	○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	×	○	○	○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	○	○	×	×
	세면대 적정 높이 <sup>34)</sup>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	×	×	○	×	-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	○	○	○	○	○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	×	×	×	×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sup>35)</sup>	×	×	×	-	×	○
민원접수대	접수대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	○	×	×	×	×
	접수대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	○	○	○	○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	×	×	×	×	×
민원자동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sup>36)</sup>	×	×	×	×	×	○
	- 조작버튼 적정 높이(0.8m~1.2m)	-	-	-	-	-	×
	- 점자표시버튼 및 음성지원	-	-	-	-	-	×
	-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보조인력 제공	-	-	-	-	-	○

34)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5)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6)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하위 항목의 경우 모두 ‘-’(해당없음) 표기.

## (2)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행정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시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시각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청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청각

### ㉡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gt;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p> <p>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해당기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p> <p>③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④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72.7%, 미충족률 2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대상 11곳 주민센터 중 8곳이 편의제공을 하고 있었고, 이중 4곳은 확대경, 1곳은 확대문서, 1곳은 점자자료·확대경, 1곳은 확대문서·확대경, 1곳은 점자자료·확대문서·확대경을 제공함.</li> <li>- 확대경의 경우 8X(배율) 이상을 사용해야 함.</li> <li>- 편의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3곳의 경우, 1곳은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2곳은 보호자 등이 동반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li> <li>- 직원 및 보조인력의 대독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li> </ul>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72.7%, 미충족률 2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곳이 편의제공을 하고 있었고, 이중 4곳은 보청기, 3곳은 보청기·화상전화기, 1곳은 보청기·수화통역을 제공함.</li> <li>- 편의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3곳의 경우, 2곳은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1곳은 보호자 등이 동반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li> </ul>
--	--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주민센터 1	주민센터 2	주민센터 3	주민센터 4	주민센터 5	주민센터 6	주민센터 7	주민센터 8	주민센터 9	주민센터 10	주민센터 11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상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	×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sup>37)</sup>	-	○	-	-	-	-	○	-	-	○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sup>38)</sup>	-	○	-	-	-	-	-	-	-	○	○

37)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8) 청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㉔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주민센터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gt;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p> <p>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해당기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p> <p>③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p>※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전주시 : 충족률 50%, 미충족률 50%</p> <p>- 목포시의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 2곳 모두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직원 및 보조인력의 대독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p> <p>- 전주시의 모니터링 대상 주민센터 4곳 중 2곳만 확대문서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비용문제로 편의제공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는 2곳은 직원 및 보조인력을 통한 대체 서비스도 마련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p>
	<p>※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의 대상 주민센터 2곳 모두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p> <p>- 다만, 직원 및 보조인력의 필담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함.</p>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전주시				
	주 민 센 터 12	주 민 센 터 13	주 민 센 터 14	주 민 센 터 15	주 민 센 터 16	주 민 센 터 17	
	행정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을 제공함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sup>39)</sup>	○	○	×	-	×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sup>40)</sup>	○	○	-	-	-	-

39)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40) 청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3) 웹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웹 접근성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	시각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이 가능함	시각

#### ㉡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웹 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①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는 기본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비전자 정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음. ②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주민센터										
	주민센터 1	주민센터 2	주민센터 3	주민센터 4	주민센터 5	주민센터 6	주민센터 7	주민센터 8	주민센터 9	주민센터 10	주민센터 11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	○	○	○	○	○	○	○	○	○	○	○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이 가능함	○	○	○	○	○	○	○	○	×	○	○

㉔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주민센터

웹 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웹 접근성&gt;은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비전자 정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주민센터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p>○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p> <p>○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이 가능함</p>	<p>※ 목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의 대상 주민센터 2곳 모두 시각장애인의 웹 정보접근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음.</p> <p>-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도 불가능함.</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전주시			
	주민센터 12	주민센터 13	주민센터 14	주민센터 15	주민센터 16	주민센터 17
웹 접근성	×	×	○	○	○	○
	×	×	○	×	○	×

## 라) 광주·목포·전주 의료기관(종합병원) 재점검 결과 및 분석

### (1) 시설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분류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지체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지체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지체
		점형블록 설치	시각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시각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지체, 시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전체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전체
		- 남녀 구분하여 설치	전체
		점형블럭 설치	시각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지체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지체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지체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지체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지체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지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지체
	민원 접수대	접수대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지체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지체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각

㉔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종합병원

시설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시설접근성&gt;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p>※ <b>충족률 30%, 미충족률 70%</b></p> <p>- 모니터링 대상 중 7곳(70%)의 종합병원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함.</p>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p>※ <b>충족률 20%, 미충족률 80%</b></p> <p>- 대상 종합병원의 80%(8곳)의 주출입구 문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독적인 접근이 어려움.</p>
○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	<p>※ <b>충족률 20%, 미충족률 80%</b></p> <p>- 10곳의 종합병원 중 9곳(90%)의 종합병원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이 중 7곳(77.8)이 남·녀 구분하지 않은 화장실임. 남·녀가 구분된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적 요소임.</p>
○ 세면대 적정 높이(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p>※ <b>충족률 20%, 미충족률 80%</b></p> <p>- 대상 종합병원 80%(8곳)의 세면대 높이가 부적합해 휠체어 사용자의 세면대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함.</p>
○ 접수대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p>※ <b>충족률 70%, 미충족률 30%</b></p> <p>- 3곳(30%) 종합병원의 접수대 높이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휠체어 사용자의 접수대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p> <p>- 일부 병원은 (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 접수대를 설치했지만 이 접수대에 혈압측정기를 두거나 복사용지를 쌓아 두는 등, 장애인 접수대에서는 접수업무를 하지 않음.</p>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p>※ <b>충족률 20%, 미충족률 80%</b></p> <p>- 모니터링 대상 중 80%(8곳)의 종합병원이 접수대 하부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휠체어 사용자의 접수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p>
○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p>※ <b>충족률 50%, 미충족률 50%</b></p> <p>- 모니터링 대상 중 50%만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음성안내장치, 직원 및 보조인력)를 제공함.</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병 원 1	병 원 2	병 원 3	병 원 4	병 원 5	병 원 6	병 원 7	병 원 8	병 원 9	병 원 10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sup>41)</sup>	○	-	○	○	-	-	○	-	-	○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	○	○	○	○	○	○	○	○	○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	○	○	○	○	○	○	○	○	○
	점형블록 설치	○	○	×	○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	×	×	○	○	×	×	×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	×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	○	○	○	○	○	○	○	○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	○	○
	- 남녀 구분하여 설치 <sup>42)</sup>	×	○	×	○	○	○	-	○	○	○
	점형블럭 설치	○	○	×	○	○	○	×	○	○	○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	○	○	○	○	○	○	○	○	○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	○	○	○	○	○	○	○	○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	○	×	○	○	○	×	○	×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	×	×	×	×	×	×	○	×	×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	○	○	○	○	○	○	○	○	○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	×	×	×	×	×	×	×	×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	○	○	○	○	○	○	○	○	○
접수대	접수대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	×	○	○	×	○	○	×	○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	×	○	×	×	×	×	×	×	○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	×	×	○	○	×	○	○

41)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㉔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종합병원

시설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시설접근성&gt;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p>※ 목포시 : 충족률 33%, 미충족률 66.7%</p> <p>※ 전주시 : 충족률 25%, 미충족률 75%</p> <p>- 대상기관 중 목포시 66.7%(2곳), 전주시 75%(3곳)의 종합병원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함.</p>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의 대상기관 모두 주출입구 문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독적인 접근이 어려거나 불가능함.</p>
○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	<p>※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전주시 : 충족률 25%, 미충족률 75%</p> <p>- 목포시 대상기관 3곳은 모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지만, 남·녀 구분하지 않은 화장실임. 남·녀가 구분된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적 요소임.</p> <p>- 전주시는 1곳을 제외한 3곳(75%)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이중 2곳은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p>
○ 화장실 주출입구 전면 점형블록 설치	<p>※ 전주시 : 충족률 25%, 미충족률 75%</p> <p>- 전주시의 대상기관 중 75%에 해당하는 3곳의 종합병원이 화장실 주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위생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p>
○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p>※ 전주시 : 충족률 25%, 미충족률 75%</p> <p>- 전주시 대상기관 중 3곳(75%)의 종합병원이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및 이동약자의 위생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함.</p>

42)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녀 구분 항목에 ‘-’(해당없음) 표기.

○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p>※ 전주시 : 충족률 25%, 미충족률 75%</p> <p>- 전주시 대상기관 중 3곳(75%)의 종합병원이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변기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있음.</p>
○ 세면대 적정 높이(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 대상기관 모두 세면대 적정 높이가 부적합해 휠체어 사용자의 세면대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함.</p>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목포시, 전주시의 대상기관 모두 접수대 하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접수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목포시 2곳(66.7%), 전주시 4곳(100%)은 접수대 상단 높이도 부적합함.</p>
○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p>※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전주시 : 충족률 50%, 미충족률 50%</p> <p>- 전주시 2곳을 제외한 목포시, 전주시 대상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음성안내장치, 직원 및 보조인력)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종합병원			전주시 종합병원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sup>43)</sup>	-	○	○	○	○	○	○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	○	○	○	○	○	○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	○	○	○	○	○	○
	점형블록 설치	×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	×	×	×	○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	○	○	○	○	○

43)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종합병원			전주시 종합병원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 남녀 구분하여 설치 <sup>44)</sup>	○	○	○	-	×	○	○
	점형블럭 설치	○	○	×	×	×	×	○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	○	○	○	○	○	○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	○	×	○	×	×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	○	×	○	×	×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	×	×	×	×	×	×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	○	○	○	○	○	○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 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	×	×	×	×	×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	○	○	○	○	○	○
접수대	접수대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	○	×	×	×	×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	×	×	×	×	×	×
	시각장애인이 진료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	○	×	○	×

44)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녀 구분 항목에 ‘-’(해당없음) 표기.

## (2)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 유형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료기록 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시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시각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청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청각

### ㉡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종합병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gt;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p> <p>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해당기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p> <p>③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료기록 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10%, 미충족률 90%</p> <p>- 모니터링 대상 중 9곳(90%)이 비용 문제 및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p> <p>- 이중 1곳을 제외한 8곳은 직원 및 보조인력의 대독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개인 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p>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10%, 미충족률 90%</p> <p>- 모니터링 대상 중 9곳(90%)이 비용 문제, 요청 및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p> <p>- 이중 2곳은 필담 등의 대체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음.</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병 원 1	병 원 2	병 원 3	병 원 4	병 원 5	병 원 6	병 원 7	병 원 8	병 원 9	병 원 10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료기록 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sup>45)</sup>	○	○	×	○	○	-	○	○	○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sup>46)</sup>	○	○	○	×	×	○	-	○	○	○

㉔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종합병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gt;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p> <p>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해당기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p> <p>③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④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료기록 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p>※ <b>충족률 0%, 미충족률 100%</b></p> <p>- 목포시, 전주시 대상기관 모두 비용 문제, 요청 및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p> <p>- 직원 및 보조인력의 대독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p>

45)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46) 청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목포시 : 충족률 0%, 미충족률 100%
	※ 전주시 : 충족률 50%, 미충족률 50%

- 목포시 대상기관은 100%(3곳), 전주시는 50%(2곳)가 비용 문제 및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종합병원			전주시 종합병원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진료기록 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	○	○	○	○	○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sup>47)</sup>	○	○	○	○	-	-	○

### (3) 웹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웹 접근성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	시각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이 가능함	시각

47) 청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㉔ 점검 결과1\_광주광역시 종합병원

웹 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웹 접근성&gt;은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진료예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비전자 정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p>○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p> <p>○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이 가능함</p>	<p>-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충족률 60%)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상 진료예약은 매우 미흡(충족률 37.5%)함.</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병원 8	병원 9	병원 10
	<p>웹 접근성</p> <p>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p> <p>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이 가능함<sup>48)</sup></p>	×	○	×	×	×	○	○	○	○
	×	○	×	○	×	×	×	-	-	○

㉕ 점검 결과2\_목포시, 전주시 종합병원

웹 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웹 접근성&gt;은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진료예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비전자 정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종합병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48) 홈페이지에 진료예약 서비스가 없거나, 폐지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li> <li>○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이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와 전주시 대상기관 모두 시각장애인의 웹 정보접근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음.</li> <li>- 키보드(tab키,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도 불가능함.</li> </ul>
--	---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목포시 종합병원			전주시 종합병원			
		병원 1	병원 2	병원 3	병원 4	병원 5	병원 6	병원 7
웹 접근성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	×	×	×	×	×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이 가능함	×	×	×	×	×	×	×

## 마) 광주·목포·전주 금융기관(00은행) 재점검 결과 및 분석

### (1) 시설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분류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지체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지체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지체
		점형블록 설치	시각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시각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지체, 시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전체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전체
		- 남녀 구분하여 설치	전체
		점형블럭 설치	시각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지체
		대변기칸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지체
		대변기칸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지체
		세면대 적정 높이 (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지체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지체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지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지체
	은행 창구	창구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지체
		창구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지체
		시각장애인이 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각

시설 접근성	ATM	ATM기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가로 1.4m, 세로 1.4m 이상)	지체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ATM기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 이상)	지체
		ATM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시각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내 설치	지체, 시각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깊이는 전면에서 부터 0.45m 이내 설치	지체, 시각
		LCD패널이 휠체어사용자도 보기 편하도록 설치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일반버튼(점자포함) 방식을 제공	시각
		시각장애인들이 이어폰을 꽂아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단자 부 분이 막혀있지 않음.	시각

### ㉞ 점검 결과

시설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시설접근성&gt;은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p> <p>② 이하 내용은 미충족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요약임.</p> <p>③ 광주은행 각 지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주출입구 전면 점형블록 설치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p>- 주출입구 0.3m 전면에 설치해야하는 점형블록의 설치률이 0%이고,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중 한 개 이상 설치한 곳이 전무해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함.</p>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p>※ 충족률 22.2%, 미충족률 77.8%</p> <p>-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률이 22.2%(2곳)에 그쳐 시설 접근권을 제한함.</p>

<p>○ 장애인화장실 설치</p>	<p>※ <b>충족률 33.3%, 미충족률 66.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곳 중 3곳(33.3%)에만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1곳에만 남·녀를 구분하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위생시설 이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함.</li> <li>- 대변기간 출입문 통과유효폭 및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항목의 충족률(각각 11.1%, 33.3%, 22.2%)도 심각하게 낮아,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함.</li> </ul>
<p>○ 화장실 주출입구 전면 점형블록 설치</p>	<p>※ <b>충족률 22.2%, 미충족률 77.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주출입구 0.3m 전면에 설치해야 하는 점형블록 설치률이 22.2%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제한함.</li> </ul>
<p>○ 세면대 적정 높이(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p>	<p>※ <b>충족률 0%, 미충족률 1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장애인의 세면대 사용을 위한 고려가 전무함.</li> </ul>
<p>○ 은행 창구 하부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0.45 이상)</p>	<p>※ <b>충족률 0%, 미충족률 1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하단이 창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휠체어사용자의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함.</li> <li>- 상단높이도 너무 높아(77.8%) 은행창구 이용이 매우 어려움.</li> </ul>
<p>○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ATM기 하부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0.45 이상)</p>	<p>※ <b>충족률 0%, 미충족률 1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M기 하부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사용자의 ATM기 이용이 매우 어려움.</li> <li>- 하부 공간 미확보로 인해 휠체어사용자의 ATM기 LCD패널이 잘 보이지 않음.</li> </ul>
<p>○ ATM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p>	<p>※ <b>충족률 0%, 미충족률 1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M기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100%)로 시각장애인의 ATM기로의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li> </ul>
<p>○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일반버튼(점자포함) 방식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은행에서 사용하는 ATM기 종류 중 한 기종의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계좌번호 등을 금액으로 읽음.</li> <li>- 예 : 11-11-11 -&gt; 십일만천백십일원</li> </ul>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00은행 지점								
		은 행 1	은 행 2	은 행 3	은 행 4	은 행 5	은 행 6	은 행 7	은 행 8	은 행 9
주 출 입 구	주출입구 단차제거(2cm 이하) 및 경사로 <sup>49)</sup>	×	○	○	○	-	○	×	-	×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	×	×	○	○	○	○	○	○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	○	○	○	○	○	○	○	○
	점형블록 설치	×	×	×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	×	×	×	×	×	×	×
	무거운 출입문으로 인해 출입 어려움	○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	○	×	×	×	×	○	×
화 장 실	장애인화장실 설치	×	×	×	×	×	○	○	○	×
	- 남녀 구분하여 설치 <sup>50)</sup>	-	-	-	-	-	×	○	○	-
	점형블럭 설치	×	×	×	×	×	×	○	○	×
	대변기간 출입문의 통과유효폭(0.8m)	×	×	×	×	×	×	○	×	×
	대변기간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	×	×	×	○	○	○	×
	대변기간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	×	×	×	×	○	○	×
	세면대 적정 높이(상단 0.85m, 하단 0.65m 이상)	×	×	×	×	×	×	×	×	×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	○	○	×	○	○	○	○	○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해 통과 어려움 <sup>51)</sup>	○	×	×	-	×	×	○	×	×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sup>52)</sup>	-	-	-	-	-	-	-	-	-
은행 창구	창구 적정 높이(0.7m 이상, 0.9m 이하)	×	○	×	○	×	×	×	×	×
	창구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	×	×	×	×	×	×	×	×
	시각장애인이 순서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	○	○	×	×	○	○

49)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5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녀 구분 항목에 ‘-’(해당없음) 표기.

51)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이 1.2m 미만으로 장애물 유무와 상관없이 미충족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52) 금융 서비스가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00은행 지점								
		은 행 1	은 행 2	은 행 3	은 행 4	은 행 5	은 행 6	은 행 7	은 행 8	은 행 9
ATM 기	ATM기 전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가로 1.4m, 세로 1.4m 이상)	○	○	○	○	○	○	○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ATM기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 이상)	×	×	×	×	×	×	×	×	×
	ATM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	×	×	×	×	×	×	×	×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내 설치	○	○	○	○	○	○	○	○	○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깊이는 전면에서부터 0.45m 이내 설치	○	○	×	×	○	×	○	○	○
	LCD패널이 휠체어사용자도 보기 편하도록 설치	○	○	×	○	×	○	○	×	×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일반버튼(점자포함) 방식을 제공	○	○	○	○	○	○	○	○	○
	시각장애인들이 이어폰을 꽂아 들을 수 있 도록 이어폰 단자 부분이 막혀있지 않음.	○	○	○	○	○	○	○	○	○

## (2)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입·출금, 대출, 카드발급, 금융상품 가입 등의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 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시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시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함	시각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 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청각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청각

㉔ 점검 결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gt;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함.</p> <p>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로 해당기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p> <p>③ 광주은행 각 지점 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입·출금, 대출, 카드발급, 금융상품 가입 등의 필요한 서식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11.1%, 미충족률 8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대상 9곳 중 8곳(88.9%)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li> <li>-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본점 차원에서 편의제공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 직원 및 보조인력의 대독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li> </ul>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p>※ 충족률 0%, 미충족률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없음, 필요성 못 느낌, 매뉴얼 없음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절차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함.</li> <li>- 본점 차원에서 편의제공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00은행 지점								
	은행 1	은행 2	은행 3	은행 4	은행 5	은행 6	은행 7	은행 8	은행 9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을 제공함 <sup>53)</sup>	○	○	○	○	-	○	○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함	×	×	○	○	○	○	○	○	○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화상전화 등 기기 및 수화통역 등 제공함	×	×	×	×	×	×	×	×	×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	○	○	○	○	○	○	○	○

### (3) 웹 접근성

#### ㉠ 체크리스트 내용

모니터링 항목		장애유형
웹 접근성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	시각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은행업무 처리(회원가입, 로그인, 예금조회, 예금 이체 등의 서비스) 가능	시각

#### ㉡ 점검 결과

웹 접근성에 대한 결과 분석
<p>① &lt;웹 접근성&gt;은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제공되는 서비스(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이 미충족되었을 경우, 비전자 정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함으로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음.</p> <p>② 광주은행 각 지점별 점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p>

‘○’ : 충족, ‘×’ : 미충족, ‘-’ : 해당없음

모니터링 항목		00은행 지점								
		은행 1	은행 2	은행 3	은행 4	은행 5	은행 6	은행 7	은행 8	은행 9
웹 접근성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확인 가능	○	○	○	○	○	○	○	○	○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은행업무 처리(회원가입, 로그인, 예금조회, 예금 이체 등의 서비스) 가능	○	○	○	○	○	○	○	○	○

53)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8 대구·경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 가) 대구·경북 재점검 개요

#### (1) 목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모니터링 대상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제

과거 모니터링 분야에서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고, △과거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있었거나 추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규모, 공공성, 지역, 모니터링 연도 등을 고려함. 당시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재점검을 실시하되, 변화된 내용 평가

-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대출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당한 편의제공 : 팜플렛 등의 제공에 있어 점자 및 확대문자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의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정당한 편의로서의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웹 사이트에서의 정보 접근성

#### (3) 기간

2014년 6월 16일 ~ 7월 2일까지

#### (4) 대상

##### ㉠ 모니터링 대상 선정

이행 점검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한 지역 중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기관을 중심으로 전후 비교에 중점

##### ㉡ 모니터링 대상 기관

이행 점검 3개 지역, 28기관

- 대구지역 : 16기관 (주민센터 8, 금융기관 4, 의료기관 4)
- 경주지역 : 8기관 (주민센터 4, 금융기관 2, 의료기관 2)
- 안동지역 : 4기관 (의료기관 4)

구분	대상 기관			이전 모니터링 연도
공공기관 (주민센터 12)	8개소		대구	2011
	4개소		경주	
금융기관 (은행지점 6)	4개소		대구	2011
	2개소		경주	
의료기관 (종합병원 6) (한방병원 2) (요양병원 2)	종합병원	3개소	대구	2012
		2개소	경주	
		1개소	안동	
	한방병원	1개소	대구	
		1개소	안동	
	요양병원	2개소	안동	

#### (5) 모니터링단

총 26명

- 장애 16명(뇌병변3, 지체6, 시각5, 청각2), 비장애 10명
- 장애당사자 비율 59.3%

## 나) 대구·경북 재점검 결과 및 분석

### (1) 주민센터 이행점검 결과(대구 8개소, 경주 4개소)

2011년 모니터링대상 주민센터(대구, 경북 총 69곳) 중 2014년 현장모니터링 단원의 거주지역 주민센터 12곳을 선정 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 ㉠ 2014 공공기관(주민센터) 체크리스트 항목별 충족비율(괄호 안은 2011년)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비율(%)
건물주출입구 및 접근로	주출입구 턱 높이차 제거 여부	1 (1)	11 (11)	8.3 (8.3)
	_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11 (11)	0 (0)	100 (100)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11 (12)	1 (0)	91.7 (100)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11 (11)	1 (1)	91.7 (91.7)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 설치 여부	12 (12)	0 (0)	100 (100)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여부	7 (6)	5 (6)	58.3 (50)
복도 및 통로 등	복도 또는 통행로 유효폭 1.2m 이상	10 (11)	2 (1)	83.3 (91.7)
	2층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1 (1)	1층 11 (1층 11)	100 (100)
민원접수대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 충족한 활동공간 확보 여부	11 (11)	1 (1)	91.7 (91.7)
	민원접수대 높이 휠체어 사용자 충족 여부 (0.7m 이상 0.9m 이하)	10 (10)	2 (2)	83.3 (83.3)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7 (5)	5 (7)	58.3 (41.7)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비율(%)
민원 자동 발매기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여부	1 (0)	11 (12)	8.3 (0)
	조작버튼 높이 0.4m 이상 1.2m 이하	1	-	100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스크린터치방식이 아닌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1	-	100
	보조인력 제공 여부	1	-	100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7 (7)	5 (5)	58.3 (58.3)
	_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5(직원) (5)	-	100 (100)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청기 또는 수화통역 등의 제공 여부	10 (7)	2 (5)	83.3 (58.3)
	_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직원) (3)	-	100 (100)
웹사이트 접근성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게시 정보들을 보이스리더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 (5)	- (3)	100 (62.5)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홈페이지 동영상, 음성자료 없음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 가능 여부	12 (5)	- (3)	100 (62.5)

※ 웹사이트 접근성 2011년도 경주(4군데) 자료 없음.

### ㉠ 점검내역별 결과

#### • 시설접근성

주출입구 및 접근로의 시설접근성은 이전 모니터링 시에 대부분 충족되었고, 이번 모니터링에도 큰 변화없음.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 장치)은 1개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되었지만, 모니

터링 대상기관 12군데 중 7군데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003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음성안내장치는 사용법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으며, 경주 00동 주민센터의 음성유도신호장치는 이전 모니터링때와 마찬가지로 고장상태였음.

001동 주민센터 주출입 계단 앞 블라드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

주출입구 점형블럭의 색상이 회색이거나 색상이 바랜 곳이 있었음.

복도 및 통로, 민원접수대 이전 모니터링과 변화없었으며, 비상정보벨과 점멸형태의 경광등이 함께 설치돼 있는 곳은 2개 주민센터 였음.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 된 곳은 2개 주민센터이고, 4개 주민센터의 화장실은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

장애인 주차구역은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3개 주민센터는 바닥면 표시 식별이 어렵고, 바닥면이 파손되거나, 바닥재질이 휠체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각각 1개 기관이 있었음.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예산상의 문제로 시설접근성에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장애인의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음.

#### • **정당한 편의제공**

2011년 모니터링 이후 7개 기관이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제공’이 10개 기관이(58.3 > 83.3%) 으로 증가하였음.

보이스바코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경주 00동의 민원서식점자자료의 구비돼있는 점자자료는 구청에서 배포한 소식지로 실제 민원업무와 관련이 없었으며, 민원자동발매기는 주로 구청이나 상급기관에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경주시 00동 주민센터 한곳에만 설치 돼있었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기등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고 주로 인적 서비스에 의존하여 현실적으로 장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민원업무를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 **웹접근성**

대구의 경우 주민센터가 속해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동주민센터’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경주는 경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음.

대상 기관 웹페이지 모두 키보드 사용만으로 게시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 처리가 되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지난 모니터링 때 보다 개선되었음.

동영상이나 음성자료등은 주민센터 웹페이지에 게시 된 것이 없었음.

## (2) 금융기관(은행지점) 이행점검 결과(대구 4, 경주2)

2011년 모니터링 대상 은행지점(신한, 국민, 대구, 하나, 우리은행 38개 지점) 중 대구지역은 국민, 대구, 하나, 우리은행 지점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접근성이 좋은 곳(4군데)을 선정하였고, 경주지역은 신한, 대구은행 지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점(2군데)을 정하여 모니터링 진행하였음.

### ㉠ 2014 금융기관(은행지점) 체크리스트 항목별 충족비율(괄호 안은 2011년)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비율(%)
금융기관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턱 낮추기(2cm 이하)	2 (2)	4 (4)	33.3 (33.3)
	_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4 (3)	0 (1)	100 (75)
	건물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6 (6)	0 (0)	100 (100)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4 (0)	2 (6)	66.7 (0)
	주출입문 회전문인 경우 자동/여닫이/미닫이문 설치	모두 해당없음(자동문 아님)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	0 (0)	6 (6)	0 (0)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6 (6)	0 (0)	100 (100)
	층간이동 편의시설 설치	1 (1)	1층 5 (1층 5)	100 (100)
	접수대 높이 (70cm 이상 90cm 이하)	5 (3)	1 (3)	83.3 (5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높이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	4 (3)	2 (3)	66.7 (50)

체크리스트 항목		총족	미총족	비율(%)
자동화 기기(ATM) 접근성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가로1.4m, 세로1.4m)	5 (5)	1 (1)	83.3 (83.3)
	기기 하부 방해물 없이 공간 확보	0 (0)	6 (6)	0 (0)
	기기 30cm 전면 점형블록 또는 다른질감의 바닥재 설치	0 (0)	6 (6)	0 (0)
	각종 투입구(카드, 통장, 현금입출구) 바닥에서 높이 1.2m 이내	6 (6)	0 (0)	100 (100)
	각종 투입구(카드, 통장, 현금입출구) 전면에서 깊이 0.45m 이내	3 (6)	3 (0)	50 (100)
	LCD 패널의 기울기, 높이 등이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정하게 설치됨	6 (1)	0 (5)	100 (16.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일반버튼(점자버튼) 설치	6 (4)	0 (2)	100 (66.7)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순서 인지 서비스 제공	0 (0)	6 (6)	0 (0)
	수화통역/화상전화기/보청기 제공	1 (0)	5 (6)	16.7 (0)
	점자자료/확대경/확대문서 제공	0 (0)	6 (6)	0 (0)
	점자보안카드 발급	6 (5)	0 (1)	100 (83.3)
	시각장애인 인터넷 뱅킹 업무처리	6 (6)	0 (0)	100 (100)
기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다른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6 (6)	0 (0)	100 (100)

## ㉞ 점검내역별 결과

### • 시설접근성

지난 모니터링과 비교하여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럭설치와 창구 접수대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출입구 점형블럭은 6개 기관 모두 미설치 상태에서 4개 기관에 새로

설치되었고, 창구 접수대의 휠체어 사용자 적정높이 및 정적 하부공간을 확보한 기관이 각각 2군데, 1군데씩 증가하였음.

00은행 대구00지점의 경우 지난 모니터링 당시 없었던 경사로와 수직휠체어 리프트, 출입구 부근 점형블록을 모두 설치하는 등 주출입구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음.

모니터링 항목 중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유도장치, 점형블럭 설치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개선되지 않았음.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은 00은행대구지점(남녀분리됨), 00은행 대구지점이었고, 나머지 기관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기존 화장실의 입구가 좁거나, 점형블럭 미설치로 장애인 접근성은 많이 떨어짐.

은행지점의 담당자들은 지점들이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함.

ATM기기는 LCD 패널 기울기 및 위치의 적절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장애인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기기 하부공간의 부족과 각종 투입구의 깊이 등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웹접근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직원 등의 인적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은 창구업무를 위해 대기할 때 본인의 순서를 알기위한 알림수단이 없음

2013년 금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으로 모든 은행사의 웹페이지에서 금융거래가능함.

각 은행사마다 점자 보안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해당 지점에 상시 비치된 것이 아니라 미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음. 각 은행마다 전자금융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보급하고 있는데 비밀번호생성기는 음성안내가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

### (3) 의료기관 이행점검 결과(종합병원 6, 한방병원 2, 요양병원 2)

2012(33개 기관), 2013년(46개 기관) 두차례 실시한 모니터링 기관 중 2012년 대상기관 10곳(종합병원 6, 한방병원 2, 요양병원 2)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2014 의료기관 체크리스트 항목별 충족비율(괄호 안은 2012년)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미충족	비율(%)
주출입구	단차제거(경사로 설치 등)	10 (10)	0 (0)	100 (1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0 (10)	0 (0)	100 (100)
	적정 통과 유효폭(0.8m 이상)	10 (10)	0 (0)	100 (100)
	적정 문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 재질 x)	9 (8)	1 (2)	90 (80)
	점형블럭 설치	8 (5)	2 (5)	80 (5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3 (2)	7 (8)	30 (20)
	_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3 (2)	0 (0)	100 (1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8 (9)	2 (1)	80 (90)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9 (9)	1 (1)	90 (90)
	복도 또는 통행로 장애물 여부	10 (8)	0 (2)	100 (8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 (1)	1층 8 (1층 9)	100 (1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0.7m 이상 0.9m 이하)	5 (3)	5 (7)	50 (30)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45m 이상)	4 (3)	6 (7)	40 (30)
정당한 편의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제공	4 (3)	6 (7)	40 (30)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5 (3)	5 (7)	50 (30)
웹사이트 정보접근 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상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	4 (1)	6 (9)	40 (10)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2 (0)	8 (10)	20 (0)

## ㉔ 점검내역별 결과

### • 시설접근성

2012년 모니터링 이후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럭 설치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음. 3개 병원에 추가로 설치되어 10개 기관 중 8곳이 충족 되었으며, 특히 대구 구병원은 철재은색 점형블럭을 노란색으로 재시공하였음.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2개 기관은 추가로 설치되었지만 00대학교 의료원은 리모델링 공사 후 재설치 하지 않았음.

00의료원, 000병원은 주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문을 열고 닫기 힘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음.

00의료원의 경우 병원 입구에서부터 건물 주출입구까지 유도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경사로의 넓이가 넓고 기울기도 완만하였음.

복도 및 통행로는 이전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대상기관 대부분에서 적정 유효폭을 유지 하고 있었지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수대의 적정 높이, 하부공간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였음.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 된 병원은 6곳으로, 출입구 앞 점형블럭, 출입구 통과 적정유효폭, 화장실 내부 손잡이(수직,수평)설치, 잠금장치 정상작동, 적정 대변기 높이· 세면대 높이·하부공간 등은 대부분 충족되었지만 화장실 대변기칸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곳이 3군데로 실질적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장애인 화장실은 2012년 모니터링 당시 미점검)

### • 정당한 편의제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은 이전 모니터링보다 2개 기관이 늘어 5개 병원에서만 제공 가능 하였음.

병원 담당자는 장애인은 주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 • 웹접근성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키보드사용만으로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은 3개 기관이 늘어 4군데 병원에서 가능하며 키보드만으로 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한 곳은 2군데에 불과했음.

㉔ 2012년 개선 계획 회신내용 이행여부

대상기관		회신내용	이행여부
대구	00대학교 의료원	리모델링관계로 임시 접수데스크를 2013년 6월 이내 재배치 예정	장애인 전용 접수대 설치하였지만 기존 접수대에 안내판(‘장애우’표기)만 올려놓음
		웹사이트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2012.12.31.까지)	웹접근성 인증받음
경주	00대 0000병원	- 2013년 6월까지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설치	주출입구 안쪽 점형블럭만 설치함
		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 장애인전용접수대 마련	장애인접수대 미설치
	00대 00병원	2012년 11월말까지 점형블럭 설치	미설치
		2013년 12월말까지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미설치
		2012년 12월말까지 장애인전용 접수대 설치	설치
2013년 6월말까지 시각장애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협약을 통하여 의료기록관련 편의제공 실시	실시하지 않음.		
안동	안동00 00병원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설치
		향후 점자안내판과 장애인전용접수대 설치 예정	미설치
		의료기록 관련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함으로 예산 수립 후 구입 하겠음	미이행
		원무과 직원 수화교육 실시 예정	수화통역 제공 안됨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의뢰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사용 불가능함
	00안제 00병원	기 설치된 점자블럭의 일부분 탈락으로 재시공 공사중	미설치
		점자안내판 등 설치 계획 중	미설치
	원무팀 접수 및 수납공간 리모델링 계획 준비중	접수대 휠체어 접근 어려움	



## 9 부산·경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재점검

### 가) 부산·경남 재점검 개요

#### (1) 목적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내 현안 파악 및 재점검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차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

#### (2) 주제

**공공·의료·문화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대상
- 시설접근성,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웹 접근성 모니터링

과거 모니터링 기관의 '개선조치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되, 과거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시설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여부, 웹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3) 기간

2014. 6. 16. ~ 6. 27. (2주간)

#### (4) 대상

**부산·울산·창원 관할의 공공·의료기관 및 청소년 활동시설 (3개 권역 26개소)**

- 부산 : 총 15개소 (의료기관 8, 청소년 활동시설 7)
- 울산 : 총 4개소 (공공기관 2, 청소년 활동시설 2)
- 창원 : 총 7개소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청소년 활동시설 2)

과거 모니터링 분야(공공행정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고, △과거 모니터링시 특이사항이 있었거나 추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

## 나) 부산·경남 재점검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

### (1) 모니터링 주요 내용

#### ㉠ 모니터링 항목

- 장애인 시설접근성: 각 기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통로 및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당한 편의제공: 각종 증명서 발급, 의료 서비스 이용, 각종 문화 활동 등에 있어서의 점자 및 수화통역, 각종 보조 장비, 기기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웹 접근성: 홈페이지 내 정보의 접근 및 전자민원 서비스, 의료예약 및 프로그램신청 가능여부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

#### ㉡ 항목별 세부사항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접근성	전체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복도 및 통로 장애인화장실 종합민원실 및 민원접수대(공공기관에 해당) 진료접수대(의료기관에 해당) 경보 및 피난설비 민원자동발매기(공공기관에 해당)
	시각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필요한 서식 및 서류를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청각	의사소통을 위한 기기·수화통역 등의 제공여부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 접근성	전체	키보드를 통한 홈페이지 내의 모든 기능 이용가능 여부
	시각	키보드를 통한 전자민원서발급, 진료예약, 프로그램신청 가능여부

## (2)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공통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 ㉡ 시설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대상시설)
- 「편의증진보장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및 [별표1]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및 [별표2]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 정보접근 관련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다) 부산·경남 재점검 결과 및 분석

### (1) 2013년도 모니터링 결과 대비 2014년도 재점검 결과 분석

#### ㉠ 공공기관

- 울산 0구청의 경우 축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화장실 잠금장치 미작동 부분을 개선하였고, 마산00구청의 경우 화장실내 손잡이 미설치, 피난경보시설 미설치 부분 등을 개선하였음.
-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기관 총 4곳 중 울산 0구청은 과거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며, 00구청의 경우에도 축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민원접수도 하부공간 미확보, 피난 경보시설 미설치 등의 과거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았음.

#### ㉡ 의료기관

- 총 11개의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다수의 기관에서 다음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
  - 적절한 접수대,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 점형블럭, 피난 및 경보시설 설치
- 또한, 부산00병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진료순서 알림수단을 설치하였고, 동래00병원, 부산0병원은 수화통역을 제공하며, 구포00병원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은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접수대, 화장실 등을 두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분야에서 개선조치가 없었음.

#### ㉢ 청소년 활동시설

- 총 11개의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대부분의 시설이 적합한 규격 및 높이의 세면대, 대변기를 설치하는 변화를 보였으나, 주출입구 점형블럭,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축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비교적 개선이 용이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시설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전히 2개의 시설은 장애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음.

## (2) 2014년도 각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 ㉠ 공공기관

- 시설접근성
  - ㉠ 주출입구, 복도 및 통행로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여부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여부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대상기관	4	4	4	4	4
총족기관	4	4	4	4	2
총족비율(%)	100%	100%	100%	100%	50%

모니터링 항목	적정한 문의 형태 및 재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배정 여부	복도 통과 유효폭 1.2m이상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엘리베이터
대상기관	4	4	4	3
총족기관	4	4	4	3
총족비율(%)	100%	100%	100%	100%

-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주출입구 높이차는 모두 제거되어 있었으며, 통과 유효폭, 전면유효거리 모두 규정대로 확보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울산남구청과 진해구청에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판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출입문의 형태 및 재질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기관에서 적합한 문의 형태를 설치하고 있음. 또한 모든 기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복도 통과 유효폭의 모니터링 결과, 모든 기관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층간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없음’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⑥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경보·피난설비

모니터링 항목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남녀구분 화장실의 설치 여부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유무	대변기칸 통과유효폭 0.8m이상	잠금장치 작동여부
대상기관	4	4	4	4	4	4
충족기관	4	4	3	4	4	4
충족비율(%)	100%	100%	75%	100%	100%	100%

모니터링 항목	대변기칸 내부 공간확보		적정 대변기 높이 준수(0.4이상, 0.45m이하)	적정 세면대 높이 준수 (하단 0.65m, 상단 0.85m 이상)	세면대 하부의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피난 및 경보시설 설치유무
	너비1.0m, 깊이 1.8m 이상 확보	문 개폐로 인한 공간제한 없음				
대상기관	4	4	4	4	4	4
충족기관	4	4	4	3	3	2
충족비율(%)	100%	100%	100%	75%	75%	50%

-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남녀구분이 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 출입구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점형블록과 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의 잠금장치 또한 정식으로 작동중임.
- 대변기칸 내부의 공간 및 출입구 통과유효폭도 모든 기관에서 규정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으며, 문의 개폐로 인하여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의 공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화장실 대변기의 경우 모두 적정 높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세면대에 있어서는, 진해구청에 설치된 세면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면대 하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피난 및 경보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2곳(울산남구청, 진해구청)에서 해당설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위급 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시설접근성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음.

㉔ 종합민원실

모니터링 항목	적정 접수대 높이 준수 (0.7m이상, 0.9m 이하)	접수대 적정 하부 공간 (높이 0.65m, 깊이 0.45m이상)
대상기관	4	4
총족기관	4	0
총족비율(%)	100%	0%

- 모든 기관의 민원 접수대의 높이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하부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이 기준(0.45m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㉕ 민원자동발매기

모니터링 항목	적정 높이에 설치된 조작버튼(0.4이상 1.2m이하)	발매기의 편의시설 설치(점자표시, 음성지원, 일반버튼 방식 등) 유무	발매기 이용에 있어서의 보조인력 제공 여부
대상기관	4	4	4
총족기관	0	4	4
총족비율(%)	0%	100%	100%

- 민원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이 적정높이에 설치된 곳은 없었음. 조작버튼이 1.2m를 초과한 곳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손이 닿지 않아 민원자동발매기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
- 또한 민원자동발매기에 울산 남구청과 중구청에서 일반버튼방식, 진해구청에서 음성지원방식, 마산합포구청에서 점자를 표기해 둠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발매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음성지원방식의 경우 음량이 다소 작아 음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발급기 이용에 있어서 보조인력의 제공은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	시각	청각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비코드 문서 형식의 자료 제공여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시,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화통역 및 기기(보청기 등) 제공여부
대상기관	4	4
충족기관	2	3
충족비율(%)	50%	75%

- 시각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절반의 대상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울산남구청에서는 확대문서와 확대경의 발급이 가능하며, 울산중구청에서는 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진해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의 경우, 모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
-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을 이용시,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화통역 및 기기의 제공여부에 있어서는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모두 화상전화기를 설치 및 운영중이며, 작동확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임. 그러나 마산합포구청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웹 접근성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만으로 공공기관 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	키보드만으로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등 홈페이지 상의 기능 이용가능 여부
대상기관	4	4
충족기관	4	4
충족비율(%)	100%	100%

-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에 있어서, 키보드만으로 공공기관 이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
- 민원상담 및 서식발급 등의 서비스는 ‘민원24(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홈페이지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심사하는 ‘웹접근성 품질’의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을 받은 상태임.

㉠ 의료기관

- 시설접근성
  - ㉠ 주출입구, 복도 및 통행로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여부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여부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대상기관	11	11	11	11	11
총족기관	10	11	9	7	2
총족비율(%)	90.9%	100%	81.8%	63.6%	18.2%

모니터링 항목	적정한 문의 형태 및 재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배정 여부	복도 통과 유효폭 1.2m이상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엘리베이터
대상기관	4	11	11	11
총족기관	4	9	11	11
총족비율(%)	100%	81.8%	100%	100%

- 의료기관의 시설접근성에 있어서 주출입구의 높이차는 2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제거되어 있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 그러나 오복당요양병원의 경우, 높이차가 존재하고 경사로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시설접근이 불가능하였음.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은 모든 기관에서 규정 0.8m 이상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전면유효거리 확보에 있어서는 오복당요양병원과 해운대요양병원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오복당요양병원의 경우 경사도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계단과 인도가 바로 인접되어 있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 주출입구의 점형블록은 7개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하고 있는 기관 중 1곳을 제외하고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4개 기관에서는 점형블록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시각장애인의 시설접근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는, 모든 대상기관 중 단 2곳(동아대학교병원, 라온치과병원)만 설치되어 있음.
- 회전문이 설치된 의료기관 4곳의 경우, 모두 자동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구포성심병원과 오복당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설치하고 있음.
- 장애인이 의료시설 내에서 이동시, 모든 기관에서 충분한 공간 1.2m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층간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두어 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함.

㉞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경보·피난설비

모니터링 항목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남녀구분 화장실의 설치 여부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유무	대변기간 통과유효폭 0.8m이상	잠금장치 작동여부
대상기관	11	8	11	11	11	11
충족기관	8	7	4	5	8	8
충족비율(%)	72.7%	87.5%	36.4%	45.5%	72.7%	72.7%

모니터링 항목	대변기간 내부 공간확보		적정 대변기 높이 준수	적정 세면대 높이 준수	세면대 하부의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피난 및 경보시설 설치유무
	너비1.0m, 깊이 1.8m 이상 확보	문 개폐로 인한 공간제한 없음				
대상기관	11	11	11	11	11	11
충족기관	10	9	9	9	4	7
충족비율(%)	90.9%	81.8%	81.8%	81.8%	36.4%	63.6%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에 있어서는 3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1개 기관을 제외하고, 7개 기관에서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음.
- 또한 점형블록의 설치는 4곳만이 설치를 해두어 시각장애인의 시설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3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출입이 용이하였고,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
- 화장실의 대변기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규정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문의 개폐로 인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은 2곳이었음. 또한 대변기와 세면대가 각각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이 9곳이었음.
- 그러나 세면대 하부공간의 확보에 있어서는 단 4곳을 제외하고, 7곳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세면대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음.
- 피난 및 경보시설의 경우, 동아대학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위생병원 3곳의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해운대요양병원, 총 4곳에서 해당 설비를 찾아볼 수 없었음.

㉔ 접수대

모니터링 항목	적정 접수대 높이 준수 (0.7m이상, 0.9m 이하)	접수대 적정 하부 공간 (높이 0.65m, 깊이 0.45m이상)
대상기관	11	11
충족기관	4	2
충족비율(%)	36.4%	18.2%

- 병원내 진료접수대의 경우, 적정 높이와 하부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였음. 적정 높이를 지킨 곳은 4곳에 불과하였으며, 하부공간의 확보는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당한 편의제공(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	시각	청각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등의 형식으로 된 문서의 제공여부	병원진료 및 상담에 필요한 수화통역 및 기기(보청기 등) 제공여부
대상기관	11	11
충족기관	2	4
충족비율(%)	18.2%	36.4%

- 시각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여부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진료기록부 및 의료기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자료로는 구포성심병원과 마산라운치과병원에서 확대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산 라운치과병원의 경우 확대경을 비치 중에 있음. 제공하지 않는 9개 기관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며, 요청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청각장애인이 병원진료 및 상담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변한 동래봉생병원, 휴병원, 구포성심병원, 마산라운치과병원 모두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제공방식으로는 인근수화통역센터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답변함. 이외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곳의 경우,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함.

• 웹 접근성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만으로 병원 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	키보드만으로 진료예약 가능 여부
대상기관	9	6
충족기관	2	2
충족비율(%)	22.2%	33.3%

- 의료기관의 웹접근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키보드만으로 병원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9곳(홈페이지가 없는 2곳은 제외)중, 동아대학교병원, 구포성심병원 단 2곳에 불과하며, 이중 구포성심병원의 경우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음.
- 또한 키보드만으로 진료예약 가능여부에 있어서는, 진료예약기능이 없는 곳과 홈페이지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위와 동일한 기관인 동아대학교병원과 구포성심병원에서만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에서 진료예약이 가능함.

㉔ 청소년 활동시설

- 시설접근성
  - ㉑ 주출입구, 복도 및 통행로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여부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여부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대상기관	11	11	11	4	11
총족기관	11	11	9	7	0
총족비율(%)	100%	100%	81.8%	36.4%	0%

모니터링 항목	적정한 문의 형태 및 재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배정 여부	복도 통과 유효폭 1.2m이상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엘리베이터
대상기관	해당없음	11	11	10
총족기관	-	5	11	4
총족비율(%)	-	45%	100%	40%

- 청소년 활동시설의 시설접근성에 있어서 주출입구와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모든 기관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함.
- 그러나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전면 유효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됨.
- 건물내의 이동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이 통과유효폭 1.2m의 규정에 맞게 설비되어 있었으나, 층간 이동에 있어서는 4개 기관만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음. 대부분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한 공간이 2층 혹은 3층에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부재로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②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경보·피난설비

모니터링 항목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남녀구분 화장실의 설치 여부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유무	대변기간 통과유효폭 0.8m이상	잠금장치 작동여부
대상기관	11	8	10	10	10	10
총족기관	8	5	2	8	8	4
총족비율(%)	72.7%	62.5%	20%	20%	20%	40%

모니터링 항목	대변기간 내부 공간확보		적정 대변기 높이 준수	적정 세면대 높이 준수	세면대 하부의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피난 및 경보시설 설치유무
	너비1.0m, 깊이 1.8m 이상 확보	문 개폐로 인한 공간제한 없음				
대상기관	10	10	10	10	10	11
총족기관	8	9	7	6	5	6
총족비율(%)	80%	90%	70%	60%	50%	54.5%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는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이중 5개 기관만이 남녀를 구분하고 있었으며, 금정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부재로, 화장실에 대한 모니터링 전체를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확인하였음.
-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곳은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단 2곳에 불과하였음.
- 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는 공업탑 청소년 문화의 집과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설치하고 있었으며, 대변기간으로의 진입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규정(0.8m)를 준수하고 있었고, 대변기간의 적정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동일함.
- 화장실 문의 개폐로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은 금곡청소년 수련관으로, 화장실 내의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화장실의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6개 시설에서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화장실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게 함.

- 화장실 내 대변기의 경우, 3개 기관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대변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걱정세면대 설치여부에 있어서는 사상청소년 수련원과 문화의집, 그리고 진해청소년 수련원, 마산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하고는 걱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세면대가 설치된 시설에서 절반의 세면대만이 충분한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세면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경보 및 피난시설의 경우, 절반을 조금 초과하는 기관에서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	시각	청각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참여 가능 여부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보조인력 제공가능 여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관련 자료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비코드 등의 형식으로서의 제공가능여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의 제공가능 여부		
대상기관	11	11	11	11
충족기관	0	0	8	10
충족비율(%)	0%	0%	72.7%	90.9%

- 시각장애인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없음.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가 다수였음.
- 청각장애인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해당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또한,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과 동일함.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참여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3개 시설을 제외한 기관에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3곳의 경우 시설 측면에서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함.
-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요청 시 보조인력의 제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

• 웹 접근성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만으로 병원 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	키보드 만으로 진료예약 가능 여부
대상기관	8	3
충족기관	6	1
<b>충족비율(%)</b>	<b>75%</b>	<b>33.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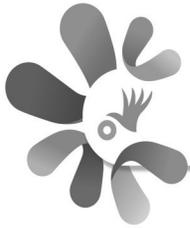
-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홈페이지가 없는 곳 3곳을 제외한 8개 시설중, 6개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키보드만으로 시설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중구청소년 문화의 집과 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키보드만으로 시설 이용정보 확인이 불가함.
- 또한 키보드만으로 프로그램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신청 기능이 있는 기관 3곳중, 단 1곳만이 키보드만으로 해당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 [현장 모니터링] 셋

-생활영역 · 참정권-





## 10 장애인생활영역 (대구·경북권역)

### 가) 장애인생활영역 모니터링 개요

#### (1) 목적

- 생활밀착형 인권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장애 유형 당사자의 하루 일과를 모니터링 하여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편견과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살피고자 함.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이란 기간 동안 민간, 공공기관을 망라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생각하는 법의 적용과 정당한 편의 제공시 부딪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개선 효과를 이루고자 함.

#### (2) 과제

- 장애인 생활 영역 모니터링 : 장애인 당사자 + 이용시설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 당사자의 동선에 따른 시설 1~2개,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 장애인 당사자의 평범한 일상과 동선을 스케줄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시설접근, 이용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모니터링단원(8팀)이 각자 자신의 지역과 섭외 가능한 장애인,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함. 생활영역이 주제인 만큼 일상적인 동선을 따르고 생활권내 대상자가 이용하지 않는 동선과 기관의 경우 이유를 인터뷰하고 설문함

장애인 대상자(15명)						대상기관	
지역	연번	상세	유형	직업	활동보조인	대상기관(34곳)	서비스제공자(37명)
대구	1	김OO -남, 40세	뇌병변	-	O 전동 휠체어 사용	0마트 칠성점	기전 데스크/캐셔
						0000의원	접수/안내원
	2	최OO -남, 37세	시각	강사	O	000콜	택시 기사
						00초등학교(거부)	-(거부)
	3	김OO -남, 52세	뇌병변 , 지적	-	O 전동 휠체어 사용	0000안과의원	접수/안내원
						00마트 율하점	고객센터
	4	김OO -남, 52세	뇌병변	-	O 전동 휠체어 사용	000 주민센터	장애인, 기초생활 담당
						00은행 반야월지점	대출담당
	5	김OO -여, 36세	지체	주부	- 전동 휠체어 사용	0000법원	법원 직원
						00역	-(거부)
						한국000연맹	연맹 직원
						000콜택시	기사
	6	정OO -남, 35세	청각	수화 통역 , 강사	O	00 반월당 지점	수신팀
						00백화점	총무팀
7	곽OO -남, 37세	뇌병변	사회 복지 사	O	00생명빌딩 지하 △△푸드몰	식당 주인	
					00문고 대구점	영업부, 도서관리부 직원 3명	

장애인 대상자(15명)						대상기관	
지역	연번	상세	유형	직업	활동보조인	대상기관(34곳)	서비스제공자(37명)
경주	8	이00-여, 49세	시각, 뇌병변	직업훈련생	0	-	활동보조인
						00수련원	교사
						경주00 000클럽	계산, 안내원
						00장애인협회 장애인지원차량	기사
	9	윤00-남, 57세	지체	-	0	00 용강동지점	농협직원
						장애인무료택시	택시기사
						00장애인협회	척수협회장
						저상버스	기사
	10	김00-여, 61세	지체	-	0	경주 00우체국	우체국장
						0000 경주점	총무과 직원
	11	공00-남, 24세	지적	-	0	00000 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치과	간호사
안동	12	김00(여), 13세	뇌병변	초등학생	0	0000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물리치료사
						00병원 (재활병원)	작업치료사
	13	이00-남, 10세	뇌병변	초등학생	0	00학교	특수교사
						안동00병원	언어치료사
울릉	14	이00, -여, 76세	시각	-	0	울릉00복지관	사례관리 직원
						000회관	시설관리사업소 계장
	15	박00, -남, 42세	뇌병변	-	-	울릉 00국	금융업무
						울릉 00여객선 터미널	발권 및 예약담당자

• 모니터링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장애인 대상의 선정

- 다양한 장애유형, 나이, 성별을 고려하되 동일한 유형의 장애의 경우, 도시와 농촌, 여성과 남성 등 비교대상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한다.
-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과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할 것을 제안

②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선정

- 기존 장애인모니터링 대상 기관의 리스트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되, 통계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 인터뷰와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를 병행
- 타지역 자율과제로 대구경북에서 실시되지 않은 대상기관 참고 : 영화관, 시외버스터미널, 사법기관 등

③ 대상별 체크리스트의 작성

- 다양한 분야의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만큼 일률적인 체크리스트 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리스트를 마련. 시설접근성은 공통 체크리스트, 학교, 금융기관, 음식점, 교통수단 등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별도 작성(공통 1개 포함 총 9개의 체크리스트 제작)

④ 서비스 제공자 설문 작성

- 서비스 제공자는 주로 대상기관의 민원업무, 안내데스크, 고객지원부와 같은 대민지원·서비스 담당자들로 설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가도록 질문 배치. 또 제공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을 통해 일방적인 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함.

## 나) 모니터링 진행

### (1) 계획 수립

- 지역별 모니터링 과제 선정, 관련법령 및 규정검토
- 체크리스트 작성
- 과거 모니터링 결과 개선조치 사항 점검

### (2) 사전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안동	7.1(화) 11:00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대구	7.2(수) 15:00	국채보상공원기념관 회의실
경주	7.4(금) 11:00	시각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울릉	7.3(목)	온라인, 전화 교육

### (3) 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 2014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 모니터링 결과 취합, 정리 : ~ 9월 20일까지
- 1, 2, 3차 과제 결과 대상기관 통보 및 이행 계획 요청(9 ~ 10월)
- 보고서 제작, 결과발표회(11월)

## 다) 모니터링 주요 내용

### (1) 생활 영역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이동권
  - ① 000콜/ 장애인 무료택시
    - 이용자 수에 비해 차량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약속시간 맞추기가 어려움.
    - 콜센터와 전화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음.
    - 000콜 접수 직원과 택시기사의 정기적인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 경주시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모범택시 20여대가 장애인 무료콜택시에 참여 중
  - ② 지하철
    - 지상으로 연결 엘리베이터가 한 대 뿐이어서 휠체어사용자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림.
    - 지하철에 탑승할 때 승강장과 지하철의 높이가 같지 않고 빈공간이 있어 수동휠체어의 바퀴가 잘 밀리지 않고 끼일 위험이 있음.
  - ③ 저상버스(경주)
    - 버스 승강장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휠체어 사용자의 버스 승차에 어려움이 있음.
    - 모니터링 참여자의 아파트(휠체어 사용자 많이 거주) 주변은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청과 버스회사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면담한 끝에 저상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었음. 저상버스의 노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④ 기타 이동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폭이 좁은 인도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도로는 위험해서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임.

- 도로나 인도의 기울기 때문에 휠체어 이동 중 넘어진 적이 있음.
  - 시골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시설이 없어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함.
  -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 여행자체를 포기함.
  - 혼자서는 여가활동을 하려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고,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대소변의 걱정 때문에 멀리 이동한 적이 거의 없음.
  - 주위에 이용시설이 많으나 휠체어사용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을 못하고(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필요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활동보조인에게 부탁을 하여 이용함.
- 시설접근성
    - ① 대형마트
      - 휠체어 사용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쇼핑카트와 부딪히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
      - 울릉도의 경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 건물 안에서 모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의 대형마트처럼 한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음.
    - ② 장애인 화장실
      - 남녀 구분이 없는 곳,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음. 화장실 내부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음.
    - ③ 기타 시설 접근성
      - 장애인 주차장과 주출입구 경사로까지의 이동거리가 먼 곳이 있어 장애인주차장의 의미가 없음.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만 비장애 차량이나 해당 기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경사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때문에 통행에 방해될 때가 있음.
      - 주출입구 경사도에 턱이 있어 통과할 때 아플 때가 있음(휠체어 사용자)
      - 엘리베이터의 버튼에는 점자표시가 되어있었으나 층별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몇 층인지 알 수 없음.

- **정당한 편의제공(서비스 이용)**
  - ① **금융기관**
    - 은행 적금통장 개설시 본인이 필기를 못 쓰면 만들 수 없다고 함(지체 장애인)
    - 장애인 공용 ATM 기기: **하부공간이 부족해서 카드 투입구까지 손을 뻗기가 쉽지 않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 등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을 의뢰하면 안 된다고 만 이야기 하고 있음.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결** 해 주었으면 좋겠음.
  
-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식**
  - 친절하지만, 물리치료사가 가끔은 **어린애를 대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음.
  - 모니터링 거부 : 강제성이 없는 모니터링이다 보니 기관에서 거부하는 일도 있음(초등학교 1곳, 금융기관 1곳). 모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인데도 학교장이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학부모 대표가 나와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대했음. 이에 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음(추후 진정 취하).
  - 장애인도 똑같은 소비자인데 **소비자이기 전에 장애인으로** 먼저 대하는 느낌을 받았음.
  
- **발달, 뇌병변 장애아동의 일상적 어려움**
  - 뇌병변 장애 초등학생 :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집이 2층에 있어서 엄마나 아빠가 안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위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이 없음.
  -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 : 도서관, 식당이용 시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을 하여 주인이나 직원에게 항의를 받을 때가 있음. 특히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연장에서 어린아이를 순식간에 꼬집거나 무는 행동을 가끔

할 때가 있어 그 부모들에게 모욕적 말을 들을 때가 있음. 발달장애인이  
을 설명하여도 이해받기는 쉽지 않음.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 집에 머물  
게 되고 아이가 무료함을 견디기 힘들어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플 때 의사에게 자세한 증상을 설명하기 힘들어 발  
달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이 생겨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장애인 관련 단체나 협회의 시설 점검

- 기관을 1층으로 옮기고 싶지만 재정이 열악하여 힘들고,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함(00수련원)
- 장애인 관련 협회들은 비용문제로 편의시설 확충이 되지 않는 점이 아쉬  
 유고, 장애인 협회를 위한 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00장애  
 인 협회 경주)
- 장애인 개인맞춤 자립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립지원센  
 터가 부족한 현실임(00자립지원센터).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00재활지원센터 안동)
- 특수학교로서 많은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엘리베이터, 자동문, 경사로  
 등), 장애유형별 시설 확충이 요구됨.

※ 대부분 필요성과 구체적인 부족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확충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해당 단체와 관련된  
 장애인편의시설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 형태에 대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임.

## (2) 장애인당사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시각차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Q. 향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Q.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 문화시설</li> <li>▪ 행정기관</li> <li>▪ 교통수단(이동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이동권)</li> <li>▪ 취업 및 진로</li> <li>▪ 음식점</li> </ul>
Q. 주 활동기 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곳	Q. 여행이나 여가활 동은 주로 어떻게 하 는지	Q.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요 청할 사항이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 장애인 센터(단체)/ 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동행 /장애인 센터(단체) / 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 동행했으면 함.</li> <li>▪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중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해</li> </ul>

-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장애인 대상자, 서비스 제공자 모두 **교통수단(이동권)**이 가장 곤란하고 불편하다고 답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여행, 여가활동의 경우는 ‘가족과 활동보조인 동행’, ‘교회나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개인 활동의 부담으로 여겨지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별히 마련된 곳 위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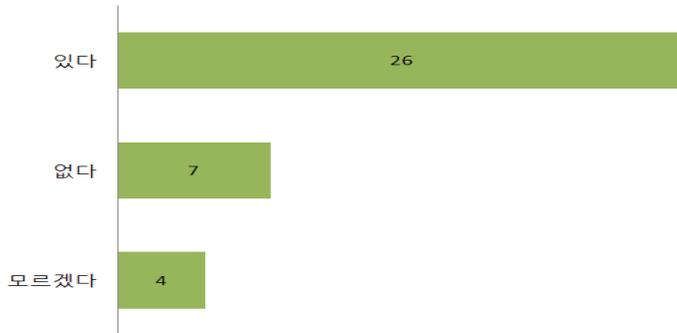
- 서비스 제공자인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외에 취업이나 진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동, 행정서비스와 문화적 향유를 우선시 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이동, 의사소통의 생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이나 진로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후순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또 장애인 당사자는 주로 외출 시 ‘가족, 활동보조인과 동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 갖춰진 교회, 장애인 센터 및 단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를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여 서로의 인식차를 보였다.

- 붙임 1. 서비스 제공자 설문결과(설문 응답자 37명)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니터링 대상기관 구분
  3. 3차 생활영역 모니터링 세부내역(별첨)
  4. 체크리스트 및 설문지 양식(별첨)

[붙임 1 : 서비스 제공자 설문결과(설문 응답자 37명)]

1. 귀하는 설문 이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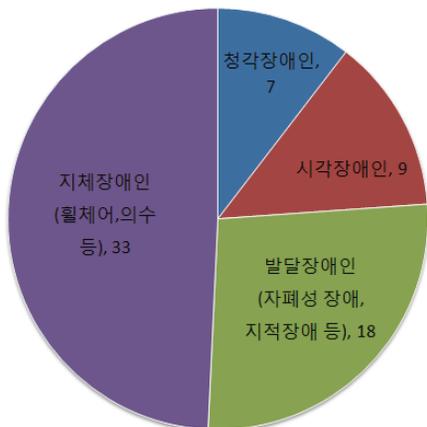
2. 아래의 교육 중 접해본 교육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선택

- 친절 등 서비스 교육
- 화재, 기기사용 등 안전교육
- 업무 전문성 관련 교육
- 인권교육
- 장애인편의시설 사용 교육
- 기타( )



기타-자원봉사관리, 산업안전, 없음

3. 귀 기관(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은? (2개 선택)  
 <지체(휠체어, 의수 등)/시각/청각/발달(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한 번도 온 적  
 없다/기타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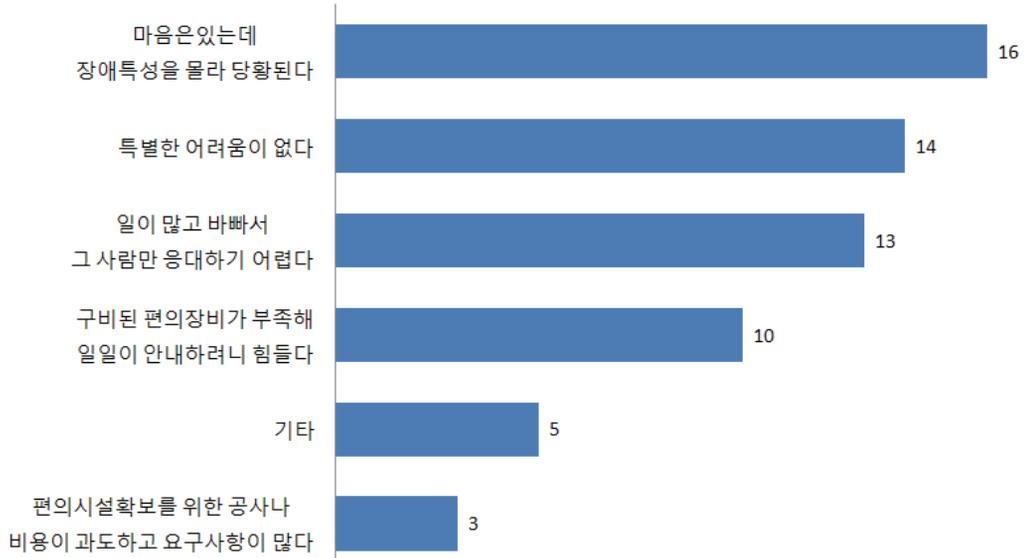
\* 1개 항목만 선택한 응답자도 있음

4. 다음의 장애인편의시설 중 귀하가 사용법을 알고 있거나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함



5. 장애인을 안내하거나 대할 때 겪는(예상되는) 어려움은?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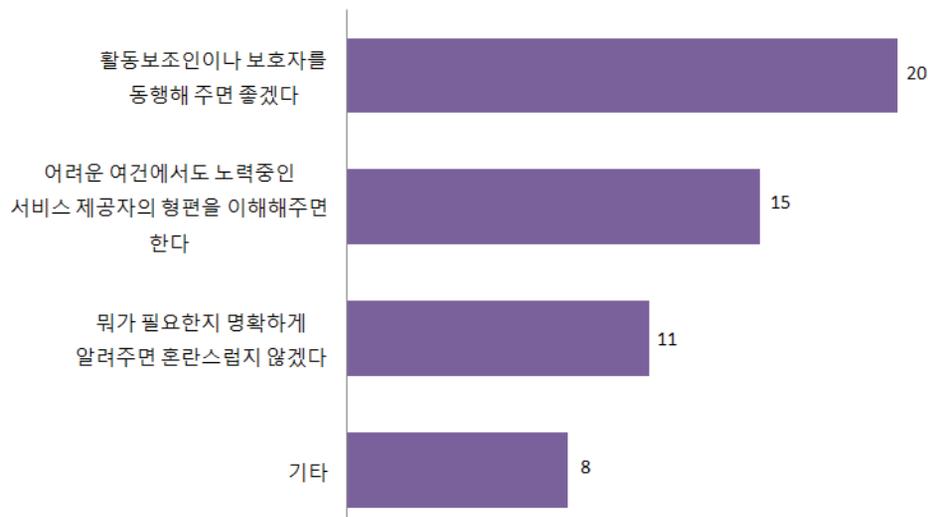


\* 1개 항목만 선택한 응답자도 있음

-기타 답변내용-

- 장소가 좁아서 휠체어 이동이 힘들다
- 장애인이 더 까다롭다
- 도와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
- 재활의지가 약한 경우 힘들다
- 운전을 해야하는데 활동보조인에게 부탁해야 할 것들을 요구한다/술을 마시고 택시에 타서 주사를 부릴 때 힘들다.

6.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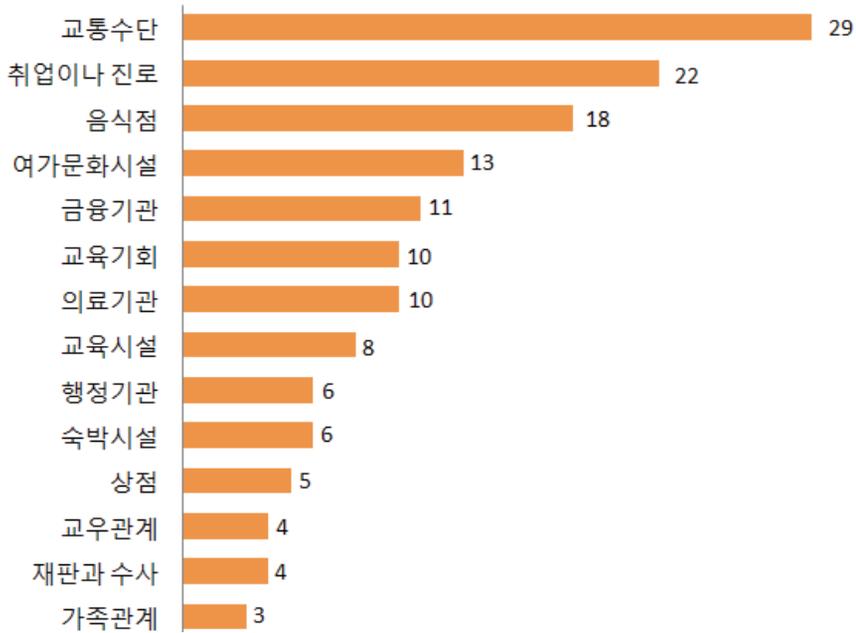


-기타 답변내용-

- 공공장소에 나갈 때 장애인에게 단정한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
- 장애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조사할 때 나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않아서 피해를 볼때가 있는데 출석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 자폐를 가진 경우 보호자가 동승했으면 좋겠다
- 가정에서의 행동 상황과 학생의 컨디션을 학교선생님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7.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하거나 곤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은?

\*중복선택



8. 그 외 나누고 싶은 사례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 장애인자립센터가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한다
- 저상버스만 운행하는 기사를 정했으면 좋겠다
- 승강장 불법주차 단속을 꼭 해야 한다(저상버스집입불가)
- 기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어투)
- 기사들의 인권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 혼자 방문한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설명 전달이 잘 안돼서 힘들었다

[붙임 2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니터링 대상기관 구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차별금지	모니터링 대상(34)
제2절 교육	대구 00초등학교(모니터링거부)
	안동 00학교(장애 특수학교)
	경주 00수련원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0마트 칠성점
	00마트 을하점
	00백화점 대구점
	경주 0000클럽
	0000 경주점
	식당(**푸드몰)
	00문고 대구점(설문 3명 참여)
	대구 000콜택시(2)
	대구 지하철2호선 00역
	경주 저상버스
	경주 택시(장애인 무료)
	00 여객선 터미널(울릉)
	00은행 반야월지점
	00 반월당 지점
	00 용강지점
	경주 00우체국
	00 우체국
	한국000연맹 대구
경주 00협회	
경주 0000자립지원센터	
경북 0000지원센터	
울릉 00복지회관	
울릉 000회관(문화예술시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0000 주민센터
	대구가정법원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0000의원(대구 대명동)
	0000의원(대구 을하동)
	000치과(경주)
	00병원(재활병원)
0000병원(재활병원)	



## 11 장애인 참정권(울릉도)

### 가) 개요

#### (1) 주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 (2) 대상

- 「공직선거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소 및 유권자에게 발송된 투표안내문,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 울릉군 총 7개 투표소 중 4개 투표소

선거구	투표소
가 선거구	울릉읍 제1투표소 (도동 울릉초등학교 급식소 1층)
	울릉읍 제2투표소 (울릉군수협 1층)
	울릉읍 제3투표소(울릉문화체험예술장 1층 구. 장흥초등학교)
나 선거구	서면 제2투표소(태하1리 마을회관 1층)

#### (3) 기간

- 현장 모니터링
  - 투표소: 2014년 6월 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일)
- 투표안내문 및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2014. 6. 1. ~ 2014. 6. 4.

#### (4) 모니터링 참가자

울릉지역 모니터링 단원 5명(비장애, 울릉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심부름 센터 상근직원으로 구성)

#### (5) 모니터링 관련 법률

#####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 나) 피모니터링 결과(종합)

### (1) 투표소 시설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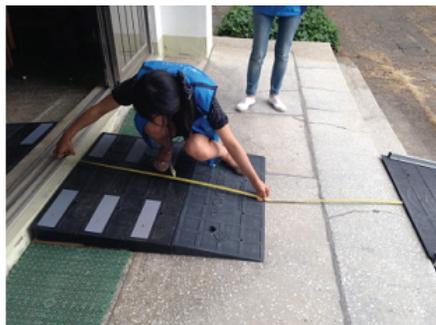
#### ㉠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투표소 시설 접근성	지체 등	투표소 계단, 턱 유무 및 경사로 설치여부, 주출입구 유효거리 충족,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충족, 경사로나 엘리베이터설치(2층이나 지하투표소 경우)

####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계단, 턱 유무 및 경사로 설치여부	주출입구 유효거리 (1.2m 이상)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충족 (0.8m 이상)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2층이나 지하투표소)
조사대상	4	4	4	4
충족	4	3	4	-
미충족	-	1	-	-
해당없음	-	-	-	4 (모두 1층에 위치)

- 주로 학교 건물을 투표장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4곳 모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였지만, 기울기가 기준보다 높고(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경사로를 여러개 연결하여 이동시 불편함이 있었음.



- 1층에 투표장이 설치되어 층간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외부에서 투표소까지의 진입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있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2) 투표 시 정당한 편의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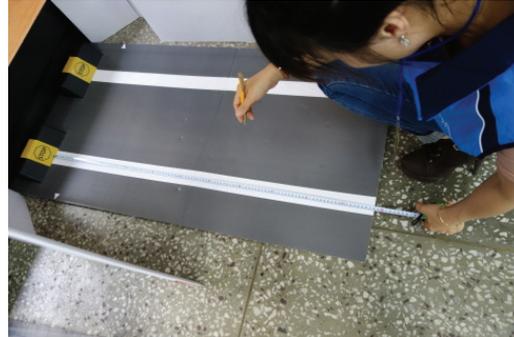
### ㉠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당한 편의제공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가능한 기표대 설치유무 점자 투표용지 및 보조용구 제공 여부, 점자투표안내문 비치 여부, 장애인 요구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동반 투표보조 여부, 장애인의 투표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여부

###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휠체어사용자 이용 가능한 기표대 설치	점자투표용지 또는 보조용구제공	점자 투표 안내문비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 동반 투표보조 허용여부	장애인의 투표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조사대상	4	4	4	4	4
총족	4	4	-	4	4
미총족			4 (개별적 우편발송)	-	-
해당없음	-	-	-	-	-

- 장애인 공용 기표소 설치. 후면 칸막이 없는 대신 휠체어 정지선 설치
- 이번 선거부터 동반투표 허용하고 있었으며, 보조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각 2명씩 배치하고 있음.
- 점자 투표용지는 4곳 모두 비치하고 있었으며 선거 안내문은 비치하지 않았음(시각장애 당사자 개별적으로 미리 발송하였기 때문이라고 담당자 답변함)
- 장애인 단체에서 6.4 지방선거 이전에 울릉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선거도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였음.



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안내문 및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보이스 아이 삽입 안내문제공 (요청시)	확대문자 안내문제공 (요청시)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의 게시된 정보확인가능	홈페이지 내 동영상 자막, 수화통역제공
제공 (점자와 목자 동시 제공, 내용동일)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확인가능	제공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CD를 사전 발송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처음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점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소속정당 등은 점자인쇄, 보이스 바코드 삽입, 확대문자 제공이 되지 않고 번호표기만 되어있음. (지지하는 후보와 소속정당의 번호를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 이번 선거처럼 여러 명을 동시에 투표하는 경우 지지자와 정당의 번호를 기억해야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크기확대 및 음성지원이 가능하고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함.
- 선거관리위원회 뉴스, 개표방송 등 동영상이 많이 게시되어 있고 동영상마다 화면해설이 자막으로 제공됨.
- 주로 자막으로 제공되고 수화방송은 특별 개표방송에만 제공되었음.

## 다) 투표소별 모니터링 결과

### (1) 울릉읍 제1투표소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외부에서 투표소까지의 진입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있음.
  - 건물 주출입구와 측면 출입구 두 곳 모두 임시경사로 설치(기울기 높음)
  - 학교 급식소를 투표소로 대체하여 내부 공간은 복도나 통로가 없어 휠체어 등이 이동에 불편없음.
  - 장애인 공용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보조용구,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CD를 사전 발송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처음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선거부터 동반투표 허용하고 있었으며, 보조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각 2명씩 배치하고 있음.
  - 장애인 단체에서 6.4 지방선거 이전에 울릉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선거도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였음.



▶ 울릉읍 제1투표소 장애인 공용 기표소



▶ 임시경사로

## (2) 울릉읍 제2투표소

### • 모니터링 주요내용

- 건물 주출입구에 임시경사로 설치.
- 투표소는 1층에 위치해 있고 주출입구 유효거리는 확보되어 있으나 진입 후 긴 복도를 거쳐 투표장으로 이동해야 함.
- 통과 유효 폭은 0.82m로 기준에 적합하지만 복도 가장자리에 티 테이블을 두어 휠체어 이동 시 불편함.
- 투표장 내부는 공간확보 되어 있고 장애인 공용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보조용구,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CD를 사전 발송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처음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선거부터 동반투표 허용하고 있었으며, 보조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각 2명씩 배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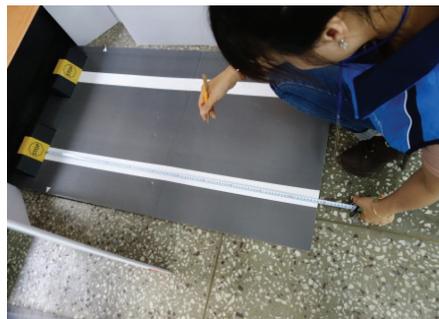
▶ 울릉읍 제2투표소 임시경사로



▶ 울릉읍 제2투표소 복도-음료대 설치로 이동폭이 좁아짐



▶ 울릉읍 제2투표소 장애인 공용 기표대/바닥 정지선 설치(뒤 칸막이 없음)



### (3) 울릉읍 제3투표소

####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울릉읍 제 3투표소가 있는 사동 지역에 시각장애인(1급)이 거주하고 있는데 점자형 투표용지, 돋보기만 구비되어 있었음.
- 투표소 주출입구에 임시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와 경사로 사이 틈이 생겨 문턱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여 자원봉사자가 필요시 도움을 주기로 함.
- 장애인 공용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보조용구,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CD를 사전 발송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처음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선거부터 동반투표 허용하고 있었으며, 보조인력으로 자원봉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 각 2명씩 배치하고 있음.
- 장애인 단체에서 6.4 지방선거 이전에 울릉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선거도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였음.



▶울릉읍 제3투표소 임시경사로-출입문 틈이 있어 경사로 연결함.



▶울릉읍 제3투표소 시각장애인 투표용지/장애인공용 기표대

#### (4) 서면 제2투표소

- 모니터링 주요내용
  - 계단마다 임시 경사로를 설치. 점자투표용지 및 점자용보조용구, 돋보기 및 확대경이 비치
  -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가 한 번도 투표를 하러 온 적이 없다고 함.
  - 비상시를 대비하여 점자형 투표지를 비치해두었으며 휠체어 공용 기표대도 설치 하였음.



▶울릉읍 서면제2투표소-선거일 전날 모니터링시 단차가 있어 문의하였더니 선거일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함.

#### (5)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웹 접근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CD를 사전 발송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 처음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점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소속정당 등은 점자인쇄, 보이스 바코드 삽입, 확대문자 제공이 되지 않고 번호표기만 되어있음. (지지하는 후보와 소속정당의 번호를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크기확대 및 음성지원이 가능하고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함.
- 선거관리위원회 뉴스, 개표방송 등 동영상에 많이 게시되어 있고 동영상마다 화면해설이 자막으로 제공됨.
- 주로 자막으로 제공되고 수화방송은 특별 개표방송에만 제공되었음.

# [부록1] 모니터링단 활동





## 1.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이 두텁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넓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지위나 자리를 바라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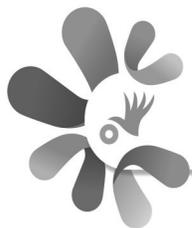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고,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에 접근하여 나의 권리를 보호·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투표소에서 시민으로서의 참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또한, 어떤 시설에든 문턱 없이 접근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위험 시 대피함에 걱정할 필요 없는 세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향유하는 데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웹사이트에 불편 없이 접근해 사이버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 2. 현장 모니터링단 명단

연번	서울지역	대전지역	제주지역	광주권역	대구권역	부산권역
1	김영림	김만영	강문종	강경민	곽동혁	정승천
2	김태이	이자형	강승미	강한새	구덕순	황선일
3	김현수	이종돈	강윤미	김남오	김윤미	이임균
4	김현우	권은선	고봉균	김세현	김운용	정진혁
5	김형훈	김수자	고숙미	김영애	김정자	김은주
6	김환동	이민영	곽규섭	김종호	김현표	이이헌
7	노현지	김동일	김미영	김하나	박미라	김경순
8	박윤구	서정진	김태우	김현희	박현경	임대성
8	박진옥	신인수	김홍주	김형수	서정부	김해성
9	서경숙	이미정	문향혜	노동주	원성필	배성재
10	석은경	황미영	박보미	박경한	윤미숙	손경연
11	서라영	김대화	신동자	박석진	정동환	이은미
12	오은주	김태준	안재철	박용일	정홍규	김정희
13	이귀남	유경애	양을순	배 현	최재영	김수균
14	이상용	천인수	오영호	배한성	홍춘자	박상진
15	이용원	김지혜	이성욱	오광옥	황재준	김현민
16	장진자	송점숙	이승훈	윤진호	김현덕	박회송
17	임예직	이명하	이준협	이형일	유철성	양민정
18	전윤선	이은주	좌영희	장지호	이상돈	김기창
19	정미령	박명용	진대원	전순덕	백예경	김슬민
20	정방섭	박세종	한영배	조장환	이성희	유민정
21	조현대	박한우	전경민	김병용	김성슬	안소영
22	주민지	방승헌		이성태	김성애	윤종훈
23	최수빈	이형주		이연호	여규엽	김규형
24	한성수	조성희		장운성	이대호	김금순
25	황철호	최민희		정해선	이은정	강창원
26	고승옥	함석배		조재명	조주식	김남훈
27	장유진	김영희		이명옥	김효정	강명진
28	황인현	김장현		임준형	이계숙	김순옥
29		정봉호		김영미	이말선	문지연
30		하태헌			이정희	
31		황기순			이한나	



### 3.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1

전 윤 선(서울 모니터링단)

국가 인권위원회와 장애인은 긴밀한 관계속에 상생한다. 장애를 가지고 살다보면 세상의 편견과 무수히 많은 차별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차별에 대처하고 차별 발생 시 기댈 수 있는 후원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차별 받는 장애인에게 최후의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십여 년 전 즈음으로 기억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계 목소를 한 곳에 모아 법 제정에 구슬땀을 흘릴 때, 당시 나는 성인이 돼서 장애가 발생함에 불안해하면서 장애로 인해 힘들어 했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던 시기로 자립생활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였다.

신체적 손상은 사회의 물리적 방해물을 만났을 때 장애는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됐다. 장애가 없을 땐 인권은 숨 쉬는 공기와도 같아 권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서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때 자립생활 운동은 내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전환해주고 이정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립생활 이념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다. 그 부족함이 뭔지는 찾아도 채워지지 않던 시절, 우연히 인권을 만나게 됐다.

인권을 만나면서부터 나의 생각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인권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철학과도 같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인권에 빠지기 시작했다. 종교나 헌법에 나열된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은 내 삶에 혁명이었다. 아니 종교는 오히려 신체적 손상을 가진 나를, 권리를

가진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대해줬다. 늘 동정을 구  
 결해야 하는 난 불편한 현실과 종교관에서 혼돈스러웠다.

신체적 손상을 가지기 전이나 손상을 가진 후 나의 존재는 그대로인데, 왜 사람  
 들은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혀를 차거나 그들의 적선에 고마워해야 하  
 는지 불편하기만 했다. 자립생활 이념과 인권의 상관관계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자립생활 활동하는데 있어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직면 할 때 나  
 의 갈 길을 흔들리게 했다. 그럴 즈음 인권을 만난 것은 나를 보호 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인권에 기반한 자립생활 운동은 사회의 편견과 치열하게 싸우며 벽을 허물어가  
 는 당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하게 되었다. 너무 기뻐다. 인권이란 것이 이  
 렇게 내게 기쁨의 충만함을 내려 줄 수 있는지 가히 나에겐 혁명적이었다. 인권  
 을 만나기 전 한 번도 인권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인권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같고 매일 마시는 물과 같기 때문에 권  
 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수도 있다. 그 권리가 신체적 손상이 왔  
 다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립생활 활동하면서 인권을 만나 확실하게 구분  
 됐다. 인권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인권 활동은 현존하는 최고의 생활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의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 젓가락처럼 혼자서는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불안전한  
 상관관계였던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으로 행복하고 인권을 만나 내 삶은 완  
 성돼 간다. 불어라 인권의 바람, 거침없이 나가라 인권위원회!

모니터링 활동은 사회 곳곳의 차별을 찾아내고 발견된 차별을 시정하는데 최전  
 방 역할을 하는 전사와도 같았고, 난 인권의 전사처럼 황량한 차별에 맞서 행진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가장 상위 기관인 대법원, 대 검찰청 웹-접근성은 형편없는 차별  
 의 종합백화점이었다. 우리나라 법 집행 부서가 이 정도로 영터리인 줄은 모니터  
 링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나 평등도 조건이 다르면 불평  
 등으로 다가온다. 사람이 모두 다르게 생긴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법의  
 평등의 저울은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다.

사법기관에서 왜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불편해 하는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어  
 렵뜻이 알게 되었다. 시설 접근권, 웹-접근권은 아직도 개선 할 부분이 너무 많  
 았다. 대부분의 사법기관에 장애인 직원은 한명도 없었고, 그나마 서울의 한 법  
 원은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어 점자자유도 블록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

권은 다른 기관보다 좋은 편이었지만 그 외 기관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어는 기관 민원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검찰청 직원이 상주하는 건물로 한참을 이동해야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할 수 있었다.

웹 접근성 또한 상위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의 적용이 상당히 낮았다. 오히려 하위 기관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실행하려는 노력으로 법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려는 신중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 할 때도 있었다. 한 경찰서는 전 직원이 수어(수화)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곳도 있었고 등기소 중에는 오래된 건물임에도 시설 접근성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새 건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적 서비스를 작동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 또한 법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같다. 법은 최소한의 안정장치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집행하는 상위기관에서 조차 약속 실행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은 약속 따위는 쉽게 어기며 살아가는 무질서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약속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단 운영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민간의 비영리 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신력 있는 모니터링 활동으로 피모니터링 기관은 상당히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모니터링단의 단원 구성은은 다양한 각각의 장애유형이 한 팀에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시각(점자유도블록, 점자자료, 웹접근성), 청각(수화통역, 화성전화기) 지체(휠체어 접근성,) 비장애(모든 영역의 총괄),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된다면 현장에서 활동이 최고의 하모니를 이뤄 각 영역별로 이루어진 한 팀은 각자의 장애 영역에서 숨은 차별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장 파견 전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한가지의 차별적인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원들간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모토인 문화융성에 장애인도 함께 해 문화적으로 차별과 소외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는 문화접근권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2015년 현장 모니터링 대상 문화영역에도 포함되길 바란다.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2 - 힘든 점과 행복을 알 수 있는 점

### 강 문 중(제주 모니터링단)

저는 제주지역에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고 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다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에 빠져드는 날. 세상의 실패라는 실패는 모두 나를 향하고 있는 듯 느껴지는 날, 이제 도무지 더 이상은 한 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보면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 이래서 세상은 살 만하구나’하고 느껴지는 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이 느껴지는 날, 기특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날, 무슨 일이든 실패처럼 술술 그런 기쁜 날이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시작한지 3년째가 되어가는데, 그 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점, 어려움 점도 많았지만 반면, 잘 알 수 없는 점들을 장애인 모니터 하면서 장애인이 왜 사회에 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엔 너무 미흡 했었다 걸 알게 되어 다는 걸 이번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갔지만 시설이 미흡하여 그냥 돌아올 때에는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확충해 달라고 해도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장애인 이 가보면 시설들의 달라짐이 없어서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남성과 여성이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설치되어 있었고 규격과 용도는 지키는데 비해 접근이 불가능한 곳, 장애인화장실의 잠금장치가 고장 난 곳도 있었지만, 쾌적하고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장애인의 접근이 수월하게끔 이용이 잘 설치한 곳도 많았습니다.

가끔 어느 기관들은 어디에서부터 출입구를 설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야하는지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설치되어 있는 문은 닫혀있기도 하여 옆문을 통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문은 시각장애인 점형블럭이 닫힌 문쪽에 설치되어 점형블럭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나의 삶을 감싸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행복한 날들만이 내 인생에 가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해 지치고 힘든 시간들,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 행복한 시간, 그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자 앞으로도 이어져갈 제 시간의 귀중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혜택과 인권권리 증진의 기틀이 되고 싶은 커다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3

### 김 현 수(서울 모니터링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데도 보았고 이로인해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애인의 대한 인식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 이었습니다.

피모니터링 기관을 방문하면 담당자는 "우리 기관만큼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접근성을 확인해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시설면에서 장애물이 많은 것을 봤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아직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가 속해있던 조가 방문했던 기관 중 절반은 협조적이었으나 나머지 절반에서는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이나, 인식 그리고 정보습득을 위한 자료 등을 주로 모니터링한 결과 분명히 공문을 사전에 보내고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단이 방문하는 것도 몰랐고 어느 도서관은 그 도서관의 관장님이 너무도 비협조적이라 과연 저분이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양식과 덕망을 가졌는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래도 대부분 모든 사법기관이 협조적으로 나왔으나 여기도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몇 몇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경우 모니터링을 할 당시 분명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동의

를 얻고 현장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주출입구의 점자유도블럭 민원실까지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던 중 보안과 직원이라고 말한 직원이 화서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말을 들어가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장 모니터링단의 조끼를 벗고 전화기로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언론에 알리겠다고 사법기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항의하였고, 그 때서야 그 보안과 직원이 무전기로 시설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담당자가 나와 사과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상영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 몇몇 영화상영관은 담당자가 매우 협조적이었고 장애인의 이동 동선 등 시설면에서나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영화상영관을 방문했을 때 진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패션잡화를 파는 노점상들과 이벤트 업체가 있어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문제가 있어 해당 관리사무실에 문의해본 결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상인들이 그렇게 할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향후 상인대표를 만나서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니터링 사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한 시 즌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권리를 찾는 기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4

### 이 은 정(대구·경북 모니터링단)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불편함들에 대해 작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불편함의 해결보단 실망과 아픔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그러한 불편함에 구체적인 법령 기준에 근거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점은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 개선할 점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즉,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세심한 숙고와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피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적었습니다. 한편, 비록 정당한 편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설비를 갖춘 기관이라 할지라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설비들은 정당한 편의로써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 기관 측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현장 모니터링단에게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씩씩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법률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본만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보며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이야기는 비용문제였습니다. 비용문제는 정부와 담당 기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비용문제를 내세우기에 앞서 관련 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늘 앞에서 노력하며 수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에 덧붙여,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넓은 행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니터링단 활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의 방문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이 없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한편, 또다른 문제점은 매년 모니터링 대상기관들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니터링을 받은 기관들 중 그 후에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년 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기관들을 선별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나름 뿌듯함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훨씬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후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 있는 자리에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5

### 이 종 돈(대전 모니터링단)

저는 2003년 1월 10일 양쪽눈을 실명하여(당시 만52세) 창살 없는 감옥생활과도 같은 암흑생활을 하면서 한발 두발 내딛으며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저와 같은 시각장애 동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와 추천을 받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저에게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일념으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기타 기관들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동권과 접근성 및 기관 이용을 할 때 각종 불편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할 때 안타까움과 아쉬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는 것이 수많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이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구나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모니터링 기관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보면 각 기관 담당자들의 조사받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게 임하였고 협조적인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용무를 볼 때 접수대 높이나 휠체어 하부 앞면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짧은 곳이 많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한 곳도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주출입구 앞에는 대부분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관 건물안에 들어서면 진행선(주행선)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물 주 출입구 현관 앞에 점자촉지도가 미설치된 곳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러한 점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모든 기관의 시설의 많은 발전과 개선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개선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동권, 접근권, 이용권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기관에 시정이 될 때까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6

### 이 형 일(광주 모니터링단)

현장 모니터링을 할 때 매번 느끼는 건 웬지 모를 답답함이었다. 체크리스트에 넣을 수 없는 부분(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모니터링 당일 어디를 가나 피모니터링 기관의 담당직원이 반갑게 맞아주고 안내도 열심히 한다. 무엇을 요구해도 바로 답변을 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미안해하는 감정을 표현한다(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없어 부득불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휠체어리프트를 그렇게 친절하게 작동시켜 주었던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단원이 아닌 장애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피모니터링 기관에 해당하는 병원과 도서관 중 몇몇은 본인이 평소 이용하고 있는 곳이었다.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대충 안내해주는 게 전부였다. 예를 들어 계단에 있는 난간을 잡기 위해 화분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하면 그 순간엔 치우지만 나중에 다시 놓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단원으로 방문했을 때는 전혀 달랐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면을 어떻게든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모니터링 기관이나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장애인당사자로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더 많이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내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장애인까지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로에 화분, 거울, 시계 등이 있어도 이것들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복도나 화장실 통로의 너비에 관련해서도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

족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 장애 유형의 관점을 넘어서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함께 다녔던 장애 단원들도 동의했던 부분이다.

피모니터링 기관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도 모니터링 사업의 장점이다. 비록 하루일지라도 공공기관에 속한 단원들이 점검을 하고, 이후 그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내려받는다라는 사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모 의료기관은 현관에 놓았던 카페트를 걷어냈고 장애인전담창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 주민센터는 통로에 있던 화분을 치웠으며 고장난 줄도 몰랐던 보청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 사항이다.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는 “보이스 서비스 기능(음성변환출력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진료 접수·예약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 항목들은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아마 비용 문제 때문일 것으로 짐작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련해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첫째는 모니터링 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링 사업이 해당 연도 안에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은 늦은 봄부터 늦은 여름에 진행된다. 그러나 이때는 무더위 기간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도 더위를 더 느낀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몸을 움직일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힘을 쓰기 때문이다. 힘을 더 쓰기 때문에 땀도 더 많이 흘리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지치게 된다. 그러므로 무더위를 피한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나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싶다.

둘째는 언어, 시각, 청각장애를 가진 단원들이 현장 모니터링 시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함이다. 해당 장애를 가진 단원들은 현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피모니터링 기관의 직원들이 언어장애가 없는 단원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단원들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분을 활동보고서에 실음으로써 참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현장 활동 및 참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청각장애 단원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내가 단원으로 활동한 3년여 동안, 청각장애인이 단원으로 계속 활동해왔는데 수화통역사 없이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다. 함께 한 단원들이 필담으로 간단하게

대화를 하지만 해당 장애인이 느낄 불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 권위가 간접차별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셋째로 피모니터링 기관 확대의 필요성이다. 3년여 내내 우리가 조사한 피모 니터링 기관은 거의 공공기관, 의료기관, 도서관,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한정됐는 데 올해 광주에서는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처럼 새로운 기관을 포함 하여 피모니터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길 바란다. 초·중·고등학교, 교도소, 장애 인거주집중구역(영구임대아파트 인근),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활동을 통해 조금씩이지만 변화하고 있는 피모니터링 기관을 본다. 물론 크게 바뀌지 않는 점들은 아쉽지만 그렇게나마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장애 인이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는 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더 힘써 주길 바라며 활동보고서 후기를 마친다.



# [부록2] 관련 법령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발효일 2008.5.3 ] [ 다자조약, 제1928호, 2009.1.9 ]

- 이 협약의 당사국은,
-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 다.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 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 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

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 사.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 제9조 접근성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

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

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

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 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조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록 인정할 것

-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  
 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 1.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 2.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  
 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  
 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 3.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  
 고 참여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 1.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  
 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 3.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  
 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 4.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을 선출한다.
- 5.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  
 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

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 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 전달한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법률 제11522호, 2012.10.2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li> <li>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li> <li>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li> <li>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li> <li>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li> <li>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li> </ol>	<p>[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9.8.21,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li> <li>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li> <li>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li> </ol> <p>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 <li>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ol>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1.5.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li> </ol>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p> <p>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p> <p>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p> <p>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p>	<p>교육원</p> <p>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p> <p>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p> <p>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p> <p>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p>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li> <li>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li> <li>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li> </ol>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p> <p>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li> <li>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li> </ol> <p>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차별금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고용</b></p> <p>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li> <li>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li> <li>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li> <li>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li> <li>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li> <li>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li> </ol> <p>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 style="text-align: center;"><b>시행령</b></p> <p>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li> <li>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li> <li>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li> <li>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li> <li>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li> <li>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단말기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li> </ol> <p>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교육</b></p> <p>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1.6.7&gt;</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11&gt;</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0.5.11&gt;</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p>	<p>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 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의 대여 및 수리</li> <li>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li> <li>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li> <li>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 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 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 구 등 의사소통 수단</li> <li>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 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li> <li>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b></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 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 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 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 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 카드</p>	<p>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li> <li>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li> <li>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li> </ol> <p>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 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를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li> <li>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li> <li>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li> </ol>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 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0.5.11&gt;</p> <p>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p> <p>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lt;개정 2012.11.27&gt;</p> <p>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lt;개정 2012.11.27&gt;</p> <p>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장애인지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11&gt;</p> <p>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11, 2013.3.23&gt;</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p>	<p>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li> <li>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li> </ol>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11.5.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li> <li>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li> <li>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li> </ol>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관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 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5.11&gt;</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0.5.11&gt; [제목개정 2010.5.11]</p> <p>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11.3.29&gt;</p> <p>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5.19, 2013.3.23&gt;</p> <p>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lt;신설 2011.5.19&gt;</p> <p>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lt;신설 2011.5.19&gt;</p> <p>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안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li> <li>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li> <li>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접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li> <li>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li> </ol> <p>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기구 배치</li> <li>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li> <li>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li> <li>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li> <li>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li> <li>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기구 생산 장려</li> <li>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li> </ol> <p>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p>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p>

장애인지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b></p>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li> <li>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ol> <p>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11, 2012.10.22&gt;</p>	<p>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li> <li>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li> </ol> <p>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모·부성권, 성 등</b></p> <p>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1.6.7&gt;</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b>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b></p>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p>	<p>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는 아니 된다.</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b></p>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p>	<p>제30조 삭제 &lt;2011.5.19&gt;</p> <p>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li> <li>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li> <li>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li> </ol> <p>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 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li> <li>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li> <li>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li> </ol> <p>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p>	<p>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lt;개정 2011.12.8&gt;</p> <p>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 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li> <li>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li> <li>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 내책자 비치</li> <li>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li> <li>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li> </ol>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b></p> <p>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p> <p>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li> <li>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li> <li>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li> <li>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li> </ol> <p>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별행위의 중지</li> <li>2. 피해의 원상회복</li> <li>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li> <li>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p> <p>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b></p>	<p>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성명·주소</li> <li>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li> <li>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li> </ol> <p>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정명령의 이유</li> <li>2. 시정명령의 내용</li> <li>3. 시정기한</li> <li>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li> </ol>

장애인지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p> <p>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p> <p>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벌칙</b></p>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1. 차별의 고의성</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p> <p>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p> <p>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p> <p>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5.11&gt;</p> <p>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0.5.11&gt;</p> <p>③ 삭제 &lt;2010.5.11&gt;</p> <p>④ 삭제 &lt;2010.5.11&gt;</p> <p>⑤ 삭제 &lt;2010.5.11&gt;</p>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 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